

2015년 규정	2016년 규정
<p><b>제7장 국제스포츠규정</b></p> <p>본 규정은 국제스포츠규정(FIA International Sporting Code, 이하 국제스포츠규정)을 한국어로 번역한 것으로 국내스포츠규정이 별도로 명시하지 않는 내용은 국제스포츠규정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국제스포츠규정의 영문과 국문의 해석이 다를 경우, 영문의 내용을 우선으로 한다.</p> <p><b>제1조 총칙</b></p> <p><b>제1.1조 모터스포츠의 국제규정</b></p> <p>1.1.1 국제자동차연맹 (The Fédération Internationale de l'Automobile, 이하 'FIA')은 안전과 스포츠의 공정성 원칙에 바탕을 둔 규정을 만들고 집행 권한을 가지고, 자동차 경기와 기록을 촉진하고 통제할 목적을 가지며, FIA 국제 챔피언십을 조직하는 유일한 국제경기 기구다.</p> <p>1.1.2 FIA는 이로부터 제기되는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최종 국제 항소재판소다. 1, 2, 3륜 차량에 관해서는 국제 모터사이클 연맹(Fédération Internationale de Motocyclisme)이 같은 권한을 행사한다.</p> <p><b>제1.2조 국제스포츠규정</b></p> <p>1.2.1 위의 권한이 공정하고 공평한 방법으로 행사될 수 있도록 FIA는 이 “국제스포츠규정 (International Sporting Code, 이하 국제스포츠규정)”과, 그에 따른 모든 부칙을 포함하여 제정한다.</p> <p>1.2.2 국제스포츠규정의 목적은 국제 모터스포츠를 규제, 장려하고 촉진하는 것이다.</p> <p>1.2.3 이러한 목적은 경기 또는 참가자의 참가를 막거나 방해하기 위함이 아니다. 단, FIA가 모터스포츠의 안전, 공정, 또는 질서 있는 운영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는 예외다.</p> <p><b>제1.3조 규정의 숙지와 복종</b></p> <p>1.3.1 경기를 조직하거나 이에 참가하는 모든 사람, 또는 단체는,</p> <p>1.3.1.a FIA의 정관과 규정, 그리고 국내규정을</p>	<p><b>제7장 국제스포츠규정</b></p> <p>본 규정은 국제스포츠규정(FIA International Sporting Code, 이하 국제스포츠규정)을 한국어로 번역한 것으로 국내스포츠규정이 별도로 명시하지 않는 내용은 국제스포츠규정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국제스포츠규정의 영문과 국문의 해석이 다를 경우, 영문의 내용을 우선으로 한다.</p> <p><b>제1조 총칙</b></p> <p><b>제1.1조 모터스포츠의 국제규정</b></p> <p>1.1.1 국제자동차연맹 (The Fédération Internationale de l'Automobile, 이하 'FIA')은 안전과 스포츠의 공정성 원칙에 바탕을 둔 규정을 만들고 집행 권한을 가지고, 자동차 경기와 기록을 촉진하고 통제할 목적을 가지며, FIA 국제 챔피언십을 조직하는 유일한 국제경기 기구다.</p> <p>1.1.2 FIA는 이로부터 제기되는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최종 국제 항소재판소다. 1, 2, 3륜 차량에 관해서는 국제 모터사이클 연맹(Fédération Internationale de Motocyclisme)이 같은 권한을 행사한다.</p> <p><b>제1.2조 국제스포츠규정</b></p> <p>1.2.1 위의 권한이 공정하고 공평한 방법으로 행사될 수 있도록 FIA는 이 “국제스포츠규정 (International Sporting Code, 이하 국제스포츠규정)”과, 그에 따른 모든 부칙을 포함하여 제정한다.</p> <p>1.2.2 국제스포츠규정의 목적은 국제 모터스포츠를 규제, 장려하고 촉진하는 것이다.</p> <p>1.2.3 이러한 목적은 경기 또는 참가자의 참가를 막거나 방해하기 위함이 아니다. 단, FIA가 모터스포츠의 안전, 공정, 또는 질서 있는 운영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는 예외다.</p> <p><b>제1.3조 규정의 숙지와 복종</b></p> <p>1.3.1 경기를 조직하거나 이에 참가하는 모든 사람, 또는 단체는,</p> <p>1.3.1.a FIA의 정관과 규정, 그리고 국내규정을</p>

<p>속지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p> <p>1.3.1.b 위 사항 및 스포츠 기구의 결정 그리고 그로부터 파생되는 결과에 대해서 예외 없이 최종할 책임을 진다.</p> <p>1.3.2 이러한 규칙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경기를 조직하거나 이에 참가하는 어떤 사람 또는 집단이든 그에 대해 발급된 라이선스가 취소될 수 있으며, 어떤 제조자든 FIA 챔피언십에서 일시 또는 영구 제명될 수 있다. FIA 및 KARA는 그러한 결정의 이유를 밝힌다.</p> <p>1.3.3 차량이 기술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지면 성능에 이익을 보지 않았다는 주장은 변명이 될 수 없다.</p> <p><b>제1.4조 모터스포츠의 국내 총괄</b></p> <p>1.4.1 하나의 ASN은 그 단체가 있는 나라의 권력 안에 있는 모든 영토에서 국제스포츠규정을 집행하고 모터스포츠를 관할하는 유일한 국제적 스포츠 권한을 가지는 단체로 FIA에서 승인한다.</p> <p>1.4.1.a 국내총괄권 한국자동차경주협회(이하 "KARA : Korea Automobile Racing Association")는 FIA에 의하여 대한민국 ASN(National Sporting Authority) 으로 승인되어, FIA의 정관 및 국제스포츠규정을 승인하고, 국내의 자동차경기를 관리, 총괄하는 유일한 권능 단체다.</p> <p>1.4.2 각 ASN은 국제스포츠규정에 구속된다.</p> <p><b>제1.5조 영토 내 스포츠 권한의 행사</b></p> <p>국가 내 비자치 영토는 해당 국가에서 FIA를 대표하는 ASN이 행사하는 스포츠권한의 적용을 받는다.</p> <p><b>제1.6조 스포츠 권한의 위임</b></p> <p>각 ASN은 국제스포츠규정에 따라 부여된 권한 가운데 전체 또는 일부를 그 나라안의 다른 클럽에 위임할 수 있다. 단, 이를 위해서는 사전에 FIA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한다.</p> <p><b>제1.7조 스포츠 권한의 위임 철회</b></p> <p>ASN은 FIA에 권한 위임을 철회한다는 통보를 하는 것으로 위임을 철회할 수 있다.</p>	<p>속지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p> <p>1.3.1.b 위 사항 및 스포츠 기구의 결정 그리고 그로부터 파생되는 결과에 대해서 예외 없이 최종할 책임을 진다.</p> <p>1.3.2 이러한 규칙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경기를 조직하거나 이에 참가하는 어떤 사람 또는 집단이든 그에 대해 발급된 라이선스가 취소될 수 있으며, 어떤 제조자든 FIA 챔피언십에서 일시 또는 영구 제명될 수 있다. FIA 및 KARA는 그러한 결정의 이유를 밝힌다.</p> <p>1.3.3 차량이 기술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지면 성능에 이익을 보지 않았다는 주장은 변명이 될 수 없다.</p> <p><b>제1.4조 모터스포츠의 국내 총괄</b></p> <p>1.4.1 하나의 ASN은 그 단체가 있는 나라의 권력 안에 있는 모든 영토에서 국제스포츠규정을 집행하고 모터스포츠를 관할하는 유일한 국제적 스포츠 권한을 가지는 단체로 FIA에서 승인한다.</p> <p>1.4.1.a 국내총괄권 대한자동차경주협회(이하 "KARA : Korea Automobile Racing Association")는 FIA에 의하여 대한민국 ASN(National Sporting Authority) 으로 승인되어, FIA의 정관 및 국제스포츠규정을 승인하고, 국내의 자동차경기를 관리, 총괄하는 유일한 권능 단체다.</p> <p>1.4.2 각 ASN은 국제스포츠규정에 구속된다.</p> <p><b>제1.5조 영토 내 스포츠 권한의 행사</b></p> <p>국가 내 비자치 영토는 해당 국가에서 FIA를 대표하는 ASN이 행사하는 스포츠권한의 적용을 받는다.</p> <p><b>제1.6조 스포츠 권한의 위임</b></p> <p>각 ASN은 국제스포츠규정에 따라 부여된 권한 가운데 전체 또는 일부를 그 나라안의 다른 클럽에 위임할 수 있다. 단, 이를 위해서는 사전에 FIA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한다.</p> <p><b>제1.7조 스포츠 권한의 위임 철회</b></p> <p>ASN은 FIA에 권한 위임을 철회한다는 통보를 하는 것으로 위임을 철회할 수 있다.</p>
---	---

**제1.8조 국내경기 규칙**

각 ASN은 자체 국내경기 규정을 제정할 수 있으며 FIA에 제공해야 한다.

**제2조 경기 - 총괄 조건**

**제2.1조 총괄 원칙**

**2.1.1 국제스포츠규정의 일반 적용**

2.1.1.a FIA를 대표하는 주체가 있는 나라에서 진행되는 모든 경기는 국제스포츠규정의 지배를 받는다.

2.1.1.b 그러나 클로즈드 경기 그리고 국가 내 기록 도전은 국내스포츠규정의 지배를 받는다. 국내스포츠규정이 발표되지 않은 나라에서는 국제스포츠규정이 적용된다.

**2.1.2 경기 조직**

모든 나라에서는 다음 주체가 경기를 조직할 수 있다.

2.1.2.a ASN.

2.1.2.b 자동차 클럽, 또는 예외적으로 자격을 얻은 다른 스포츠 그룹. 단, 이들 클럽 또는 단체는 필요한 허가를 받아야 한다.

**2.1.3 공식 문서**

2.1.3.a 기록 도전을 제외한 모든 경기에서는 FIA 규정 안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가 아니라면 공식 문서가 작성되어야 하며, 이 문서에는 특별규정, 참가 신청 서식 및 공식 프로그램의 내용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2.1.3.b 이들 공식 문서에 포함된 조건 중 무엇이든 국제스포츠규정에 반할 경우에 그 조건은 무효가 된다.

**2.1.4 경기에 관련된 모든 문서에 포함되는 문구**

2.1.4.a 어떤 경기든 그에 관련된 모든 특별규정, 공식 프로그램, 그리고 참가 신청 서식은 다음 문구를 명확하게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 “부칙을 포함한 FIA 국제스포츠규정 및 KARA의 국내경기 규정에 따라서 개최되는”

**제1.8조 국내경기 규칙**

각 ASN은 자체 국내경기 규정을 제정할 수 있으며 FIA에 제공해야 한다.

**제2조 경기 - 총괄 조건**

**제2.1조 총괄 원칙**

**2.1.1 국제스포츠규정의 일반 적용**

2.1.1.a FIA를 대표하는 주체가 있는 나라에서 진행되는 모든 경기는 국제스포츠규정의 지배를 받는다.

2.1.1.b 그러나 클로즈드 경기 그리고 국가 내 기록 도전은 국내스포츠규정의 지배를 받는다. 국내스포츠규정이 발표되지 않은 나라에서는 국제스포츠규정이 적용된다.

**2.1.2 경기 조직**

모든 나라에서는 다음 주체가 경기를 조직할 수 있다.

2.1.2.a ASN.

2.1.2.b 자동차 클럽, 또는 예외적으로 자격을 얻은 다른 스포츠 그룹. 단, 이들 클럽 또는 단체는 필요한 허가를 받아야 한다.

**2.1.3 공식 문서**

2.1.3.a 기록 도전을 제외한 모든 경기에서는 FIA 규정 안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가 아니라면 공식 문서가 작성되어야 하며, 이 문서에는 특별규정, 참가 신청 서식 및 공식 프로그램의 내용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2.1.3.b 이들 공식 문서에 포함된 조건 중 무엇이든 국제스포츠규정에 반할 경우에 그 조건은 무효가 된다.

**2.1.4 경기에 관련된 모든 문서에 포함되는 문구**

2.1.4.a 어떤 경기든 그에 관련된 모든 특별규정, 공식 프로그램, 그리고 참가 신청 서식은 다음 문구를 명확하게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 “부칙을 포함한 FIA 국제스포츠규정 및 KARA의 국내경기 규정에 따라서 개최되는”

<p>2.1.4.b 국내스포츠규정이 발표되지 않은 나라에서는 이 문구는 다음과 같이 줄인다. “부칙을 포함한 FIA 국제스포츠규정에 따라서 개최되는”</p> <p><b>2.1.5 금지된 경기</b>  2.1.5.a 국제스포츠규정 또는 해당 ASN의 규정에 따르지 않고 조직된 경기 또는 예정된 경기는 금한다.</p> <p>2.1.5.b 이러한 경기가 공인을 받을 경우 그 공인은 무효가 된다.</p> <p><b>2.1.6 경기의 연기 또는 취소</b>  2.1.6.a 경기는 불가항력적인 이유 또는 안전을 이유로만 연기 또는 취소될 수 있다.</p> <p>2.1.6.b 24시간 이상 연기 또는 취소된 경우에 참가비는 반환된다.</p> <p>2.1.7 경기는 사무국 관련 업무 그리고/또는 검차 시작 시각에 시작되는 것으로 간주한다. 경기 종료는 아래 두 가지 업무 모두 마치는 시점이다.  2.1.7.a 위 내용은 항의 또는 항소 기한 또는 모든 심리가 끝났을 때를 의미</p> <p>2.1.7.b 국제스포츠규정에 따라 수행된 사무국 업무 및 경기 후 차량 검사가 끝났을 때.</p> <p>2.1.8 국제챔피언십, 컵, 트로피, 챌린지, 또는 시리즈의 일부에 속하는 어떤 경기도 FIA에게 공인을 받지 않으면 국제스포츠캘린더에 들어갈 수 없다.</p> <p>2.1.9 국제스포츠규정에 정의된 것과 같이 FIA의 포몰러, 카테고리, 또는 그룹에게 개방된 어떤 국내 또는 국제경기든 여기에 참여하는 모든 자동차는 FIA 기술규정의 모든 면을 준수해야 하며, 이들 규정에 대한 공식 해명은 FIA가 제공한다. ASN는 FIA에게 명시적으로 서면 허가를 받지 않고서는 이들 FIA 기술규정을 변경할 수 없다.</p> <p><b>제2.2조 국제경기</b>  <b>2.2.1 국제 수준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경기는 반드시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한다.</b></p> <p>2.2.1.a 국제 서킷 경기에 대해서는, 관련 서킷은 참가 자격이 있는 자동차에 대해 적절한 등급의</p>	<p>2.1.4.b 국내스포츠규정이 발표되지 않은 나라에서는 이 문구는 다음과 같이 줄인다. “부칙을 포함한 FIA 국제스포츠규정에 따라서 개최되는”</p> <p><b>2.1.5 금지된 경기</b>  2.1.5.a 국제스포츠규정 또는 해당 ASN의 규정에 따르지 않고 조직된 경기 또는 예정된 경기는 금한다.</p> <p>2.1.5.b 이러한 경기가 공인을 받을 경우 그 공인은 무효가 된다.</p> <p><b>2.1.6 경기의 연기 또는 취소</b>  2.1.6.a 경기는 불가항력적인 이유 또는 안전을 이유로만 연기 또는 취소될 수 있다.</p> <p>2.1.6.b 24시간 이상 연기 또는 취소된 경우에 참가비는 반환된다.</p> <p>2.1.7 경기는 사무국 관련 업무 그리고/또는 검차 시작 시각에 시작되는 것으로 간주한다. 경기 종료는 아래 두 가지 업무 모두 마치는 시점이다.  2.1.7.a 위 내용은 항의 또는 항소 기한 또는 모든 심리가 끝났을 때를 의미</p> <p>2.1.7.b 국제스포츠규정에 따라 수행된 사무국 업무 및 경기 후 차량 검사가 끝났을 때.</p> <p>2.1.8 국제챔피언십, 컵, 트로피, 챌린지, 또는 시리즈의 일부에 속하는 어떤 경기도 FIA에게 공인을 받지 않으면 국제스포츠캘린더에 들어갈 수 없다.</p> <p>2.1.9 국제스포츠규정에 정의된 것과 같이 FIA의 포몰러, 카테고리, 또는 그룹에게 개방된 어떤 국내 또는 국제경기든 여기에 참여하는 모든 자동차는 FIA 기술규정의 모든 면을 준수해야 하며, 이들 규정에 대한 공식 해명은 FIA가 제공한다. ASN는 FIA에게 명시적으로 서면 허가를 받지 않고서는 이들 FIA 기술규정을 변경할 수 없다.</p> <p><b>제2.2조 국제경기</b>  <b>2.2.1 국제 수준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경기는 반드시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한다.</b></p> <p>2.2.1.a 국제 서킷 경기에 대해서는, 관련 서킷은 참가 자격이 있는 자동차에 대해 적절한 등급의</p>
--	--

<p>FIA에서 발급한 공인 라이선스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p> <p>2.2.1.b 국제 펠리 그리고 크로스컨트리 펠리에 대해서는, 관련된 규정의 모든 조항이 적용되어야 한다.</p> <p>2.2.1.c 경기 참가자와 선수는 해당 국제라이선스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p> <p>2.2.1.d 기록 도전을 제외한 경기는 국제스포츠 캘린더에 들어 있어야 한다.</p> <p>2.2.2 국제스포츠캘린더 등록은 FIA의 재량이며 그 경기가 열리는 나라의 ASN을 통해서 신청되어야 한다. 신청이 거부될 경우 FIA는 그 이유를 밝힌다.</p> <p>2.2.3 국제경기만이 국제챔피언십(컵, 챌린지, 그리고 트로피) 또는 시리즈의 일부가 될 수 있다.</p> <p>2.2.4 FIA의 이름을 보유하는 국제챔피언십, 컵, 트로피, 챌린지 또는 시리즈에 포함되는 국제경기는 FIA의 경기 지휘 감독 아래에 있다.</p> <p>2.2.5 모든 국제경기에 대해서 ASN은 국제스포츠규정에 따라 정립된 국제규정과 함께 ASN의 규정 및 이 경기에 적용할 수 있는 규정이 그 나라 안에서 적용되는 문제에 관한 책임을 가진다.</p> <p>2.2.6 선수, 팀, 또는 다른 나라 라이선스 보유자는 국제스포츠캘린더에 등록되지 않았거나 FIA 또는 그 ASN이 관할하지 않는 국제경기(국제 챔피언십, 컵, 트로피, 챌린지, 시리즈 포함) 참가해서는 안된다.</p> <p>2.2.7 국제경기에 참가하는 팀 또는 선수가 특정한 조건을 준수해야 할 경우, 이를 “제한된”(Restricted) 경기라고 한다. 예를 들어, 초청에 따른 경기는 “제한된” 경기가 된다. 특수한 상황이 국제스포츠규정 부칙 O의 특례 요건을 구성한다면 FIA는 ASN이 국제스포츠캘린더에 “제한된” 국제경기를 포함시킬 수 있도록 허가할 수 있다.</p> <p><b>제2.3조 국내경기</b></p> <p>2.3.1 국내경기는 규정과 조직에 대한 권한을 행</p>	<p>FIA에서 발급한 공인 라이선스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p> <p>2.2.1.b 국제 펠리 그리고 크로스컨트리 펠리에 대해서는, 관련된 규정의 모든 조항이 적용되어야 한다.</p> <p>2.2.1.c 경기 참가자와 선수는 해당 국제라이선스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p> <p>2.2.1.d 기록 도전을 제외한 경기는 국제스포츠 캘린더에 들어 있어야 한다.</p> <p>2.2.2 국제스포츠캘린더 등록은 FIA의 재량이며 그 경기가 열리는 나라의 ASN을 통해서 신청되어야 한다. 신청이 거부될 경우 FIA는 그 이유를 밝힌다.</p> <p>2.2.3 국제경기만이 국제챔피언십(컵, 챌린지, 그리고 트로피) 또는 시리즈의 일부가 될 수 있다.</p> <p>2.2.4 FIA의 이름을 보유하는 국제챔피언십, 컵, 트로피, 챌린지 또는 시리즈에 포함되는 국제경기는 FIA의 경기 지휘 감독 아래에 있다.</p> <p>2.2.5 모든 국제경기에 대해서 ASN은 국제스포츠규정에 따라 정립된 국제규정과 함께 ASN의 규정 및 이 경기에 적용할 수 있는 규정이 그 나라 안에서 적용되는 문제에 관한 책임을 가진다.</p> <p>2.2.6 선수, 팀, 또는 다른 나라 라이선스 보유자는 국제스포츠캘린더에 등록되지 않았거나 FIA 또는 그 ASN이 관할하지 않는 국제경기(국제 챔피언십, 컵, 트로피, 챌린지, 시리즈 포함) 참가해서는 안된다.</p> <p>2.2.7 국제경기에 참가하는 팀 또는 선수가 특정한 조건을 준수해야 할 경우, 이를 “제한된”(Restricted) 경기라고 한다. 예를 들어, 초청에 따른 경기는 “제한된” 경기가 된다. 특수한 상황이 국제스포츠규정 부칙 O의 특례 요건을 구성한다면 FIA는 ASN이 국제스포츠캘린더에 “제한된” 국제경기를 포함시킬 수 있도록 허가할 수 있다.</p> <p><b>제2.3조 국내경기</b></p> <p>2.3.1 국내경기는 규정과 조직에 대한 권한을 행</p>
---	---

사하는(국내경기 규칙을 통한 권한 포함) KARA의 경기 지휘 감독 아래에 전적으로 놓임과 동시에 국제스포츠규정을 준수한다.

2.3.2 다음 예를 제외하고 국내경기는 KARA가 발급하는 라이선스를 가진 팀과 선수만 참가할 수 있다.

2.3.3 국내경기는 국제챔피언십, 컵, 트로피, 챌린지 또는 시리즈에 포함될 수 없으며, 국제 순위를 매길 때에 포함될 수도 없다.

2.3.4 국내경기는 KARA의 재량에 따라서 타 ASN으로부터 발급된 라이선스 보유자도 받아들일 수 있다.

~~2.3.5 카트에서는, 해외에서 개최되는 국내경기에 해당 ASN이 아닌 다른 ASN의 라이선스 보유자가 참가하려면 국제라이선스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2.3.5.a 예외로 국내의 서킷 상황이 국내 카트 경기를 개최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는 점을 FIA에 입증한 ASN은 국내 라이선스 보유자가 공유 국경(단, 해상 국경인 경우에는 FIA는 적절한 자리적 관계를 가진 추가 국가를 고려한다)이 있는 나라의 ASN 관할 영토에서 개최되는 국내 카트 경기에 참가하는 것을 허가할 수 있다.~~

~~2.3.5.b 주최자가 국제라이선스를 가지고 있지 않은 타국 경기 참가자 또는 선수의 참가를 받아들인 경우 위반이 된다. KARA에 이 사실이 통보 되면 주최자는 벌금 처분을 받으며, 그 액수는 KARA의 재량에 맡긴다.~~

2.3.6 만약 국내경기가 국내챔피언십 또는 시리즈의 일부라면 외국 라이선스를 보유한 경기 참가자는 해당 챔피언십 또는 시리즈 포인트를 얻을 자격이 없다. 해당 챔피언십 또는 시리즈의 순위에서 포인트 배분은 경기에 참가한 외국 라이선스 보유자를 포함하지 않고 계산되어야 한다.

FIA 존 (Zone) 가이드라인에 따른 FIA 존 챔피언십의 일부를 이루는 국내경기에 대해서는 그 존 내 라이선스 보유자에 한정해서 이 조항은 적용되지 않는다.

사하는(국내경기 규칙을 통한 권한 포함) KARA의 경기 지휘 감독 아래에 전적으로 놓임과 동시에 국제스포츠규정을 준수한다.

2.3.2 다음 예를 제외하고 국내경기는 KARA가 발급하는 라이선스를 가진 팀과 선수만 참가할 수 있다.

2.3.3 국내경기는 국제챔피언십, 컵, 트로피, 챌린지 또는 시리즈에 포함될 수 없으며, 국제 순위를 매길 때에 포함될 수도 없다.

2.3.4 국내경기는 KARA의 재량에 따라서 타 ASN으로부터 발급된 라이선스 보유자도 받아들일 수 있다.

2.3.5 모든 국내경기는 이를 공인한 KARA의 국내캘린더에 등록되어 있어야 한다.

2.3.6 해외 라이선스 보유자는 국내 챔피언십, 컵, 트로피, 챌린지 또는 시리즈 경기에 참가 가능하다.

2.3.6.a 만약 국내경기가 국내챔피언십 또는 시리즈의 일부라면 외국 라이선스를 보유한 경기 참가자는 해당 챔피언십 또는 시리즈 포인트를 얻을 자격이 없다. 해당 챔피언십 또는 시리즈의 순위에서 포인트 배분은 경기에 참가한 외국 라이선스 보유자를 포함하지 않고 계산되어야 한다.

2.3.6.a.i FIA 존 (Zone) 가이드라인에 따른 FIA 존 챔피언십의 일부를 이루는 국내경기에 대해서는 그 존 내 라이선스 보유자에 한정해서 이 조항은 적용되지 않는다.

~~2.3.7 어떤 국내경기든 이를 공인한 KARA의 국내캘린더에 등록되어 있어야 한다.~~

2.3.6.a.ii FIA F4 챔피언십에 있어서, 한 나라의 서킷 상황이 경기를 개최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는 점을 FIA 에 입증한 경우, 공유 국경 (단, 해상 국경인 경우에는 FIA는 적절한 지리적 관계를 가진 추가 국가를 고려한다)에서 열리는 F4 대회에 자국의 선수 라이선스 소지자의 참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2.3.6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2.3.6.b 다른 ASN의 라이선스 보유자의 경기참가를 허가한 ASN은 최소한 다음 사항을 공식 문서에 (특히 참가 신청 서식에) 보이도록 해서 FIA 그리고 경기 참가자와 선수에게 이를 제공할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2.3.6.b.i 서킷이 FIA 가 정한 경기용 자동차의 범주에 부합하는 유효한 FIA 국제 공인 서킷, 또는 관련된 ASN이 발급한 국내 공인 서킷인지에 대한 명확한 정보.

2.3.6.b.ii 서킷의 공인 라이선스에 따른 경기 참가가 허가된 자동차의 범주에 관한 정보.

2.3.6.b.iii 그 경기에 참가하기 위해서 필요한 선수 라이선스의 등급에 관한 정보.

2.3.7 해외 참가를 위해 FIA에 등록한 국내 챔피언십, 컵, 트로피, 챌린지 또는 시리즈 경기

2.3.7.a 해외 참가를 위해 FIA에 등록한 국내경기로 구성된 국내 챔피언십, 컵, 트로피, 챌린지 또는 시리즈 경기에 참가하는 참가자 및 드라이버는 국제 라이선스를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2.3.7.b 해외 참가를 위한 국내 챔피언십, 컵, 트로피, 챌린지 또는 시리즈를 FIA에 등록을 하려는 ASN은 반드시 FIA와 참가자 및 드라이버에게 스포츠 규정과 기술규정을 공식 문서(특히 참가 신청 서식에) 통해 제출할 의무가 있다.

2.3.7.b.i 서킷 또는 코스의 경기 참가 자격이 있는 경기용 자동차의 범주에 부합하는 현재 유효한 FIA 국제 공인 또는 FIA의 허용 여부에 대한 명확한 정보.

2.3.7.b.ii 해당 서킷에 대한 FIA의 서킷 공인 및 허용에 따른 챔피언십, 컵, 트로피, 챌린지 또

<p>2.3.8 해외에서 열리는 국내경기에 참가하고자 하는 국내 팀과 선수는 KARA의 허가를 받아야만 참가할 수 있다.</p> <p>2.3.9 위의 허가는 KARA가 편리하다고 판단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진다.</p> <p>2.3.10 주최자가 라이선스를 발급한 ASN의 허가가 없는 외국 경기 참가자 그리고/또는 선수의 참가를 받아들일 경우, 주최자는 위반을 저지른 것이 된다. KARA에 이 사실이 통보되면 주최자는 벌금 처분을 받으며, 그 액수는 KARA의 재량에 맡긴다.</p> <p>2.3.11 오로지 KARA의 국내캘린더에 등록된 경기에 대해서 KARA가 그 라이선스 보유자에 대해서만 참가를 허가 할 수 있다.</p> <p>2.3.12 EU의 프로페셔널 팀 또는 선수는 유럽연합 또는 이들 나라의 국민들과 같은 기반을 가진 비슷한 나라에서 열리는 국내경기에 참가하고 포인트를 얻을 권리가 있다.</p>	<p>는 시리즈 경기 참가 가능 차량 등급에 대한 정보.</p> <p>2.3.7.b.iii FIA의 기준에 따른 해외 참가를 위한 챔피언십, 컵, 트로피, 챌린지 또는 시리즈 경기 참가 가능 국제 드라이버 라이선스 등급에 관한 정보.</p> <p>2.3.8 해외에서 열리는 국내경기에 참가하고자 하는 국내 팀과 선수는 KARA의 허가를 받아야만 참가할 수 있다.</p> <p>2.3.8.a 위의 허가는 KARA가 편리하다고 판단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진다.</p> <p>2.3.8.b 주최자가 라이선스를 발급한 ASN의 허가가 없는 외국 경기 참가자 그리고/또는 선수의 참가를 받아들일 경우, 주최자는 위반을 저지른 것이 된다. KARA에 이 사실이 통보되면 주최자는 벌금 처분을 받으며, 그 액수는 KARA의 재량에 맡긴다.</p> <p>2.3.8.c <del>오로지</del> KARA의 국내캘린더에 등록된 경기에 대해서 KARA가 그 라이선스 보유자에 대해서만 참가를 허가 할 수 있다.</p> <p>2.3.9 EU의 프로페셔널 팀 또는 선수는 유럽연합 또는 이들 나라의 국민들과 같은 기반을 가진 비슷한 나라에서 열리는 국내경기에 참가하고 포인트를 얻을 권리가 있다.</p> <p>2.3.10 여권상 국적과 다른 타국 ASN의 라이선스를 보유한 선수는 국적 ASN (Parent ASN)의 규정을 근거를 조건으로, 국적 ASN에서 열리는 국내 대회 참가가 할 수 있다.</p>
--	--



~~2.3.13 더 나아가, 다른 ASN의 라이선스 보유자가 참가하는 것을 받아들이는 경기를 공인한 ASN은 최소한 다음 사항을 공식 문서에 (특히 참가 신청 서식에) 보이도록 해서 FIA 그리고 경기 참가자와 선수에게 이를 제공할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2.3.13.a 서킷이 경기에 참가 자격이 있는 경차용 자동차의 범주에 부합하는 현재 유효한 FIA 국제 공인, 또는 관련된 ASN이 발급한 국내 공인 대상인지에 대한 명확한 정보.~~

~~2.3.13.b 서킷의 공인 라이선스에 따른 경기 참가가 허가된 자동차의 범주에 관한 정보.~~

~~2.3.13.c 그 경기에 참가하기 위해서 필요한 선수 라이선스의 등급에 관한 정보.~~

2.3.14 국내 또는 국제경기에 참가하는 경기 참가자 또는 선수가 특정한 조건을 준수해야 할 경우, 이를 “제한된” 경기로 부를 수 있다. 초청에 따른 경기는 제한된 경기가 된다.

2.3.15 클로즈드 경기는 KARA에게 허가를 받아야 하며 특정한 예외 상황에서는 여러 클럽이 개최하는 협정을 승인할 수 있다.

## 제2.4조 챔피언십, 컵, 트로피, 챌린지와 시리즈

### 2.4.1 국제챔피언십

2.4.1.a FIA만이 국제챔피언십을 허가할 수 있다.

2.4.1.b 국제챔피언십은 FIA 또는 FIA에게 서면으로 인정을 받은 단체만이 조직할 수 있다. 이 경우, 챔피언십 주최자는 경기주최자와 같은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2.4.1.c FIA 이름을 쓰는 국제챔피언십은 FIA 또는 FIA가 서면으로 인정한 단체만이 조직할 수 있으며 “세계”라는 단어를 포함하는 단어는 (또는 어느 언어에서든 “세계”에서 파생되어 나온 비슷한 뜻의 어떤 단어든) 적용되는 규정이 적어도 다음의 요구 조건을 준수하며 전체 시즌에 걸쳐서 평균으로 적어도 네 개의 자동차 제조사를 참가시키는 추가 필수 조건 안에서만 가능하다.

2.3.11 국내 또는 국제경기에 참가하는 경기 참가자 또는 선수가 특정한 조건을 준수해야 할 경우, 이를 “제한된” 경기로 부를 수 있다. 초청에 따른 경기는 제한된 경기가 된다.

2.3.12 클로즈드 경기는 KARA에게 허가를 받아야 하며 특정한 예외 상황에서는 여러 클럽이 개최하는 협정을 승인할 수 있다.

## 제2.4조 챔피언십, 컵, 트로피, 챌린지와 시리즈

### 2.4.1 국제챔피언십

2.4.1.a FIA만이 국제챔피언십을 허가할 수 있다.

2.4.1.b 국제챔피언십은 FIA 또는 FIA에게 서면으로 인정을 받은 단체만이 조직할 수 있다. 이 경우, 챔피언십 주최자는 경기주최자와 같은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2.4.1.c FIA 이름을 쓰는 국제챔피언십은 FIA 또는 FIA가 서면으로 인정한 단체만이 조직할 수 있으며 “세계”라는 단어를 포함하는 단어는 (또는 어느 언어에서든 “세계”에서 파생되어 나온 비슷한 뜻의 어떤 단어든) 적용되는 규정이 적어도 다음의 요구 조건을 준수하며 전체 시즌에 걸쳐서 평균으로 적어도 네 개의 자동차 제조사를 참가시키는 추가 필수 조건 안에서만 가능하다.

<p><b>2.4.2 국제 컵, 트로피, 챌린지 그리고 시리즈</b></p> <p>2.4.2.a 컵, 트로피, 챌린지 그리고 시리즈는 같은 규정으로 관할되는 여러 개의 경기, 또는 하나의 경기로 구성될 수 있다.</p> <p>2.4.2.b 국제경기만이 국제 컵, 트로피, 챌린지 또는 시리즈를 구성할 수 있다.</p> <p>2.4.2.c 모든 국제 컵, 트로피, 챌린지 또는 시리즈는 신청한 ASN이 먼저 FIA로부터 서면 승인을 받아야 조직될 수 있으며 승인을 위해 다음 사항을 검토한다.</p> <p>2.4.2.c.i 특히 안전 측면을 고려한 경기규정과 기술규정</p> <p>2.4.2.c.ii 캘린더 등록 여부</p> <p>2.4.2.c.iii 컵, 트로피, 챌린지 또는 시리즈에 포함되는 하나 이상의 경기가 열리는 ASN로부터 받은 사전 허가(날짜 포함)</p> <p>2.4.2.c.iv 레이스를 위한 서킷의 공인이 참가 자동차의 범주에 적합한지, 그리고 모든 경기에 대하여 안전과 의료 지원에 관한 모든 FIA 규정이 준수되는지에 대한 검증.</p> <p>2.4.2.c.v 컵, 트로피, 챌린지 또는 시리즈의 타이틀이 지리적 범위, 그리고 모든 기술 및 경기 조건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검증.</p> <p>2.4.2.d FIA 이름을 쓰는 챔피언십, 컵, 트로피, 챌린지 또는 시리즈는 FIA의 소유이며 FIA 또는 FIA가 서면으로 인정한 단체만이 조직할 수 있다. 이 경우, 컵, 트로피, 챌린지 또는 시리즈의 주최자는 경기의 주최자와 같은 권리 및 의무를 가진다.</p> <p><b>2.4.3 “세계(월드)” 명칭의 사용</b></p> <p>2.4.3.a FIA 이름을 쓰는 챔피언십, 컵, 트로피, 챌린지 또는 시리즈는 적어도 다음 요구조건을 준수하며 전체 시즌에 걸쳐서 적어도 평균 네 개의 자동차 제조사를 참가시키는 추가 필수 조건 안에서만 “세계”(또는 어느 언어에서든 “세계”에서 파생되어 나온 비슷한 뜻의 모든 단어) 라는 단어가 포함된 타이틀을 쓸 수 있다.</p>	<p><b>2.4.2 국제 컵, 트로피, 챌린지 그리고 시리즈</b></p> <p>2.4.2.a 컵, 트로피, 챌린지 그리고 시리즈는 같은 규정으로 관할되는 여러 개의 경기, 또는 하나의 경기로 구성될 수 있다.</p> <p>2.4.2.b 국제경기만이 국제 컵, 트로피, 챌린지 또는 시리즈를 구성할 수 있다.</p> <p>2.4.2.c 모든 국제 컵, 트로피, 챌린지 또는 시리즈는 신청한 ASN이 먼저 FIA로부터 서면 승인을 받아야 조직될 수 있으며 승인을 위해 다음 사항을 검토한다.</p> <p>2.4.2.c.i 특히 안전 측면을 고려한 경기규정과 기술규정</p> <p>2.4.2.c.ii 캘린더 등록 여부</p> <p>2.4.2.c.iii 컵, 트로피, 챌린지 또는 시리즈에 포함되는 하나 이상의 경기가 열리는 ASN로부터 받은 사전 허가(날짜 포함)</p> <p>2.4.2.c.iv 레이스를 위한 서킷의 공인이 참가 자동차의 범주에 적합한지, 그리고 모든 경기에 대하여 안전과 의료 지원에 관한 모든 FIA 규정이 준수되는지에 대한 검증.</p> <p>2.4.2.c.v 컵, 트로피, 챌린지 또는 시리즈의 타이틀이 지리적 범위, 그리고 모든 기술 및 경기 조건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검증.</p> <p>2.4.2.d FIA 이름을 쓰는 챔피언십, 컵, 트로피, 챌린지 또는 시리즈는 FIA의 소유이며 FIA 또는 FIA가 서면으로 인정한 단체만이 조직할 수 있다. 이 경우, 컵, 트로피, 챌린지 또는 시리즈의 주최자는 경기의 주최자와 같은 권리 및 의무를 가진다.</p> <p><b>2.4.3 “세계(월드)” 명칭의 사용</b></p> <p>2.4.3.a FIA 이름을 쓰는 챔피언십, 컵, 트로피, 챌린지 또는 시리즈는 적어도 다음 요구조건을 준수하며 전체 시즌에 걸쳐서 적어도 평균 네 개의 자동차 제조사를 참가시키는 추가 필수 조건 안에서만 “세계”(또는 어느 언어에서든 “세계”에서 파생되어 나온 비슷한 뜻의 모든 단어) 라는 단어가 포함된 타이틀을 쓸 수 있다.</p>
--	--

2.4.3.b 국제 컵, 트로피, 챌린지 또는 시리즈는 FIA의 허가를 받지 않고서는 “세계”라는 단어(또는 어느 언어에서든 “세계”에서 파생되어 나온 비슷한 뜻의 모든 단어)를 타이틀에 포함할 수 없다. 일반 규칙으로서, FIA는 다음 필수 조건에 부합하며 FIA가 이를 허가하는 것이 스포츠의 이익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될 때에만 허가를 한다. 경기가 이들 요구 조건을 준수하지 못했을 때에는 FIA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2.4.3.b.i 컵, 트로피, 챌린지, 또는 시리즈 챌린더는 같은 시즌 동안에 적어도 3개 대륙에서 열리는 경기를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

2.4.3.b.ii 컵, 트로피, 챌린지, 또는 시리즈가 단 하나의 경기로만 구성되어 있을 때에는 이 하나의 경기에 참가할 경기 참가자를 선발하는 기능을 하는 히트, 경기, 또는 다른 시리즈는 적어도 3개 대륙에서 개최되어야 하며 이 경기들은 국제스포츠챌린더에 유효하게 등록되어 있어야 한다.

2.4.3.b.iii 국제스포츠규정 또는 다른 곳에 서술되어 있는 모든 권리 또는 권한에 더해서, FIA는 “세계”라는 타이틀을 사용하거나 사용이 신청된 컵, 트로피, 챌린지, 또는 시리즈의 어떤 경기든 국제스포츠규정 및 적용되는 규정의 원칙이 완전히 준수되는지를 검증하기 위한 조사를 수행할 권리를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주최자는 받아들이고 인정해야 한다. 주최자는 이러한 목적을 위해서 FIA가 서킷 전체 그리고 모든 관련 문서를 볼 수 있도록 이러한 조사에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2.4.3.b.iv 관련 컵, 트로피, 챌린지 또는 시리즈의 주최자는 각 경기에 대해서 FIA가 발표하고 정기적으로 갱신하는 심사 명단 가운데서 적어도 한 명을 심사위원으로 임명해야 한다. 그는 심사위원회의 의장 직무를 수행하며 경기 동안에 기록된 어떠한 심각한 규칙 위반이나 부정사항을 FIA와 경기를 제청한 ASN 그리고 경기가 개최되고 있는 영토의 관할 ASN에게 보고해야 한다.

2.4.3.c FIA는 “세계”라는 용어를 오래 전부터 관습으로 써 왔다는 사실을 입증한 시리즈에 대해서는 예외로 면제를 인정할 수 있다.

#### 2.4.4 국내챔피언십

2.4.4.a KARA만이 국내챔피언십을 허가할 수 있

2.4.3.b 국제 컵, 트로피, 챌린지 또는 시리즈는 FIA의 허가를 받지 않고서는 “세계”라는 단어(또는 어느 언어에서든 “세계”에서 파생되어 나온 비슷한 뜻의 모든 단어)를 타이틀에 포함할 수 없다. 일반 규칙으로서, FIA는 다음 필수 조건에 부합하며 FIA가 이를 허가하는 것이 스포츠의 이익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될 때에만 허가를 한다. 경기가 이들 요구 조건을 준수하지 못했을 때에는 FIA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2.4.3.b.i 컵, 트로피, 챌린지, 또는 시리즈 챌린더는 같은 시즌 동안에 적어도 3개 대륙에서 열리는 경기를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

2.4.3.b.ii 컵, 트로피, 챌린지, 또는 시리즈가 단 하나의 경기로만 구성되어 있을 때에는 이 하나의 경기에 참가할 경기 참가자를 선발하는 기능을 하는 히트, 경기, 또는 다른 시리즈는 적어도 3개 대륙에서 개최되어야 하며 이 경기들은 국제스포츠챌린더에 유효하게 등록되어 있어야 한다.

2.4.3.b.iii 국제스포츠규정 또는 다른 곳에 서술되어 있는 모든 권리 또는 권한에 더해서, FIA는 “세계”라는 타이틀을 사용하거나 사용이 신청된 컵, 트로피, 챌린지, 또는 시리즈의 어떤 경기든 국제스포츠규정 및 적용되는 규정의 원칙이 완전히 준수되는지를 검증하기 위한 조사를 수행할 권리를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주최자는 받아들이고 인정해야 한다. 주최자는 이러한 목적을 위해서 FIA가 서킷 전체 그리고 모든 관련 문서를 볼 수 있도록 이러한 조사에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2.4.3.b.iv 관련 컵, 트로피, 챌린지 또는 시리즈의 주최자는 각 경기에 대해서 FIA가 발표하고 정기적으로 갱신하는 심사 명단 가운데서 적어도 한 명을 심사위원으로 임명해야 한다. 그는 심사위원회의 의장 직무를 수행하며 경기 동안에 기록된 어떠한 심각한 규칙 위반이나 부정사항을 FIA와 경기를 제청한 ASN 그리고 경기가 개최되고 있는 영토의 관할 ASN에게 보고해야 한다.

2.4.3.c FIA는 “세계”라는 용어를 오래 전부터 관습으로 써 왔다는 사실을 입증한 시리즈에 대해서는 예외로 면제를 인정할 수 있다.

#### 2.4.4 국내챔피언십

2.4.4.a KARA만이 국내챔피언십을 허가할 수 있

<p>다.</p> <p>2.4.4.b 국내챔피언십은 KARA가 직접 또는 KARA로부터 서면으로 인정을 받은 단체만이 조직할 수 있다.</p> <p>2.4.4.c 최대 1개의 국내챔피언십 경기가 다른 나라의 영토에서 열릴 수 있으며, 다음 조건의 대상이 된다.</p> <p>2.4.4.c.i 챔피언십이 조직된 나라와 공유 국경(단, 해상 국경인 경우에는 FIA는 적절한 지리적 관계를 가진 추가 국가를 고려한다) 을 가진 나라에서 열린다.</p> <p>2.4.4.c.ii 국내챔피언십의 기술과 경기규정은 FIA가 접수하고 승인한다.</p> <p>2.4.4.c.iii 경기가 열리는 코스는 FIA로부터 승인을 받았으며, 서킷 레이스가 공인된 경우에는 안전과 의료 지원에 대한 모든 FIA 규정을 준수한다.</p> <p>2.4.4.d 국내 카트챔피언십만은 예외로, 국내의 서킷 영역이 국내 카트 경기를 개최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는 점을 FIA가 만족할 수 있을 만큼 입증하면 KARA는 자체 국내 챔피언십을 조직하기 위해서 관련 ASN과 합의를 거쳐서 국내경기를 공유 국경(단, 해상 국경인 경우에는 FIA는 적절한 지리적 관계를 가진 추가 국가를 고려한다)이 있는 여러 나라에서 개최할 수 있다.</p> <p>2.4.4.e 이에 더해 FIA는 그 재량권으로, 해당 ASN 관할 영토 바깥에서 2개 이상 경기가 열리는, 오로지 클로즈드 경기로만 구성되는 국내챔피언십을 허가할 수 있다.</p> <p><b>2.4.5 국내 컵, 트로피, 챌린지 또는 시리즈</b></p> <p>2.4.5.a KARA만이 국내 컵, 트로피, 챌린지 또는 시리즈를 허가할 수 있다.</p> <p>2.4.5.b 국내 컵, 트로피, 챌린지 또는 시리즈는 같은 규정의 지배를 받는 여러 개의 경기, 또는 단일 경기로 구성될 수 있다.</p> <p><b>제2.5조 파크 피미</b></p> <p>2.5.1 파크 피미 안에는 지정된 오피셜만이 들어</p>	<p>다.</p> <p>2.4.4.b 국내챔피언십은 KARA가 직접 또는 KARA로부터 서면으로 인정을 받은 단체만이 조직할 수 있다.</p> <p>2.4.4.c 최대 1개의 국내챔피언십 경기가 다른 나라의 영토에서 열릴 수 있으며, 다음 조건의 대상이 된다.</p> <p>2.4.4.c.i 챔피언십이 조직된 나라와 공유 국경(단, 해상 국경인 경우에는 FIA는 적절한 지리적 관계를 가진 추가 국가를 고려한다) 을 가진 나라에서 열린다.</p> <p>2.4.4.c.ii 국내챔피언십의 기술과 경기규정은 FIA가 접수하고 승인한다.</p> <p>2.4.4.c.iii 경기가 열리는 코스는 FIA로부터 승인을 받았으며, 서킷 레이스가 공인된 경우에는 안전과 의료 지원에 대한 모든 FIA 규정을 준수한다.</p> <p>2.4.4.d 국내 카트챔피언십만은 예외로, 국내의 서킷 영역이 국내 카트 경기를 개최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는 점을 FIA가 만족할 수 있을 만큼 입증하면 KARA는 자체 국내 챔피언십을 조직하기 위해서 관련 ASN과 합의를 거쳐서 국내경기를 공유 국경(단, 해상 국경인 경우에는 FIA는 적절한 지리적 관계를 가진 추가 국가를 고려한다)이 있는 여러 나라에서 개최할 수 있다.</p> <p>2.4.4.e 이에 더해 FIA는 그 재량권으로, 해당 ASN 관할 영토 바깥에서 2개 이상 경기가 열리는, 오로지 클로즈드 경기로만 구성되는 국내챔피언십을 허가할 수 있다.</p> <p><b>2.4.5 국내 컵, 트로피, 챌린지 또는 시리즈</b></p> <p>2.4.5.a KARA만이 국내 컵, 트로피, 챌린지 또는 시리즈를 허가할 수 있다.</p> <p>2.4.5.b 국내 컵, 트로피, 챌린지 또는 시리즈는 같은 규정의 지배를 받는 여러 개의 경기, 또는 단일 경기로 구성될 수 있다.</p> <p><b>제2.5조 파크 피미</b></p> <p>2.5.1 파크 피미 안에는 지정된 오피셜만이 들어</p>
--	--

<p>을 수 있다. 이들 오피셜 또는 관련 규정이 허용하지 않으면 어떠한 조작, 검사, 조정 또는 수리도 허용되지 않는다.</p> <p>2.5.2 파크 퍼미는 차량 검사가 규정되어 있는 경기에서는 의무다.</p> <p>2.5.3 경기에 적용되는 규정에서는 파크 퍼미가 설치되는 장소를 지정해야 한다.</p> <p>2.5.4 클로즈된 코스(Closed course)에서 열리는 경기에서, 파크 퍼미는 결승선(또는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출발선)과 아주 가까워야 한다.</p> <p>2.5.5 경기가 끝날 때 결승선과 파크 퍼미 입구 사이 구간은 파크 퍼미 규정을 적용 받는다.</p> <p>2.5.6 파크 퍼미는 적절한 크기를 가지며 자동차가 수용되어 있는 동안에 허가되지 않은 사람이 들어올 수 없도록 적절히 폐쇄되어야 한다.</p> <p>2.5.7 감시는 파크 퍼미 운영에 대한 책임을 진 오피셜이 수행하며 이들만이 경기 참가자에게 지시를 내릴 수 있다.</p> <p>2.5.8 랠리와 크로스컨트리 랠리에서는 통제 구역 그리고 리그룹 구역은 파크 퍼미로 간주된다. 적용되는 규정에서 특별히 다르게 정하지 않는 한, 통제 구역 안에서는 수리나 지원이 이루어질 수 없다.</p> <p><b>제2.6조 라이선스</b></p> <p><b>2.6.1 총괄 원칙</b></p> <p>2.6.1.a 라이선스 보유자는 국제스포츠규정의 본문을 숙지한 것으로 간주되며 그 규정을 따라야 한다.</p> <p>2.6.1.b 국제스포츠규정의 조건 안에서 라이선스를 얻은 어떤 참가자들에게든 해당되는 경기 및 기술규정 그리고 도덕 현상이 적용된다.</p> <p>2.6.1.c 소속 ASN에서, 또는 소속 ASN의 인정을 받은 다른 ASN에서 발급한 라이선스를 가지고 있지 않은 어떤 사람도 경기에 참가할 수 없다.</p>	<p>을 수 있다. 이들 오피셜 또는 관련 규정이 허용하지 않으면 어떠한 조작, 검사, 조정 또는 수리도 허용되지 않는다.</p> <p>2.5.2 파크 퍼미는 차량 검사가 규정되어 있는 경기에서는 의무다.</p> <p>2.5.3 경기에 적용되는 규정에서는 파크 퍼미가 설치되는 장소를 지정해야 한다.</p> <p>2.5.4 클로즈된 코스(Closed course)에서 열리는 경기에서, 파크 퍼미는 결승선(또는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출발선)과 아주 가까워야 한다.</p> <p>2.5.5 경기가 끝날 때 결승선과 파크 퍼미 입구 사이 구간은 파크 퍼미 규정을 적용 받는다.</p> <p>2.5.6 파크 퍼미는 적절한 크기를 가지며 자동차가 수용되어 있는 동안에 허가되지 않은 사람이 들어올 수 없도록 적절히 폐쇄되어야 한다.</p> <p>2.5.7 감시는 파크 퍼미 운영에 대한 책임을 진 오피셜이 수행하며 이들만이 경기 참가자에게 지시를 내릴 수 있다.</p> <p>2.5.8 랠리와 크로스컨트리 랠리에서는 통제 구역 그리고 리그룹 구역은 파크 퍼미로 간주된다. 적용되는 규정에서 특별히 다르게 정하지 않는 한, 통제 구역 안에서는 수리나 지원이 이루어질 수 없다.</p> <p><b>제2.6조 라이선스</b></p> <p><b>2.6.1 총괄 원칙</b></p> <p>2.6.1.a 라이선스 보유자는 국제스포츠규정의 본문을 숙지한 것으로 간주되며 그 규정을 따라야 한다.</p> <p>2.6.1.b 국제스포츠규정의 조건 안에서 라이선스를 얻은 어떤 참가자들에게든 해당되는 경기 및 기술규정 그리고 도덕 현상이 적용된다.</p> <p>2.6.1.c 소속 ASN에서, 또는 소속 ASN의 인정을 받은 다른 ASN에서 발급한 라이선스를 가지고 있지 않은 어떤 사람도 경기에 참가할 수 없다.</p>
---	---

<p>2.6.1.d 국제라이선스는 해마다 1월 1일에 갱신되어야 한다.</p> <p>2.6.1.e 각 ASN과 KARA는 FIA 규정에 따라서 라이선스를 발급해야 한다.</p> <p>2.6.1.f 라이선스는 가명으로 발급될 수 있으나, 한 사람이 두 개의 가명을 쓸 수는 없다.</p> <p>2.6.1.g 라이선스 발급 또는 갱신을 위한 비용이 있을 수 있다.</p> <p>2.6.1.h KARA는 FIA를 대표하는 단체가 없는 나라에 속해 있는 외국인에게 FIA의 사전 동의를 받아 라이선스를 발급할 수 있다. 이러한 조건으로 발급된 라이선스의 목록은 FIA 사무국에서 보유한다.</p> <p>2.6.1.i KARA는 발급된 라이선스의 등록 명부를 승인하고 보관할 책임을 맡아야 한다.</p>	<p>2.6.1.d 국제라이선스는 해마다 1월 1일에 갱신되어야 한다.</p> <p>2.6.1.e 각 ASN과 KARA는 FIA 규정에 따라서 라이선스를 발급해야 한다.</p> <p>2.6.1.f 라이선스는 가명으로 발급될 수 있으나, 한 사람이 두 개의 가명을 쓸 수는 없다.</p> <p>2.6.1.g 라이선스 발급 또는 갱신을 위한 비용이 있을 수 있다.</p> <p>2.6.1.h KARA는 FIA를 대표하는 단체가 없는 나라에 속해 있는 외국인에게 FIA의 사전 동의를 받아 라이선스를 발급할 수 있다. 이러한 조건으로 발급된 라이선스의 목록은 FIA 사무국에서 보유한다.</p> <p>2.6.1.i KARA는 발급된 라이선스의 등록 명부를 승인하고 보관할 책임을 맡아야 한다.</p>
<p><b>2.6.2 슈퍼 라이선스</b></p> <p>2.6.2.a 슈퍼 라이선스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관련된 신청 서식을 완전하게 작성하고 이에 서명해야 한다. 이는 해마다 갱신되어야 한다.</p> <p>2.6.2.b FIA는 슈퍼 라이선스 발급을 거부할 권한을 보유한다. 특히 후보가 국제스포츠규정에 덧붙인 FIA의 도덕현장에 정의된 도덕 규율에 불만을 가질 경우에는 발급을 거부할 수 있다. FIA는 어떤 이유로 거부하든 그 이유를 통보해야 한다.</p> <p>2.6.2.c 슈퍼 라이선스 문서는 FIA의 자산이며 이를 각 보유자에게 전달한다.</p> <p>2.6.2.d 징계 결과로 슈퍼 라이선스가 정지 또는 취소되면 그 보유자는 출장 정지 또는 취소 기간 동안 FIA 챔피언십에 참가 할 수 없다.</p> <p>2.6.2.e 교통 법규 위반 중 국내의 경찰 당국이 확인 한 결과, 그 위반이 심각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협에 빠뜨렸거나, FIA가 지키고자 하는 모터스포츠의 이미지 또는 가치에 위배되는 경우에는 국제스포츠규정을 위반한 것이 된다.</p> <p>2.6.2.f 교통 법규 위반을 저지른 슈퍼 라이선스 보유자는,</p>	<p><b>2.6.2 슈퍼 라이선스</b></p> <p>2.6.2.a 슈퍼 라이선스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관련된 신청 서식을 완전하게 작성하고 이에 서명해야 한다. 이는 해마다 갱신되어야 한다.</p> <p>2.6.2.b FIA는 슈퍼 라이선스 발급을 거부할 권한을 보유한다. 특히 후보가 국제스포츠규정에 덧붙인 FIA의 도덕현장에 정의된 도덕 규율에 불만을 가질 경우에는 발급을 거부할 수 있다. FIA는 어떤 이유로 거부하든 그 이유를 통보해야 한다.</p> <p>2.6.2.c 슈퍼 라이선스 문서는 FIA의 자산이며 이를 각 보유자에게 전달한다.</p> <p>2.6.2.d 징계 결과로 슈퍼 라이선스가 정지 또는 취소되면 그 보유자는 출장 정지 또는 취소 기간 동안 FIA 챔피언십에 참가 할 수 없다.</p> <p>2.6.2.e 교통 법규 위반 중 국내의 경찰 당국이 확인 한 결과, 그 위반이 심각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협에 빠뜨렸거나, FIA가 지키고자 하는 모터스포츠의 이미지 또는 가치에 위배되는 경우에는 국제스포츠규정을 위반한 것이 된다.</p> <p>2.6.2.f 교통 법규 위반을 저지른 슈퍼 라이선스 보유자는,</p>

<p>2.6.2.f.i FIA로부터 경고를 받을 수 있다.</p> <p>2.6.2.f.ii 국제재판소 결정에 따라 공익 업무 수행 의무를 지거나 슈퍼 라이선스를 일시 또는 영구 취소당할 수 있다.</p> <p><b>2.6.3 EU 프로페셔널 팀 또는 선수</b></p> <p>2.6.3.a EU 프로페셔널 팀 또는 선수는 EU 국가 (또는 FIA가 결정한 이에 상당한 나라)에서 열리는 국내경기에 특별 허가가 없어도 참가가 허용된다. 단, 카트에서는 선수와 경기 참가자가 국제 라이선스를 보유해야 하는 의무를 조건으로 한다.</p> <p>2.6.3.b 이러한 국내 라이선스에는 EU 깃발이 들어 있어야 한다.</p> <p>2.6.3.c 각 EU ASN, 또는 FIA가 결정한 이에 상당한 나라의 ASN은 이들 규정을 참작하여 보험 처리를 보장한다.</p> <p>2.6.3.d 이들 프로페셔널 팀 또는 선수는 그가 경기를 하는 나라의 ASN의 관할권, 그리고 라이선스를 발급한 ASN의 관할권 안에 들어간다.</p> <p>2.6.3.e 이러한 라이선스에 대한 정지가 결정되면 이는 FIA 국제모터스포츠 공고 그리고/또는 FIA 웹사이트 <a href="http://www.fia.com">www.fia.com</a>에 공개된다.</p> <p><b>2.6.4 FIA 월드챔피언십에 참가하는 팀 관련 스태프에 대한 등록증</b></p> <p>2.6.4.a FIA 월드챔피언십에서 아래와 같은 팀 관련 스태프 구성원은 FIA에 등록을 의무로 한다.</p> <p>2.6.4.b FIA 월드챔피언십에 참가하는 경기 참가자를 대표하여 다음과 같은 역할을 일부 또는 전부 수행하는 어떤 사람이든 적절한 절차대로 FIA에 등록을 해야 한다.</p> <p>2.6.4.b.i 팀 단장 (Team Principal) : 팀을 위한 가장 중요한 결정을 책임지는 사람.</p> <p>2.6.4.b.ii 경기 감독 (Sporting Director) : 팀이 월드챔피언십 경기규정을 준수한다는 것을 보장할 책임을 맡은 사람.</p> <p>2.6.4.b.iii 기술 감독 (Technical Director) : 팀</p>	<p>2.6.2.f.i FIA로부터 경고를 받을 수 있다.</p> <p>2.6.2.f.ii 국제재판소 결정에 따라 공익 업무 수행 의무를 지거나 슈퍼 라이선스를 일시 또는 영구 취소당할 수 있다.</p> <p><b>2.6.3 EU 프로페셔널 팀 또는 선수</b></p> <p>2.6.3.a EU 프로페셔널 팀 또는 선수는 EU 국가 (또는 FIA가 결정한 이에 상당한 나라)에서 열리는 국내경기에 특별 허가가 없어도 참가가 허용된다. 단, 카트에서는 선수와 경기 참가자가 국제 라이선스를 보유해야 하는 의무를 조건으로 한다.</p> <p>2.6.3.b 이러한 국내 라이선스에는 EU 깃발이 들어 있어야 한다.</p> <p>2.6.3.c 각 EU ASN, 또는 FIA가 결정한 이에 상당한 나라의 ASN은 이들 규정을 참작하여 보험 처리를 보장한다.</p> <p>2.6.3.d 이들 프로페셔널 팀 또는 선수는 그가 경기를 하는 나라의 ASN의 관할권, 그리고 라이선스를 발급한 ASN의 관할권 안에 들어간다.</p> <p>2.6.3.e 이러한 라이선스에 대한 정지가 결정되면 이는 FIA 국제모터스포츠 공고 그리고/또는 FIA 웹사이트 <a href="http://www.fia.com">www.fia.com</a>에 공개된다.</p> <p><b>2.6.4 FIA 월드챔피언십에 참가하는 팀 관련 스태프에 대한 등록증</b></p> <p>2.6.4.a FIA 월드챔피언십에서 아래와 같은 팀 관련 스태프 구성원은 FIA에 등록을 의무로 한다.</p> <p>2.6.4.b FIA 월드챔피언십에 참가하는 경기 참가자를 대표하여 다음과 같은 역할을 일부 또는 전부 수행하는 어떤 사람이든 적절한 절차대로 FIA에 등록을 해야 한다.</p> <p>2.6.4.b.i 팀 단장 (Team Principal) : 팀을 위한 가장 중요한 결정을 책임지는 사람.</p> <p>2.6.4.b.ii 경기 감독 (Sporting Director) : 팀이 월드챔피언십 경기규정을 준수한다는 것을 보장할 책임을 맡은 사람.</p> <p>2.6.4.b.iii 기술 감독 (Technical Director) : 팀</p>
--	--

<p>이 월드챔피언십 기술규정을 준수한다는 것을 보장할 책임을 맡은 사람.</p> <p>2.6.4.b.iv 팀 매니저 : 경기에서 팀의 운영 책임을 맡은 사람.</p> <p>2.6.4.b.v 레이스 엔지니어 또는 그에 상당하는 사람 : 팀의 자동차 가운데 한 대에 대한 책임을 맡은 사람.</p> <p>2.6.4.c FIA 포뮬러 1 월드챔피언십에서 등록해야 하는 사람들의 최소 숫자는 경기 참가자 당 6명이다. 다른 FIA 월드챔피언십에서는 FIA 경기 위원회가 각 챔피언십의 특성에 따라서 숫자를 조정할 책임을 가진다.</p> <p>2.6.4.d 누구든 정당하게 등록된 팀의 스태프 구성원은 참여자(Participant)로 간주된다.</p> <p>2.6.4.e FIA 월드챔피언십에 참가 신청할 때, 팀은 스태프로 등록된 사람들이 일정 서식에 서명을 한 스태프 명단을 FIA에 전달해야 한다.</p> <p>2.6.4.f 적절하게 등록된 경기 참가자 스태프의 각 구성원은 FIA로부터 등록증을 받는다. 이 등록증은 FIA가 작성하고 발급하며 FIA의 재산으로 계속 남는다.</p> <p>2.6.4.g 등록은 해마다 1월 1일에 갱신되어야 한다.</p> <p>2.6.4.h FIA는 누구든 등록을 거부하거나 취소할 권한을 보유하며, 특히 그가 국제스포츠규정에 더하여 FIA의 도덕헌장에 정의된 도덕 규율에 불만을 가질 경우에는 등록을 거부 또는 취소할 수 있다. FIA는 어떠한 이유로 이러한 결정을 내리든 그 이유를 통보해야 한다.</p> <p>2.6.4.i FIA는 적절하게 등록된 경기 참가자의 스태프 구성원이 월드 챔피언십의 일부를 이루는 경기의 보호 구역에 출입할 권한을 일시 또는 완전 거부할 권한을 가진다.</p> <p>2.6.4.j 경기 참가자의 조직에 변화가 있어서 그 때문에 FIA에 등록해야 하는 스태프 구성원의 명단에 변동이 있을 경우, 경기 참가자는 이러한 변화가 생긴지 7일 안에 FIA에 이를 통보하고 같은</p>	<p>이 월드챔피언십 기술규정을 준수한다는 것을 보장할 책임을 맡은 사람.</p> <p>2.6.4.b.iv 팀 매니저 : 경기에서 팀의 운영 책임을 맡은 사람.</p> <p>2.6.4.b.v 레이스 엔지니어 또는 그에 상당하는 사람 : 팀의 자동차 가운데 한 대에 대한 책임을 맡은 사람.</p> <p>2.6.4.c FIA 포뮬러 1 월드챔피언십에서 등록해야 하는 사람들의 최소 숫자는 경기 참가자 당 6명이다. 다른 FIA 월드챔피언십에서는 FIA 경기 위원회가 각 챔피언십의 특성에 따라서 숫자를 조정할 책임을 가진다.</p> <p>2.6.4.d 누구든 정당하게 등록된 팀의 스태프 구성원은 참여자(Participant)로 간주된다.</p> <p>2.6.4.e FIA 월드챔피언십에 참가 신청할 때, 팀은 스태프로 등록된 사람들이 일정 서식에 서명을 한 스태프 명단을 FIA에 전달해야 한다.</p> <p>2.6.4.f 적절하게 등록된 경기 참가자 스태프의 각 구성원은 FIA로부터 등록증을 받는다. 이 등록증은 FIA가 작성하고 발급하며 FIA의 재산으로 계속 남는다.</p> <p>2.6.4.g 등록은 해마다 1월 1일에 갱신되어야 한다.</p> <p>2.6.4.h FIA는 누구든 등록을 거부하거나 취소할 권한을 보유하며, 특히 그가 국제스포츠규정에 더하여 FIA의 도덕헌장에 정의된 도덕 규율에 불만을 가질 경우에는 등록을 거부 또는 취소할 수 있다. FIA는 어떠한 이유로 이러한 결정을 내리든 그 이유를 통보해야 한다.</p> <p>2.6.4.i FIA는 적절하게 등록된 경기 참가자의 스태프 구성원이 월드 챔피언십의 일부를 이루는 경기의 보호 구역에 출입할 권한을 일시 또는 완전 거부할 권한을 가진다.</p> <p>2.6.4.j 경기 참가자의 조직에 변화가 있어서 그 때문에 FIA에 등록해야 하는 스태프 구성원의 명단에 변동이 있을 경우, 경기 참가자는 이러한 변화가 생긴지 7일 안에 FIA에 이를 통보하고 같은</p>
--	--



기한 안에 갱신된 명단을 제출하는 한편, 그 역할 수행이 중단된 사람의 등록증을 FIA에 반납해야 한다.

### 제2.7조 특별 조건

2.7.1 국제 랠리에 참가가 허가되는 자동차는 다음과 같다.

2.7.1.a 모든 국제 랠리에서 모든 자동차의 동력은 최소 무게/마력 비율이 3.4kg/hp(4.6kg/kw)로 제한된다. 어느 때든 그리고 어느 상황에서도, FIA는 이 동력 제한을 부과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할 수 있다.

2.7.1.b 다음 자동차만이 국제 랠리에 참가할 수 있다.

2.7.1.b.i 투어링 자동차 (그룹 A). 단, 특정한 진화를 제외하고는 호몰로게이션을 받은 형식과 다른 경우.

2.7.1.b.ii 프로덕션 자동차 (그룹 N, R 그리고 R GT).

2.7.1.c 특정한 진화를 제외하고는 호몰로게이션을 받은 형식과 다르지 않는 한, 그룹 A, N, R 그리고 RGT 자동차는 공인이 완료된 날짜 이후에도 4년까지는 다음을 조건으로 월드랠리 챔피언십을 제외한 국제 랠리 참가가 허용된다.

2.7.1.c.i 운영 점검과 차량 검사 과정에서 FIA 호몰로게이션 증명서를 제시해야 한다.

2.7.1.c.ii 차량은 공인이 완료된 날짜 기준으로 유효한 기술규정(국제스포츠규정 부칙 J)을 준수하며 기술 오피셜의 재량에 따른 판단으로 경기 참가에 아무런 문제도 없어야 한다.

2.7.1.d 이들 자동차에 쓰이는 터보 리스트릭터의 크기와 최소 무게는 현재 유효한 것이어야 한다.

### 2.7.2 크로스컨트리 랠리와 바하 크로스컨트리 랠리

FIA 기술규정에 정의된 크로스컨트리 자동차(그룹 T)만이 참가할 수 있으며 다른 어떤 자동차든 제외된다.

기한 안에 갱신된 명단을 제출하는 한편, 그 역할 수행이 중단된 사람의 등록증을 FIA에 반납해야 한다.

### 제2.7조 특별 조건

2.7.1 국제 랠리에 참가가 허가되는 자동차는 다음과 같다.

2.7.1.a 모든 국제 랠리에서 모든 자동차의 동력은 **FIA 월드랠리챔피언십을 제외하고** 최소 무게/마력 비율이 3.4kg/hp(4.6kg/kw)로 제한된다. 어느 때든 그리고 어느 상황에서도, FIA는 이 동력 제한을 부과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할 수 있다.

2.7.1.b 다음 자동차만이 국제 랠리에 참가할 수 있다.

2.7.1.b.i 투어링 자동차 (그룹 A). 단, 특정한 진화를 제외하고는 호몰로게이션을 받은 형식과 다른 경우.

2.7.1.b.ii 프로덕션 자동차 (그룹 N, R 그리고 R GT).

2.7.1.c 특정한 진화를 제외하고는 호몰로게이션을 받은 형식과 다르지 않는 한, 그룹 A, N, R 그리고 RGT 자동차는 공인이 완료된 날짜 이후에도 4년까지는 다음을 조건으로 월드랠리 챔피언십을 제외한 국제 랠리 참가가 허용된다.

2.7.1.c.i 운영 점검과 차량 검사 과정에서 FIA 호몰로게이션 증명서를 제시해야 한다.

2.7.1.c.ii 차량은 공인이 완료된 날짜 기준으로 유효한 기술규정(국제스포츠규정 부칙 J)을 준수하며 기술 오피셜의 재량에 따른 판단으로 경기 참가에 아무런 문제도 없어야 한다.

2.7.1.d 이들 자동차에 쓰이는 터보 리스트릭터의 크기와 최소 무게는 현재 유효한 것이어야 한다.

### 2.7.2 크로스컨트리 랠리와 바하 크로스컨트리 랠리

FIA 기술규정에 정의된 크로스컨트리 자동차(그룹 T)만이 참가할 수 있으며 다른 어떤 자동차든 제외된다.

**2.7.3 마라톤 크로스컨트리 랠리**

2.7.3.a 모든 마라톤 크로스컨트리 랠리는 국제 스포츠캘린더 안에 들어 있어야 한다.

2.7.3.b FIA로부터 특별 면제를 받지 않는 한은 해마다 대륙 당 하나의 마라톤 크로스컨트리 랠리만이 조직될 수 있다.

2.7.3.c 경기는 21일을 넘겨 지속될 수 없다(차량 검사와 슈퍼 스페셜 스테이지 포함).

2.7.3.d FIA 기술규정에 정의된 크로스컨트리 자동차(그룹 T)만이 참가할 수 있으며 어떤 다른 자동차든 제외된다.

**2.7.4 기록 도전**

2.7.4.a 기록 보유자

2.7.4.a.i 개별 도전 과정에서 기록이 수립되었다면 기록 보유자는 그 도전을 위한 허가를 승인 받은 사람이며 그 허가를 위한 공식 신청을 한 사람이다.

2.7.4.a.ii 경기 과정에서 기록이 수립되었다면 기록 보유자는 그 성과를 기록한 자동차로 참가한 이름을 가진 경기 참가자다.

2.7.4.b 관할권

2.7.4.b.i KARA는 그 관할 영토 안에서 수립되었다고 주장하는 모든 기록에 대한 판정을 내린다.

2.7.4.b.ii FIA는 모든 세계 기록 수립 주장에 대한 판정을 내리며, 그 신청은 KARA가 제출해야 한다.

2.7.4.c 기록 수립 자격이 있는 자동차  
각각의 국제 기록은 자동차만이 세울 수 있다.

2.7.4.d 공인되는 기록

2.7.4.d.i 공인되는 기록은 지역 기록, 국내 기록, 세계 기록, 절대 세계 기록 (Absolute World Records), 통산 세계 기록 (Outright World Record) 뿐이다.

2.7.4.d.ii 똑같은 기록이 위에서 언급된 범주 가운데 여러 개에 대해 공인될 수도 있다. 서킷 기록과 도로 기록을 구분하지는 않는다.

**2.7.3 마라톤 크로스컨트리 랠리**

2.7.3.a 모든 마라톤 크로스컨트리 랠리는 국제 스포츠캘린더 안에 들어 있어야 한다.

2.7.3.b FIA로부터 특별 면제를 받지 않는 한은 해마다 대륙 당 하나의 마라톤 크로스컨트리 랠리만이 조직될 수 있다.

2.7.3.c 경기는 21일을 넘겨 지속될 수 없다(차량 검사와 슈퍼 스페셜 스테이지 포함).

2.7.3.d FIA 기술규정에 정의된 크로스컨트리 자동차(그룹 T)만이 참가할 수 있으며 어떤 다른 자동차든 제외된다.

**2.7.4 기록 도전**

2.7.4.a 기록 보유자

2.7.4.a.i 개별 도전 과정에서 기록이 수립되었다면 기록 보유자는 그 도전을 위한 허가를 승인 받은 사람이며 그 허가를 위한 공식 신청을 한 사람이다.

2.7.4.a.ii 경기 과정에서 기록이 수립되었다면 기록 보유자는 그 성과를 기록한 자동차로 참가한 이름을 가진 경기 참가자다.

2.7.4.b 관할권

2.7.4.b.i KARA는 그 관할 영토 안에서 수립되었다고 주장하는 모든 기록에 대한 판정을 내린다.

2.7.4.b.ii FIA는 모든 세계 기록 수립 주장에 대한 판정을 내리며, 그 신청은 KARA가 제출해야 한다.

2.7.4.c 기록 수립 자격이 있는 자동차  
각각의 국제 기록은 자동차만이 세울 수 있다.

2.7.4.d 공인되는 기록

2.7.4.d.i 공인되는 기록은 지역 기록, 국내 기록, 세계 기록, 절대 세계 기록 (Absolute World Records), 통산 세계 기록 (Outright World Record) 뿐이다.

2.7.4.d.ii 똑같은 기록이 위에서 언급된 범주 가운데 여러 개에 대해 공인될 수도 있다. 서킷 기록과 도로 기록을 구분하지는 않는다.

2.7.4.e 소속 등급에 한정된 자동차 기록  
소속 등급 안에서 세계 기록을 세우거나 경신한 자동차는 이를 통해 절대 세계 기록을 경신할 수는 있지만, 그보다 높은 등급이 세운 같은 기록을 경신할 수는 없다.

2.7.4.f 공인 기간 및 거리

2.7.4.f.i 국제스포츠규정 부칙 D에서 정한 대로인 국내 기록에 대한, 그리고 세계 기록에 대한 기간과 거리만이 공인된다.

2.7.4.f.ii ASN은 해당 지역 내 기록을 공인할 수 있다.

2.7.4.g 레이스 동안 수립되는 기록  
레이스 동안에는 어떠한 기록도 공인되지 않는다.

2.7.4.h 기록을 위한 도전  
기록 도전을 위한 조건은 국제스포츠규정 부칙 D에 자세하게 언급되어 있다.

2.7.4.i 세계 기록 공인을 위한 조건

2.7.4.i.i 세계 기록은 FIA를 대표하는 단체에서 수립되었거나, 예외로 대표 단체가 없지만 FIA로부터 조직 허가를 받은 나라에서 수립된 것이 아니라면 공인 받지 못한다.

2.7.4.i.ii 어떤 세계 기록도 FIA가 승인한 코스에서 그 도전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공인 받지 못한다.

2.7.4.j 기록 명부

KARA는 국내에서 수립 또는 경신된 모든 기록의 명부를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요청에 따라 국내 또는 지역 기록의 인증서를 발급한다.  
FIA는 세계 기록의 명부를 보유하며 요청에 따라서 이들 기록에 대한 인증서를 발급한다.

2.7.4.k 기록의 발표

2.7.4.k.i 기록에 대한 주장이 정식 공인될 때까지는 “확정 필요”(Subject to Confirmation)라는 문구를 쉽게 읽을 수 있는 글씨로 덧붙이지 않고는 도전 결과를 광고할 수 없다.

2.7.4.k.ii 이 규정을 무시할 경우 기록에 대한

2.7.4.e 소속 등급에 한정된 자동차 기록  
소속 등급 안에서 세계 기록을 세우거나 경신한 자동차는 이를 통해 절대 세계 기록을 경신할 수는 있지만, 그보다 높은 등급이 세운 같은 기록을 경신할 수는 없다.

2.7.4.f 공인 기간 및 거리

2.7.4.f.i 국제스포츠규정 부칙 D에서 정한 대로인 국내 기록에 대한, 그리고 세계 기록에 대한 기간과 거리만이 공인된다.

2.7.4.f.ii ASN은 해당 지역 내 기록을 공인할 수 있다.

2.7.4.g 레이스 동안 수립되는 기록  
레이스 동안에는 어떠한 기록도 공인되지 않는다.

2.7.4.h 기록을 위한 도전  
기록 도전을 위한 조건은 국제스포츠규정 부칙 D에 자세하게 언급되어 있다.

2.7.4.i 세계 기록 공인을 위한 조건

2.7.4.i.i 세계 기록은 FIA를 대표하는 단체에서 수립되었거나, 예외로 대표 단체가 없지만 FIA로부터 조직 허가를 받은 나라에서 수립된 것이 아니라면 공인 받지 못한다.

2.7.4.i.ii 어떤 세계 기록도 FIA가 승인한 코스에서 그 도전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공인 받지 못한다.

2.7.4.j 기록 명부

KARA는 국내에서 수립 또는 경신된 모든 기록의 명부를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요청에 따라 국내 또는 지역 기록의 인증서를 발급한다.  
FIA는 세계 기록의 명부를 보유하며 요청에 따라서 이들 기록에 대한 인증서를 발급한다.

2.7.4.k 기록의 발표

2.7.4.k.i 기록에 대한 주장이 정식 공인될 때까지는 “확정 필요”(Subject to Confirmation)라는 문구를 쉽게 읽을 수 있는 글씨로 덧붙이지 않고는 도전 결과를 광고할 수 없다.

2.7.4.k.ii 이 규정을 무시할 경우 기록에 대한

주장은 자동적으로 공인을 받지 못하는 결과가 되며, 이 처분은 KARA가 부과하는 어떠한 추가 벌칙에 대해서도 참작 사유가 될 수 없다.

#### 2.7.4.1 기록 도전 수수료

2.7.4.1.i KARA는 국내 기록 도전을 감독하고 관리하기 위한 수수료를 정할 수 있다. 이 수수료는 해마다 확정되고 KARA에게 납부해야 한다.

2.7.4.1.ii FIA는 세계 기록 도전을 감독하고 관리하기 위한 수수료를 정할 수 있다. 이 수수료는 해마다 확정되고 FIA에게 납부해야 한다.

### 제3조 경기 - 조직 세부 사항

#### 제3.1조 공인의 필요성

경기는 관련된 나라의 ASN으로부터 공인을 받아야 한다. FIA를 대표하는 주체가 없는 나라에서 열린다면 FIA의 특별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제3.2조 공인의 신청

3.2.1 모든 공인 신청은 적용되는 기한에 따라서 ASN에 다음 정보와 함께 제출되어야 한다 : 각 경기에 적용될 특별규정의 초안. 기록 도전인 경우에는 제외.

3.2.2 ASN이 사전에 공인 비용을 설정한 경우에 신청은 그 비용과 함께 제출되어야 하며, 공인이 허가 나지 않으면 그 비용은 반환된다.

#### 제3.3조 공인서의 발급

3.3.1 KARA는 선택한 형식에 따라서 공인서를 발급할 권한을 가진다.

3.3.2 공인을 신청하는 프로모터는 국제스포츠규정이 명기하는 조건 그리고 적용되는 FIA 및 관련 ASN의 경기 및 기술규정을 만족해야 공인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 제3.4조 법과 규정의 준수

3.4.1 경기는 일반 도로 또는 서킷, 혹은 양쪽 모두에 걸쳐서 개최될 수 있지만 조직위원회가 관할지역 당국으로부터 관련된 허가를 받아내지 못하면 KARA의 공인을 받을 수 없다.

3.4.2 일반 차량 통행이 개방되어 있는 공도에서

주장은 자동적으로 공인을 받지 못하는 결과가 되며, 이 처분은 KARA가 부과하는 어떠한 추가 벌칙에 대해서도 참작 사유가 될 수 없다.

#### 2.7.4.1 기록 도전 수수료

2.7.4.1.i KARA는 국내 기록 도전을 감독하고 관리하기 위한 수수료를 정할 수 있다. 이 수수료는 해마다 확정되고 KARA에게 납부해야 한다.

2.7.4.1.ii FIA는 세계 기록 도전을 감독하고 관리하기 위한 수수료를 정할 수 있다. 이 수수료는 해마다 확정되고 FIA에게 납부해야 한다.

### 제3조 경기 - 조직 세부 사항

#### 제3.1조 공인의 필요성

경기는 관련된 나라의 ASN으로부터 공인을 받아야 한다. FIA를 대표하는 주체가 없는 나라에서 열린다면 FIA의 특별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제3.2조 공인의 신청

3.2.1 모든 공인 신청은 적용되는 기한에 따라서 ASN에 다음 정보와 함께 제출되어야 한다 : 각 경기에 적용될 특별규정의 초안. 기록 도전인 경우에는 제외.

3.2.2 ASN이 사전에 공인 비용을 설정한 경우에 신청은 그 비용과 함께 제출되어야 하며, 공인이 허가 나지 않으면 그 비용은 반환된다.

#### 제3.3조 공인서의 발급

3.3.1 KARA는 선택한 형식에 따라서 공인서를 발급할 권한을 가진다.

3.3.2 공인을 신청하는 프로모터는 국제스포츠규정이 명기하는 조건 그리고 적용되는 FIA 및 관련 ASN의 경기 및 기술규정을 만족해야 공인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 제3.4조 법과 규정의 준수

3.4.1 경기는 일반 도로 또는 서킷, 혹은 양쪽 모두에 걸쳐서 개최될 수 있지만 조직위원회가 관할지역 당국으로부터 관련된 허가를 받아내지 못하면 KARA의 공인을 받을 수 없다.

3.4.2 일반 차량 통행이 개방되어 있는 공도에서

열리는 경기의 부분은 그 나라의 도로교통 법규를 준수해야 한다.

3.4.3 스피드웨이에서 열리는 경기에는 국제스포츠규정 뿐 아니라 스피드웨이에서 레이스 운영을 위해 자체적으로 제정된 특별규정의 적용도 함께 받는다.

3.4.4 규정 발표 : 여러 FIA 챔피언십 경기의 규정은 적용되는 FIA 챔피언십 경기규정에 따라서 FIA 사무국에 제출되어야 한다.

**제3.5조 특별규정에 포함되는 주요 정보**  
(FIA 포뮬러 1 월드 챔피언십에는 적용되지 않음)

3.5.1 프로모터 정보

3.5.2 경기의 이름, 성격, 그리고 정의.

3.5.3 국제스포츠규정 및 국내규정에 따라서 경기가 개최된다는 문구.

3.5.4 조직위원회의 구성 및 조직위원회의 주소.(조직위원회를 구성하는 사람들의 명단 포함)

3.5.5 경기가 열리는 장소와 날짜.

3.5.6 구체적인 경기 계획 (서킷의 길이와 방향, 참가가 허용되는 자동차의 클래스 그리고 카테고리 설명, 주유방식, 해당된다면 엔트리 수 제한 등)

3.5.7 참가에 관련된 모든 유용한 정보(제출할 주소, 시작과 종료 날짜 및 시각, 참가비용 등)

3.5.8 보험에 관련된 모든 정보.

3.5.9 출발 날짜, 시각, 특성, 핸디캡의 명시.

3.5.10 국제스포츠규정의 조항들에 대한 주지, 특히 필수 등급 관련 라이선스 및 신호 (국제스포츠규정 부칙 H 참조).

3.5.11 순위를 정하는 방식.

열리는 경기의 부분은 그 나라의 도로교통 법규를 준수해야 한다.

3.4.3 스피드웨이에서 열리는 경기에는 국제스포츠규정 뿐 아니라 스피드웨이에서 레이스 운영을 위해 자체적으로 제정된 특별규정의 적용도 함께 받는다.

3.4.4 규정 발표 : 여러 FIA 챔피언십 경기의 규정은 적용되는 FIA 챔피언십 경기규정에 따라서 FIA 사무국에 제출되어야 한다.

**제3.5조 특별규정에 포함되는 주요 정보**  
(FIA 포뮬러 1 월드 챔피언십에는 적용되지 않음)

3.5.1 프로모터 정보

3.5.2 경기의 이름, 성격, 그리고 정의.

3.5.3 국제스포츠규정 및 국내규정에 따라서 경기가 개최된다는 문구.

3.5.4 조직위원회의 구성 및 조직위원회의 주소.(조직위원회를 구성하는 사람들의 명단 포함)

3.5.5 경기가 열리는 장소와 날짜.

3.5.6 구체적인 경기 계획 (서킷의 길이와 방향, 참가가 허용되는 자동차의 클래스 그리고 카테고리 설명, 주유방식, 해당된다면 엔트리 수 제한, Appendix O를 근거로 한 스타트 허용 차량 수 등)

3.5.7 참가에 관련된 모든 유용한 정보(제출할 주소, 시작과 종료 날짜 및 시각, 참가비용 등)

3.5.8 보험에 관련된 모든 정보.

3.5.9 출발 날짜, 시각, 특성, 핸디캡의 명시.

3.5.10 국제스포츠규정의 조항들에 대한 주지, 특히 필수 등급 관련 라이선스 및 신호 (국제스포츠규정 부칙 H 참조).

3.5.11 순위를 정하는 방식.

<p>3.5.12 상금의 자세한 내역.</p> <p>3.5.13 항의에 관한 국제스포츠규정의 조항들에 대한 주지.</p> <p>3.5.14 심사위원과 다른 오피셜들의 이름.</p> <p>3.5.15 적용될 경우에는 연기 또는 취소에 대한 규정.</p> <p><b>제3.6조 특별규정의 개정</b> 특별규정은 이미 참가한 모든 경기 참가자가 만장일치로 동의하거나 심사위원회가 결정하지 않는 한은 참가 신청 기간이 시작된 뒤에는 개정될 수 없다.</p> <p><b>제3.7조 공식 프로그램에 포함되는 주요 정보</b> 3.7.1 국제스포츠규정 또는 국내스포츠규정에 따라서 경기가 개최된다는 문구.</p> <p>3.7.2 경기의 장소와 날짜.</p> <p>3.7.3 예정된 경기에 대한 간단한 설명과 시간표.</p> <p>3.7.4 팀과 선수의 이름 및 이들의 자동차에 주어진 엔트리 번호.</p> <p>3.7.5 존재한다면 핸디캡.</p> <p>3.7.6 상금의 자세한 내역.</p> <p>3.7.7 심사위원과 다른 오피셜들의 이름.</p> <p><b>제3.8조 참가 신청</b> 3.8.1 참가 신청은 경기 참가자와 프로모터 사이의 계약이다. 이는 양쪽 당사자가 서명을 하거나 서신을 교환함으로써 체결될 수 있다. 이는 경기 참가자로 하여금 출전이 받아들여진 경기에 불가항력적인 이유로 정당하게 결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참가하도록 강제한다.</p> <p>3.8.2 이는 또한 프로모터로 하여금 경기 참가자가 관련된 경기에 충실하게 참가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을 때에 한정하여 참가가 이루어졌을 때 경기 참가자에 대한 조건을 모두 만족시키도록 의무화한다.</p>	<p>3.5.12 상금의 자세한 내역.</p> <p>3.5.13 항의에 관한 국제스포츠규정의 조항들에 대한 주지.</p> <p>3.5.14 심사위원과 다른 오피셜들의 이름.</p> <p>3.5.15 적용될 경우에는 연기 또는 취소에 대한 규정.</p> <p><b>제3.6조 특별규정의 개정</b> 특별규정은 이미 참가한 모든 경기 참가자가 만장일치로 동의하거나 심사위원회가 결정하지 않는 한은 참가 신청 기간이 시작된 뒤에는 개정될 수 없다.</p> <p><b>제3.7조 공식 프로그램에 포함되는 주요 정보</b> 3.7.1 국제스포츠규정 또는 국내스포츠규정에 따라서 경기가 개최된다는 문구.</p> <p>3.7.2 경기의 장소와 날짜.</p> <p>3.7.3 예정된 경기에 대한 간단한 설명과 시간표.</p> <p>3.7.4 팀과 선수의 이름 및 이들의 자동차에 주어진 엔트리 번호.</p> <p>3.7.5 존재한다면 핸디캡.</p> <p>3.7.6 상금의 자세한 내역.</p> <p>3.7.7 심사위원과 다른 오피셜들의 이름.</p> <p><b>제3.8조 참가 신청</b> 3.8.1 참가 신청은 경기 참가자와 프로모터 사이의 계약이다. 이는 양쪽 당사자가 서명을 하거나 서신을 교환함으로써 체결될 수 있다. 이는 경기 참가자로 하여금 출전이 받아들여진 경기에 불가항력적인 이유로 정당하게 결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참가하도록 강제한다.</p> <p>3.8.2 이는 또한 프로모터로 하여금 경기 참가자가 관련된 경기에 충실하게 참가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을 때에 한정하여 참가가 이루어졌을 때 경기 참가자에 대한 조건을 모두 만족시키도록 의무화한다.</p>
---	---

**제3.9조 참가 접수**

3.9.1 KARA에서 공인을 증명하는 문서 발급에 동의하고 나면 그 조직위원회는 참가 신청을 받을 수 있다.

**3.9.2 참가 신청 형식**

최종 참가 신청은 조직위원회가 요구하는 적절한 형식에 지명된 경기 참가자와 선수의 이름 및 주소 그리고 필요하다면 경기 참가자와 선수의 라이선스 번호를 함께 기입함으로써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특별규정에서는 선수 지명을 위한 참가 기간을 정할 수 있다.

**3.9.3 참가 신청비 지불**

특별규정에 참가비가 정해져 있다면 이 비용과 함께 제출되지 않은 모든 참가 신청은 무효가 된다.

**3.9.4 해외에서 열리는 국제경기 참가를 위한 KARA의 허가**

3.9.4.a 해외에서 조직된 국제경기에 참가를 원하는 경기 참가자와 선수는 KARA의 승인이 있어야만 참가할 수 있다.

3.9.4.b KARA에서 결정하는 이 허가는 KARA가 편리하다고 판단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진다.

3.9.4.c 주최자가 라이선스를 발급한 ASN의 허가가 없는 외국 경기 참가자 그리고/또는 선수의 참가를 받아들일 경우, 주최자는 위반을 저지른 것이 된다. FIA에 이 사실이 통보되면 FIA가 결정하는 처벌을 받는다.

3.9.4.d 허가는 오로지 국제스포츠캘린더에 들어 있는 경기에 대해서 ASN이 그 라이선스 보유자에 대해서만 내줄 수 있다는 점에 주의한다.

**제3.10조 참가의 준수**

3.10.1 경기 참가자와 주최자 사이에 참가에 관련된 분쟁이 벌어질 경우에는 그 조직위원회를 승인한 ASN이 판정을 내리며 외국 경기 참가자의 경우에는 항소 권한에 대한 침해가 없어야 한다.

3.10.2 경기 날짜 전까지 분쟁이 해결되지 않은 경우, 참가 신청을 완료한 경기 참가자 또는 선수

**제3.9조 참가 접수**

3.9.1 KARA에서 공인을 증명하는 문서 발급에 동의하고 나면 그 조직위원회는 참가 신청을 받을 수 있다.

**3.9.2 참가 신청 형식**

최종 참가 신청은 조직위원회가 요구하는 적절한 형식에 지명된 경기 참가자와 선수의 이름 및 주소 그리고 필요하다면 경기 참가자와 선수의 라이선스 번호를 함께 기입함으로써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특별규정에서는 선수 지명을 위한 참가 기간을 정할 수 있다.

**3.9.3 참가 신청비 지불**

특별규정에 참가비가 정해져 있다면 이 비용과 함께 제출되지 않은 모든 참가 신청은 무효가 된다.

**3.9.4 해외에서 열리는 국제경기 참가를 위한 KARA의 허가**

3.9.4.a 해외에서 조직된 국제경기에 참가를 원하는 경기 참가자와 선수는 KARA의 승인이 있어야만 참가할 수 있다.

3.9.4.b KARA에서 결정하는 이 허가는 KARA가 편리하다고 판단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진다.

3.9.4.c 주최자가 라이선스를 발급한 ASN의 허가가 없는 외국 경기 참가자 그리고/또는 선수의 참가를 받아들일 경우, 주최자는 위반을 저지른 것이 된다. FIA에 이 사실이 통보되면 FIA가 결정하는 처벌을 받는다.

3.9.4.d 허가는 오로지 국제스포츠캘린더에 들어 있는 경기에 대해서 ASN이 그 라이선스 보유자에 대해서만 내줄 수 있다는 점에 주의한다.

**제3.10조 참가의 준수**

3.10.1 경기 참가자와 주최자 사이에 참가에 관련된 분쟁이 벌어질 경우에는 그 조직위원회를 승인한 ASN이 판정을 내리며 외국 경기 참가자의 경우에는 항소 권한에 대한 침해가 없어야 한다.

3.10.2 경기 날짜 전까지 분쟁이 해결되지 않은 경우, 참가 신청을 완료한 경기 참가자 또는 선수

가 출전하지 않았다면 해당 ASN이 설정한 액수의 보증금을 지불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국제적으로 출장 정지가 된다 (라이선스의 일시 취소).

3.10.3 보증금 지불은 그 경기 참가자 또는 선수가 어떤 경기에서 다른 사람을 대신할 수 있다는 뜻이 되지 않는다.

**제3.11조 참가 신청 마감**

3.11.1 특별규정에는 참가 신청이 마감되는 날짜와 시각이 언급되어 있어야 한다.

3.11.2 국제경기에 대해서는 참가 신청 종료는 이벤트를 위해 예정된 날짜보다 적어도 7일 이전에 참가 신청이 마감되어야 한다. 다른 경기에 대해서는 이 기한은 관련 ASN 또는 FIA 재량으로 정한 날짜만큼 줄어들 수 있다.

**제3.12조 전자 수단으로 접수된 참가 신청**

3.12.1 참가 신청은 무엇이든 전자적 통신 방법으로 할 수 있다. 단, 참가 신청 마감을 위해 지정된 기한 전에 접수가 되며, 필요한 경우에는 참가비를 함께 납부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

3.12.2 전자 통신(예를 들어서 이메일, 그밖에)에 나와 있는 송신 시각은 시각에 대한 결정적인 증거로 쓰인다.

**제3.13조 거짓된 문구를 포함한 참가 신청**

3.13.1 거짓된 문구를 포함하고 있는 어떤 신청이든 무효로 간주된다.

3.13.2 이러한 참가 신청은 국제스포츠규정에 대한 위반으로 간주된다. 더 나아가 참가비가 몰수될 수도 있다.

**제3.14조 참가 신청 거부**

3.14.1 국제경기에 대한 참가 신청이 조직위원회로부터 거부될 경우, 조직위원회는 거부된 신청자에게 늦어도 참가 신청 마감으로부터 2일 안에, 늦어도 경기 시작 5일전에 거부한 근거를 명시해서 이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3.14.2 다른 경기에 대해서는 거부에 관련된 통보에 한하여 국내규정이 다른 조건을 정할 수 있다.

가 출전하지 않았다면 해당 ASN이 설정한 액수의 보증금을 지불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국제적으로 출장 정지가 된다 (라이선스의 일시 취소).

3.10.3 보증금 지불은 그 경기 참가자 또는 선수가 어떤 경기에서 다른 사람을 대신할 수 있다는 뜻이 되지 않는다.

**제3.11조 참가 신청 마감**

3.11.1 특별규정에는 참가 신청이 마감되는 날짜와 시각이 언급되어 있어야 한다.

3.11.2 국제경기에 대해서는 참가 신청 종료는 이벤트를 위해 예정된 날짜보다 적어도 7일 이전에 참가 신청이 마감되어야 한다. 다른 경기에 대해서는 이 기한은 관련 ASN 또는 FIA 재량으로 정한 날짜만큼 줄어들 수 있다.

**제3.12조 전자 수단으로 접수된 참가 신청**

3.12.1 참가 신청은 무엇이든 전자적 통신 방법으로 할 수 있다. 단, 참가 신청 마감을 위해 지정된 기한 전에 접수가 되며, 필요한 경우에는 참가비를 함께 납부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

3.12.2 전자 통신(예를 들어서 이메일, 그밖에)에 나와 있는 송신 시각은 시각에 대한 결정적인 증거로 쓰인다.

**제3.13조 거짓된 문구를 포함한 참가 신청**

3.13.1 거짓된 문구를 포함하고 있는 어떤 신청이든 무효로 간주된다.

3.13.2 이러한 참가 신청은 국제스포츠규정에 대한 위반으로 간주된다. 더 나아가 참가비가 몰수될 수도 있다.

**제3.14조 참가 신청 거부**

3.14.1 국제경기에 대한 참가 신청이 조직위원회로부터 거부될 경우, 조직위원회는 거부된 신청자에게 늦어도 참가 신청 마감으로부터 2일 안에, 늦어도 경기 시작 5일전에 거부한 근거를 명시해서 이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3.14.2 다른 경기에 대해서는 거부에 관련된 통보에 한하여 국내규정이 다른 조건을 정할 수 있다.



### 제3.15조 조건부 참가

3.15.1 특별규정이 구체적으로 정한 조건에서, 예를 들어 출발 선수의 수를 제한하는 경우, 참가한 다른 경기 참가자 중에 결원이 생겼을 때와 같은 경우에 참가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정할 수 있다.

3.15.2 조건부 참가는 참가 신청 마감 다음날까지는 관련 당사자에게 서신 또는 어떤 전자 수단으로든 통보되어야 하지만 조건부로 참가한 경기 참가자는 허가 받지 않고 한 경기를 다른 경기로 대체한 경우에 관한 규정을 적용 받지 않는다.

### 제3.16조 참가자 발표

3.16.1 프로모터가 적절하게 작성된 참가 신청서를 받았으며 참가비가 있는 경우, 참가비와 함께 받은 신청이 아니라면 이를 발표해서는 안 된다.

3.16.2 조건부로 참가하는 경기 참가자는 참가 명단 발표 시점에서 조건부 참가자로 지정된다.

### 제3.17조 경기 참가자의 선택

3.17.1 특별규정에서 참가자 수의 제한을 규정했다면 신청이 승인되는 경기 참가자를 선택하는 절차가 적용되는 규정에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

3.17.2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선택은 제비뽑기 또는 KARA가 결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 제3.18조 대기자의 지명

어떤 경기 참가자든 경기 참가자의 선택(제3.17조)에 관련된 국제스포츠규정의 조항에 따라서 탈락되었을 경우, 이들은 조직위원회의 동의를 거쳐 대기자로 인정될 수 있다.

### 제3.19조 자동차의 참가

3.19.1 한 대 그리고 똑같은 자동차는 같은 경기에 한 번 이상 참가할 수 없다.

3.19.2 예외적으로 KARA는 관할 영토 내의 같은 이벤트에서 같은 자동차가 한 번 넘게 참가하는 것을 승인할 수 있다. 단, 같은 선수는 한 번만 운전해야 한다.

### 제3.20조 참가자의 공식 명단

조직위원회는 경기 참여가 승인된 참가자의 공식

### 제3.15조 조건부 참가

3.15.1 특별규정이 구체적으로 정한 조건에서, 예를 들어 출발 선수의 수를 제한하는 경우, 참가한 다른 경기 참가자 중에 결원이 생겼을 때와 같은 경우에 참가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정할 수 있다.

3.15.2 조건부 참가는 참가 신청 마감 다음날까지는 관련 당사자에게 서신 또는 어떤 전자 수단으로든 통보되어야 하지만 조건부로 참가한 경기 참가자는 허가 받지 않고 한 경기를 다른 경기로 대체한 경우에 관한 규정을 적용 받지 않는다.

### 제3.16조 참가자 발표

3.16.1 프로모터가 적절하게 작성된 참가 신청서를 받았으며 참가비가 있는 경우, 참가비와 함께 받은 신청이 아니라면 이를 발표해서는 안 된다.

3.16.2 조건부로 참가하는 경기 참가자는 참가 명단 발표 시점에서 조건부 참가자로 지정된다.

### 제3.17조 경기 참가자의 선택

3.17.1 참가자 수 또는 스타트 허용차량 수의 제한을 규정했다면 경기 참가자를 선택 절차가 규정에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

3.17.2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선택은 제비뽑기 또는 KARA가 결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 제3.18조 대기자의 지명

어떤 경기 참가자든 경기 참가자의 선택(제3.17조)에 관련된 국제스포츠규정의 조항에 따라서 탈락되었을 경우, 이들은 조직위원회의 동의를 거쳐 대기자로 인정될 수 있다.

### 제3.19조 자동차의 참가

3.19.1 한 대 그리고 똑같은 자동차는 같은 경기에 한 번 이상 참가할 수 없다.

3.19.2 예외적으로 KARA는 관할 영토 내의 같은 이벤트에서 같은 자동차가 한 번 넘게 참가하는 것을 승인할 수 있다. 단, 같은 선수는 한 번만 운전해야 한다.

### 제3.20조 참가자의 공식 명단

조직위원회는 경기 참여가 승인된 참가자의 공식

명단을 늦어도 이벤트 시작 48시간 전까지 KARA에 보내고 각 경기 참가자가 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단, 참가 신청이 이 시간 이후에 마감되는 경우는 예외로, 이 때는 경기 시작 전에 공식 명단을 각 참가자가 볼 수 있어야 한다

### 제3.21조 특별구역

특별구역에 출입 권한을 가지기 위해서는 특별 허가나 패스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 제4조 투어링 어셈블리

### 제4.1조 투어링 어셈블리

투어링 어셈블리에서는 일정은 의무지만 단순한 패시지 컨트롤만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참가자들이 주행할 때에 부과되는 평균 속도는 없다.

### 제4.2조 총괄 조건

4.2.1 스피드 이벤트를 제외한 하나 또는 여러 개의 추가 모터스포츠 활동을 투어링 어셈블리 프로그램 안에 포함시킬 수 있으나 이들 추가 모터스포츠 활동은 도착 지점에서만 열려야 한다.

4.2.2 이들 투어링 어셈블리에는 상금이 걸려 있지 않아야 한다.

4.2.3 투어링 어셈블리는 참가자가 여러 국적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해도 국제스포츠캘린더 등록이 면제되지만 규정을 승인해야 하는 ASN의 동의를 얻지 못한 나라에서 조직될 수 없다.

4.2.4 규정은 조직 세부 사항에 관련된 국제스포츠규정 안의 경기에 대한 규정과 똑같은 정신에 따라서 작성되어야 한다.

4.2.5 투어링 어셈블리 경로가 하나의 ASN 관할 영토만을 통과한다면 해당 투어링 어셈블리의 참가자가 라이선스를 반드시 보유하지 않아도 된다.

4.2.6 그렇지 않은 경우, 투어링 어셈블리는 국제코스에 적용되는 규정을 따라야 하며 참가자는 필요한 라이선스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 제5조 퍼레이드

### 제5.1조 조건

다음 조건이 준수되어야 한다.

명단을 늦어도 이벤트 시작 48시간 전까지 KARA에 보내고 각 경기 참가자가 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단, 참가 신청이 이 시간 이후에 마감되는 경우는 예외로, 이 때는 경기 시작 전에 공식 명단을 각 참가자가 볼 수 있어야 한다

### 제3.21조 특별구역

특별구역에 출입 권한을 가지기 위해서는 특별 허가나 패스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 제4조 투어링 어셈블리

### 제4.1조 투어링 어셈블리

투어링 어셈블리에서는 일정은 의무지만 단순한 패시지 컨트롤만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참가자들이 주행할 때에 부과되는 평균 속도는 없다.

### 제4.2조 총괄 조건

4.2.1 스피드 이벤트를 제외한 하나 또는 여러 개의 추가 모터스포츠 활동을 투어링 어셈블리 프로그램 안에 포함시킬 수 있으나 이들 추가 모터스포츠 활동은 도착 지점에서만 열려야 한다.

4.2.2 이들 투어링 어셈블리에는 상금이 걸려 있지 않아야 한다.

4.2.3 투어링 어셈블리는 참가자가 여러 국적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해도 국제스포츠캘린더 등록이 면제되지만 규정을 승인해야 하는 ASN의 동의를 얻지 못한 나라에서 조직될 수 없다.

4.2.4 규정은 조직 세부 사항에 관련된 국제스포츠규정 안의 경기에 대한 규정과 똑같은 정신에 따라서 작성되어야 한다.

4.2.5 투어링 어셈블리 경로가 하나의 ASN 관할 영토만을 통과한다면 해당 투어링 어셈블리의 참가자가 라이선스를 반드시 보유하지 않아도 된다.

4.2.6 그렇지 않은 경우, 투어링 어셈블리는 국제코스에 적용되는 규정을 따라야 하며 참가자는 필요한 라이선스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 제5조 퍼레이드

### 제5.1조 조건

다음 조건이 준수되어야 한다.

<p>5.1.1 오피셜 카 한 대가 퍼레이드를 선도하며 다른 한 대가 가까이에 있다.</p> <p>5.1.2 이 두 대의 오피셜 카는 경기위원장의 통제 속에서 경험 있는 선수가 운전한다.</p> <p>5.1.3 앞지르기는 금지된다.</p> <p>5.1.4 시간 계측은 금지된다.</p> <p>5.1.5 경기의 틀 안에서, 어떤 퍼레이드이던 특별 규정에 언급되어 있어야 하며 참가 자동차는 공식 프로그램에 언급되어 있어야 한다.</p> <p><b>제5.2조 허가</b> 국내 퍼레이드는 KARA로부터 명시적인 허가를 받지 않고서는 열릴 수 없다.</p> <p><b>제6조 데모 주행</b> <b>제6.1조 조건</b> 다음 조건이 준수되어야 한다.</p> <p>6.1.1 데모 주행은 항상 경기위원장이 통제해야 한다.</p> <p>6.1.2 5대가 넘는 자동차의 데모 주행은 항상 세이프티 카의 통제를 받으며, 세이프티카는 경기위원장의 통제 속에서 경험 있는 선수가 대열을 선도하여 운전해야 한다.</p> <p>6.1.3 모든 마샬은 각자의 포스트에 있어야 하며 (이벤트의 틀 안에서), 구조와 신호 서비스는 필수다.</p> <p>6.1.4 관중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p> <p>6.1.5 선수는 적절한 안전 복장을 입어야 한다 (FIA가 승인한 복장과 헬멧을 강력하게 권고한다). 주최자는 최소 복장 기준을 지정할 수 있다.</p> <p>6.1.6 자동차는 안전에 근거를 둔 차량 검사를 통과해야 한다.</p> <p>6.1.7 차량 검사 뒤에 정확한 참가 명단이 발표되어야 한다.</p>	<p>5.1.1 오피셜 카 한 대가 퍼레이드를 선도하며 다른 한 대가 가까이에 있다.</p> <p>5.1.2 이 두 대의 오피셜 카는 경기위원장의 통제 속에서 경험 있는 선수가 운전한다.</p> <p>5.1.3 앞지르기는 금지된다.</p> <p>5.1.4 시간 계측은 금지된다.</p> <p>5.1.5 경기의 틀 안에서, 어떤 퍼레이드이던 특별 규정에 언급되어 있어야 하며 참가 자동차는 공식 프로그램에 언급되어 있어야 한다.</p> <p><b>제5.2조 허가</b> 국내 퍼레이드는 KARA로부터 명시적인 허가를 받지 않고서는 열릴 수 없다.</p> <p><b>제6조 데모 주행</b> <b>제6.1조 조건</b> 다음 조건이 준수되어야 한다.</p> <p>6.1.1 데모 주행은 항상 경기위원장이 통제해야 한다.</p> <p>6.1.2 5대가 넘는 자동차의 데모 주행은 항상 세이프티 카의 통제를 받으며, 세이프티카는 경기위원장의 통제 속에서 경험 있는 선수가 대열을 선도하여 운전해야 한다.</p> <p>6.1.3 모든 마샬은 각자의 포스트에 있어야 하며 (이벤트의 틀 안에서), 구조와 신호 서비스는 필수다.</p> <p>6.1.4 관중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p> <p>6.1.5 선수는 적절한 안전 복장을 입어야 한다 (FIA가 승인한 복장과 헬멧을 강력하게 권고한다). 주최자는 최소 복장 기준을 지정할 수 있다.</p> <p>6.1.6 자동차는 안전에 근거를 둔 차량 검사를 통과해야 한다.</p> <p>6.1.7 차량 검사 뒤에 정확한 참가 명단이 발표되어야 한다.</p>
---	---

6.1.8 탑승자는 허용되지 않는다. 단, 자동차가 원래부터 선수와 똑같은 안전 조건으로 탑승자를 태우기 위해서 설계되었고 장비가 갖추어져 있으며 탑승자들이 적절한 안전 복장을 입고 있는 경우(FIA가 승인한 복장과 헬멧을 강력하게 권고한다)에는 예외다. 주최자는 최소 복장 기준을 지정할 수 있다.

6.1.9 청색기를 제시한 마샬의 지시가 아닌 한은 앞지르기는 엄격하게 금지된다.

6.1.10 시간 계측은 금지된다.

6.1.11 이벤트의 틀 안에서, 어떤 데모 주행이든 특별규정에 언급되어 있어야 하며 참가 자동차는 공식 프로그램에 언급되어 있어야 한다.

#### 제6.2조 허가

국내 데모 주행은 KARA로부터 명시적인 허가를 받지 않고서는 열릴 수 없다.

#### 제7조 코스와 서킷

##### 제7.1조 국제코스

7.1.1 경기의 코스가 여러 나라의 영토를 가로지르는 경우, 이 경기의 주최자는 먼저 소속 ASN을 통해서 통과하는 각 ASN에게서 그리고 FIA를 대표하는 주체가 없는 나라에서는 FIA에게서 인가를 받아야 한다.

7.1.2 경기가 진행되는 코스를 통과하는 이들 나라의 ASN들은 영토의 한계 안에서 코스 전체에 걸친 경기 통제권을 보유하지만, 경기 결과에 대한 최종 승인은 주최자가 속한 ASN이 한다는 점에 유의한다.

##### 제7.2조 코스의 승인

코스는 KARA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 요청을 위해서는 주행해야 할 정확한 거리와 루트를 제출해야 한다.

##### 제7.3조 거리 측정

기록 시도가 아닌 경기에 대해서는 10 킬로미터까지의 거리는 코스의 중앙선을 따라서 자격 있는 측량사가 측정해야 한다. 10 킬로미터가 넘는 거리는 공식 도로 표지 또는 축척이 25만분의 1

6.1.8 탑승자는 허용되지 않는다. 단, 자동차가 원래부터 선수와 똑같은 안전 조건으로 탑승자를 태우기 위해서 설계되었고 장비가 갖추어져 있으며 탑승자들이 적절한 안전 복장을 입고 있는 경우(FIA가 승인한 복장과 헬멧을 강력하게 권고한다)에는 예외다. 주최자는 최소 복장 기준을 지정할 수 있다.

6.1.9 청색기를 제시한 마샬의 지시가 아닌 한은 앞지르기는 엄격하게 금지된다.

6.1.10 시간 계측은 금지된다.

6.1.11 이벤트의 틀 안에서, 어떤 데모 주행이든 특별규정에 언급되어 있어야 하며 참가 자동차는 공식 프로그램에 언급되어 있어야 한다.

#### 제6.2조 허가

국내 데모 주행은 KARA로부터 명시적인 허가를 받지 않고서는 열릴 수 없다.

#### 제7조 코스와 서킷

##### 제7.1조 국제코스

7.1.1 경기의 코스가 여러 나라의 영토를 가로지르는 경우, 이 경기의 주최자는 먼저 소속 ASN을 통해서 통과하는 각 ASN에게서 그리고 FIA를 대표하는 주체가 없는 나라에서는 FIA에게서 인가를 받아야 한다.

7.1.2 경기가 진행되는 코스를 통과하는 이들 나라의 ASN들은 영토의 한계 안에서 코스 전체에 걸친 경기 통제권을 보유하지만, 경기 결과에 대한 최종 승인은 주최자가 속한 ASN이 한다는 점에 유의한다.

##### 제7.2조 코스의 승인

코스는 KARA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 요청을 위해서는 주행해야 할 정확한 거리와 루트를 제출해야 한다.

##### 제7.3조 거리 측정

기록 시도가 아닌 경기에 대해서는 10 킬로미터까지의 거리는 코스의 중앙선을 따라서 자격 있는 측량사가 측정해야 한다. 10 킬로미터가 넘는 거리는 공식 도로 표지 또는 축척이 25만분의 1

<p>을 넘지 않는 공식 지도로 결정해야 한다.</p> <p><b>제7.4조 서킷 또는 코스에 대한 국제라이선스</b>  7.4.1 레이스 또는 기록 도전이 예정될 때, 상설 또는 임시 서킷 또는 코스에 대한 국제라이선스 신청은 ASN이 FIA에 해야 한다.</p> <p>7.4.2 FIA는 자동차 레이스를 위한 서킷 또는 기록 도전을 위한 코스의 라이선스를 내 줄 수 있으며, 코스가 필요한 기준에 적합한지 보장하기 위해 감독관을 임명한다.</p> <p>7.4.3 FIA는 ASN 및 인스펙터와 협의를 거쳐서 라이선스를 거부 또는 승인하거나 취소할 수 있으나 이와 같은 취소 또는 거부 사유를 밝혀야 한다.</p> <p><b>7.4.4 코스 또는 서킷 라이선스에 들어 있는 정보</b>  7.4.4.a FIA에게 승인 받은 라이선스에는 코스 또는 서킷의 길이 그리고 레이스 서킷인 경우에는 이 라이선스에 대해 유효한 경주 차량 카테고리 등급을 표시한다.</p> <p>7.4.4.b 필요하다면 코스 또는 서킷이 세계 기록 도전을 위해서 승인되었는지 여부를 표시한다.</p> <p><b>제7.5조 서킷 또는 코스에 대한 국내라이선스</b>  KARA는 제7.5.1조와 제7.5.2조에서 지정한 조건에 따라 서킷 또는 코스에 대해 비슷한 라이선스 승인을 할 수 있다.</p> <p>7.5.1 KARA에게 승인 받은 라이선스에는 코스 또는 서킷의 길이, 그리고 지역 또는 국내 기록 도전을 위해서 승인되었는지 여부를 표시한다.</p> <p>7.5.2 또한 코스나 서킷에서 선수들이 숙지하고 따라야 하는 규칙을 서술한다.</p> <p><b>제7.6조 상설 및 임시 코스와 서킷 모두에 대해서 충족되어야 할 조건</b>  상설 및 임시 코스와 서킷 모두에 대해서 충족되어야 할 조건은 FIA가 정기적으로 정한다.</p> <p><b>제7.7조 서킷 라이선스의 전시</b>  서킷 라이선스는 유효 기간 동안 서킷에서 눈에 잘 띄는 장소에 게시되어야 한다.</p>	<p>을 넘지 않는 공식 지도로 결정해야 한다.</p> <p><b>제7.4조 서킷 또는 코스에 대한 국제라이선스</b>  7.4.1 레이스 또는 기록 도전이 예정될 때, 상설 또는 임시 서킷 또는 코스에 대한 국제라이선스 신청은 ASN이 FIA에 해야 한다.</p> <p>7.4.2 FIA는 자동차 레이스를 위한 서킷 또는 기록 도전을 위한 코스의 라이선스를 내 줄 수 있으며, 코스가 필요한 기준에 적합한지 보장하기 위해 감독관을 임명한다.</p> <p>7.4.3 FIA는 ASN 및 인스펙터와 협의를 거쳐서 라이선스를 거부 또는 승인하거나 취소할 수 있으나 이와 같은 취소 또는 거부 사유를 밝혀야 한다.</p> <p><b>7.4.4 코스 또는 서킷 라이선스에 들어 있는 정보</b>  7.4.4.a FIA에게 승인 받은 라이선스에는 코스 또는 서킷의 길이 그리고 레이스 서킷인 경우에는 이 라이선스에 대해 유효한 경주 차량 카테고리 등급을 표시한다.</p> <p>7.4.4.b 필요하다면 코스 또는 서킷이 세계 기록 도전을 위해서 승인되었는지 여부를 표시한다.</p> <p><b>제7.5조 서킷 또는 코스에 대한 국내라이선스</b>  KARA는 제7.5.1조와 제7.5.2조에서 지정한 조건에 따라 서킷 또는 코스에 대해 비슷한 라이선스 승인을 할 수 있다.</p> <p>7.5.1 KARA에게 승인 받은 라이선스에는 코스 또는 서킷의 길이, 그리고 지역 또는 국내 기록 도전을 위해서 승인되었는지 여부를 표시한다.</p> <p>7.5.2 또한 코스나 서킷에서 선수들이 숙지하고 따라야 하는 규칙을 서술한다.</p> <p><b>제7.6조 상설 및 임시 코스와 서킷 모두에 대해서 충족되어야 할 조건</b>  상설 및 임시 코스와 서킷 모두에 대해서 충족되어야 할 조건은 FIA가 정기적으로 정한다.</p> <p><b>제7.7조 서킷 라이선스의 전시</b>  서킷 라이선스는 유효 기간 동안 서킷에서 눈에 잘 띄는 장소에 게시되어야 한다.</p>
---	---

**제8조 출발과 히트**

**제8.1조 출발**

8.1.1 두 가지 출발 유형이 있다.

8.1.1.a 롤링 스타트

8.1.1.b 스탠딩 스타트

8.1.2 경기 참가자는 어떤 방식이든 관계 없이 출발 순간에 출발한 것으로 간주한다. 어떤 경우에도 이 신호는 되풀이되지 않는다.

8.1.3 기록 도전을 제외한 모든 경기에서는 관련된 경기 또는 특별규정에서 출발 특성을 정의해야 한다.

8.1.4 시간 계측이 쓰일 경우에는 출발 때부터 시작된다.

**제8.2조 출발선**

8.2.1 롤링 스타트를 하는 모든 경기에서 출발선은 이를 지났을 때 그 자동차의 시간 계측이 시작되는 선이다.

8.2.2 스탠딩 스타트를 하는 경기에서 출발선은 각 자동차(필요한 경우에는 각 선수)가 출발 전에 그에 맞춰서 자리를 고정해야 하는 선이다.

8.2.3 관련된 경기규정 또는 특별규정에서는 모든 자동차의 상대 위치와 이들 위치가 결정되는 방법을 출발 전에 정의해야 한다.

**제8.3조 롤링 스타트**

8.3.1 롤링 스타트는 시간 계측이 시작되는 순간에 자동차가 움직이고 있는 방식이다.

8.3.2 관련 경기 또는 특별규정에서 정하고 있지 않는 한은 경기 참가자들은 그리드 순서를 유지하면서 오피셜 카의 선도에 따라서 출발 그리드를 떠나며, 관련 경기 또는 특별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한 줄 또는 나란히 주행해야 하고, 이들 규정에는 지정된 장소에서 출발에 실패한 자동차가 있을 경우의 절차 역시 규정되어 있어야 한다.

8.3.3 오피셜 카가 트랙을 떠났을 때, 자동차의 전체 대열은 출발 신호가 나올 때까지 선두 차량

**제8조 출발과 히트**

**제8.1조 출발**

8.1.1 두 가지 출발 유형이 있다.

8.1.1.a 롤링 스타트

8.1.1.b 스탠딩 스타트

8.1.2 경기 차량은 스타트 방식에 상관 없이 출발 신호 순간에 출발한 것으로 간주한다. 어떤 경우에도 출발 신호는 되풀이되지 않는다.

8.1.3 기록 도전을 제외한 모든 경기에서는 관련된 경기 또는 특별규정에서 출발 특성을 정의해야 한다.

8.1.4 시간 계측이 쓰일 경우에는 출발 때부터 시작된다.

**제8.2조 출발선**

8.2.1 롤링 스타트를 하는 모든 경기에서 출발선은 이를 지났을 때 그 자동차의 시간 계측이 시작되는 선이다.

8.2.2 스탠딩 스타트를 하는 경기에서 출발선은 각 자동차(필요한 경우에는 각 선수)가 출발 전에 그에 맞춰서 자리를 고정해야 하는 선이다.

8.2.3 관련된 경기규정 또는 특별규정에서는 모든 자동차의 상대 위치와 이들 위치가 결정되는 방법을 출발 전에 정의해야 한다.

**제8.3조 롤링 스타트**

8.3.1 롤링 스타트는 시간 계측이 시작되는 순간에 자동차가 움직이고 있는 방식이다.

8.3.2 관련 경기 또는 특별규정에서 정하고 있지 않는 한은 경기 차량은 그리드 순서를 유지하면서 오피셜 카의 선도에 따라서 출발 그리드를 떠나며, 관련 경기 또는 특별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한 줄 또는 나란히 주행해야 하고, 이들 규정에는 지정된 장소에서 출발에 실패한 자동차가 있을 경우의 절차 역시 규정되어 있어야 한다.

8.3.3 오피셜 카가 트랙을 떠났을 때, 자동차의 전체 대열은 출발 신호가 나올 때까지 선두 차량

뒤에서 순서를 유지한다. 그러나, 관련 경기규정 또는 특별규정에서 다르게 정하고 있지 않는 한, 출발 신호가 주어져야 하며, 자동차들이 출발선을 지나야 레이스가 시작된 것으로 간주한다. 또한 선두 자동차가 출발선을 지나고 기록 계측이 시작되어야 한다.

#### 제8.4조 스탠딩 스타트

8.4.1 스탠딩 스타트는 출발 신호가 주어지는 순간에 자동차가 멈추어 있는 방식이다.

8.4.2 스탠딩 스타트를 하는 기록 도전에서 자동차는 시간 계측을 하는 부분이 출발선으로부터 뒤로 10cm 넘게 떨어져 있지 않도록 멈추어 있어야 한다. 자동차의 엔진은 출발 전부터 작동되고 있어야 한다.

8.4.3 스탠딩 스타트를 하는 다른 모든 경기에서는 출발 신호가 나오기 전에 엔진을 작동시켜야 할 것인지 아니면 정지시켜야 할지를 특별규정에서 정해야 한다.

8.4.4 개별 출발 또는 한 줄로 나란히 출발하는 자동차에 대해서

8.4.4.a 시간 계측이 자동 계측으로 이루어진다면 자동차 또는 자동차들은 위 스탠딩 스타트로 하는 기록 도전에 대한 정의와 같이 출발 전에 자리를 잡아야 한다.

8.4.4.b 시간 계측이 시계를 쓰는 방법 또는 자동으로 작동되지 않는 계측 시스템으로 이루어진다면 자동차 또는 자동차들은 출발 전에 출발선이 있는 지면에 앞쪽 휠의 일부가 닿도록 자리를 잡아야 한다.

8.4.5 그리드 대형으로 출발하는 자동차에 대해서

8.4.5.a 관련 경기 또는 특별규정에서 정한 출발선을 기준으로 상대적으로 정한 어떤 출발 위치든 시간 계측은 출발 신호가 나올 때 시작된다.

8.4.5.b 이때부터는, 위에서 언급한 규정에서 다르게 정하지 않았다면 레이스가 서킷에서 열리는 경우, 각 자동차가 첫 번째 램을 마쳤을 때부터는 시간 계측선을 넘을 때 계측이 된다.

뒤에서 순서를 유지한다. 그러나, 관련 경기규정 또는 특별규정에서 다르게 정하고 있지 않는 한, 출발 신호가 주어져야 하며, 자동차들이 출발선을 지나야 레이스가 시작된 것으로 간주한다. 또한 선두 자동차가 출발선을 지나고 기록 계측이 시작되어야 한다.

#### 제8.4조 스탠딩 스타트

8.4.1 스탠딩 스타트는 출발 신호가 주어지는 순간에 자동차가 멈추어 있는 방식이다.

8.4.2 스탠딩 스타트를 하는 기록 도전에서 자동차는 시간 계측을 하는 부분이 출발선으로부터 뒤로 10cm 넘게 떨어져 있지 않도록 멈추어 있어야 한다. 자동차의 엔진은 출발 전부터 작동되고 있어야 한다.

8.4.3 스탠딩 스타트를 하는 다른 모든 경기에서는 출발 신호가 나오기 전에 엔진을 작동시켜야 할 것인지 아니면 정지시켜야 할지를 특별규정에서 정해야 한다.

8.4.4 개별 출발 또는 한 줄로 나란히 출발하는 자동차에 대해서

8.4.4.a 시간 계측이 자동 계측으로 이루어진다면 자동차 또는 자동차들은 위 스탠딩 스타트로 하는 기록 도전에 대한 정의와 같이 출발 전에 자리를 잡아야 한다.

8.4.4.b 시간 계측이 시계를 쓰는 방법 또는 자동으로 작동되지 않는 계측 시스템으로 이루어진다면 자동차 또는 자동차들은 출발 전에 출발선이 있는 지면에 앞쪽 휠의 일부가 닿도록 자리를 잡아야 한다.

8.4.5 그리드 대형으로 출발하는 자동차에 대해서

8.4.5.a 관련 경기 또는 특별규정에서 정한 출발선을 기준으로 상대적으로 정한 어떤 출발 위치든 시간 계측은 출발 신호가 나올 때 시작된다.

8.4.5.b 이때부터는, 위에서 언급한 규정에서 다르게 정하지 않았다면 레이스가 서킷에서 열리는 경우, 각 자동차가 첫 번째 램을 마쳤을 때부터는 시간 계측선을 넘을 때 계측이 된다.

8.4.6 출발 그리드가 최종 발표된 뒤, 그리드 출발을 못하는 차량의 자리는 비워둔 채로 남겨 놓으며, 다른 선수들은 그리드에서 발표된 위치를 유지한다.

#### 제8.5조 스타터

모든 국제 스피드 경기에서 스타터는 이 기능을 수행하는 다른 오피셜이 임명되지 않았다면 경기 위원장 또는 레이스 디렉터여야 한다.

#### 제8.6조 부정 출발

8.6.1 부정 출발은 경기 참가자가 다음 경우에 해당될 때다.

8.6.1.a 출발 위치가 (관련 경기 또는 특별규정에 나와 있는 대로가 아닌) 잘못된 곳에 있거나,

8.6.1.b 적절한 신호가 나오기 전에 지정된 위치에서 앞으로 움직인 경우.

8.6.1.c 스탠딩 스타트 동안에 출발 신호가 나왔을 때 움직이고 있거나,

8.6.1.d 롤링 스타트 동안에 일찍 또는 불규칙하게 가속하거나 (모두 관련 경기 또는 특별규정에 나와 있는 대로 또는 레이스 디렉터 혹은 경기위원장이 지정한 대로) 규정된 대형을 유지하지 못한 경우.

8.6.2 어떤 부정 출발이든 이 규칙에 대한 위반으로 간주된다.

#### 제8.7조 히트

8.7.1 경기는 여러 히트로 시작할 수 있으며, 그 구성은 조직위원회가 결정하고 공식 프로그램에 공개되어야 한다.

8.7.2 이러한 히트들의 구성은 필요할 때에는 바꿀 수 있으나 심사위원회만이 그렇게 할 수 있다.

#### 제8.8조 동률

동률이 발생했을 경우 해당 경기 참가자들은 순위 결과에서 이들이 기록한 순위에 걸려 있는 상금 및 그에 따른 상을 나눠가지거나, 이들 경기 참가자들이 모두 동의할 경우에는 심사위원회가 관련 경기 참가자들만으로 제한된 추가 경기를

8.4.6 출발 그리드가 최종 발표된 뒤, 그리드 출발을 못하는 차량의 자리는 비워둔 채로 남겨 놓으며, 다른 차량은 그리드에서 발표된 위치를 유지한다.

#### 제8.5조 스타터

모든 국제 스피드 경기에서 스타터는 이 기능을 수행하는 다른 오피셜이 임명되지 않았다면 경기 위원장 또는 레이스 디렉터여야 한다.

#### 제8.6조 부정 출발

8.6.1 부정 출발은 경기 차량이 다음 경우에 해당될 때다.

8.6.1.a 출발 위치가 (관련 경기 또는 특별규정에 나와 있는 대로가 아닌) 잘못된 곳에 있거나,

8.6.1.b 적절한 신호가 나오기 전에 지정된 위치에서 앞으로 움직인 경우.

8.6.1.c 스탠딩 스타트 동안에 출발 신호가 나왔을 때 움직이고 있거나,

8.6.1.d 롤링 스타트 동안에 일찍 또는 불규칙하게 가속하거나 (모두 관련 경기 또는 특별규정에 나와 있는 대로 또는 레이스 디렉터 혹은 경기위원장이 지정한 대로) 규정된 대형을 유지하지 못한 경우.

8.6.2 어떤 부정 출발이든 이 규칙에 대한 위반으로 간주된다.

#### 제8.7조 히트

8.7.1 경기는 여러 히트로 시작할 수 있으며, 그 구성은 조직위원회가 결정하고 공식 프로그램에 공개되어야 한다.

8.7.2 이러한 히트들의 구성은 필요할 때에는 바꿀 수 있으나 심사위원회만이 그렇게 할 수 있다.

#### 제8.8조 동률

동률이 발생했을 경우 해당 경기 참가자들은 순위 결과에서 이들이 기록한 순위에 걸려 있는 상금 및 그에 따른 상을 나눠가지거나, 이들 경기 참가자들이 모두 동의할 경우에는 심사위원회가 관련 경기 참가자들만으로 제한된 추가 경기를



허가할 수 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도 처음의 경기를 다시 치를 수는 없다.

허가할 수 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도 처음의 경기를 다시 치를 수는 없다.

**제9조 경기 참가자와 선수**

**제9조 경기 참가자와 선수**

**제9.1조 경기 참가자 (Competitor)와 선수의 등록**

**제9.1조 경기 참가자 (Competitor)와 선수의 등록**

9.1.1 경기 참가자 또는 선수로서 자격을 얻고자 하는 어떤 사람이든 그가 시민권을 가진 나라의 ASN에 라이선스를 정식으로 신청해야 한다.

9.1.1 경기 참가자 또는 선수로서 자격을 얻고자 하는 어떤 사람이든 그가 시민권을 가진 나라의 ASN에 라이선스를 정식으로 신청해야 한다.

9.1.2 만약 참가 신청서에 경기 참가자가 나와 있지 않으면 퍼스트 선수가 경기 참가자를 겸하며 그에 따른 두 개의 라이선스를 가져야 한다.

9.1.2 만약 참가 신청서에 경기 참가자가 나와 있지 않으면 퍼스트 선수가 경기 참가자를 겸하며 그에 따른 두 개의 라이선스를 가져야 한다.

**제9.2조 라이선스의 발급**

**제9.2조 라이선스의 발급**

9.2.1 ASN은 그 ASN의 명칭과 함께 “팀 등록증 (또는 라이선스)”, “선수등록증 (또는 라이선스)” 또는 ISC 부칙 L에 정의된 “장애인 선수용 등록증 (또는 라이선스)”라는 이름으로 부르는, FIA가 승인한 형식모델에 따라 작성된 등록증을 발급할 수 있다.

9.2.1 ASN은 그 ASN의 명칭과 함께 “팀 등록증 (또는 라이선스)”, “선수등록증 (또는 라이선스)” 또는 ISC 부칙 L에 정의된 “장애인 선수용 등록증 (또는 라이선스)”라는 이름으로 부르는, FIA가 승인한 형식모델에 따라 작성된 등록증을 발급할 수 있다.

9.2.2 FIA 국제 라이선스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다. 곧,

9.2.2 FIA 국제 라이선스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다. 곧,

9.2.2.a 경기 참가자 라이선스

9.2.2.a 경기 참가자 라이선스

9.2.2.b 선수 라이선스

9.2.2.b 선수 라이선스

9.2.2.c 장애인 선수용 등록증 (또는 라이선스)

9.2.2.c 장애인 선수용 등록증 (또는 라이선스)

9.2.3 각 ASN은 국제 라이선스를 발급하는 것이 허가된다.

9.2.3 각 ASN은 국제 라이선스를 발급하는 것이 허가된다.

9.2.4 KARA는 국내 라이선스를 발급할 수 있으며 그 종류는 KARA가 정할 수 있다. 국제 라이선스도 같은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그 나라 안에서만, 또는 경기의 특정한 범주에서만 유효하다는 문구를 더한다.

9.2.4 KARA는 국내 라이선스를 발급할 수 있으며 그 종류는 KARA가 정할 수 있다. 국제 라이선스도 같은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그 나라 안에서만, 또는 경기의 특정한 범주에서만 유효하다는 문구를 더한다.

**제9.3조 라이선스 발급 권한**

**제9.3조 라이선스 발급 권한**

9.3.1 각 ASN은 그 나라의 국민들에게 라이선스를 발급할 권한을 가진다.

9.3.1 각 ASN은 그 나라의 국민들에게 라이선스를 발급할 권한을 가진다.

9.3.2 각 ASN은 다음에 명시한 바에 따라서 FIA

9.3.2 각 ASN은 다음에 명시한 바에 따라서 FIA

를 대표하는 주체가 있는 다른 나라의 국민들에게, 라이선스 발급 권한을 가진다.

9.3.2.a 소속 ASN이 사전에 발급에 동의해야 하며, 이는 특별한 경우에 한하여 1년에 단 한 번 뿐이다.

9.3.2.b 다른 나라에 살고 있다는 타국 거주 증거를 소속 ASN(여권을 발급한 나라의)에게 제출할 수 있어야 한다 (신청한 날 기준으로 18살이 되지 않은 사람은 다른 나라에서 전일제 교육을 받고 있다는 증거를 제공해야 한다).

9.3.2.c 소속 ASN은 원래 발급되었던 라이선스를 회수해야 한다.

9.3.3 다른 ASN에 라이선스를 신청할 수 있도록 소속 ASN으로부터 허가를 받은 어떤 사람도 그 해에 유효한 소속 ASN의 라이선스를 가지고 있을 수 없다.

9.3.4 그러나 아주 특별한 이유가 있을 때 라이선스 보유자가 현재 년도 도중에 라이선스의 국적을 바꾸고자 할 때에는 소속 ASN으로부터 동의를 얻어서 소속 ASN에 예전 라이선스를 반납한 다음에만 국적을 바꿀 수 있다.

9.3.5 ASN은 또한 FIA를 대표하는 주체가 없는 나라에 속한 외국인에게 라이선스를 발급할 수 있으나, 이러한 의사를 FIA에게 즉시 전달해야만 한다. 만약 이러한 라이선스를 승인할 수 없는 어떠한 이유라도 있을 경우에는 FIA는 즉시 이를 알린다.

9.3.6 예외적으로 어떤 ASN이 공인한 드라이빙 스쿨에 실제로 다니는 학생은 학생의 소속 ASN과 주최국 ASN의 동의를 받는 조건 하에서 이 드라이빙 스쿨에서 조직하는 그 나라 국내경기에 두 번까지 참가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주최국 ASN에 원래의 라이선스를 경기 기간 동안 임시 예치해야 한다.

#### **제9.4조**

~~소속 ASN이 아닌 다른 ASN의 라이선스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의 소속 ASN이 정한 조건에 따라서 이 라이선스로 소속 ASN의 관할 영토에서 열리는 국내경기에 참가할 수 있다.~~

를 대표하는 주체가 있는 다른 나라의 국민들에게, 라이선스 발급 권한을 가진다.

9.3.2.a 소속 ASN이 사전에 발급에 동의해야 하며, 이는 특별한 경우에 한하여 1년에 단 한 번 뿐이다.

9.3.2.b 다른 나라에 살고 있다는 타국 거주 증거를 소속 ASN(여권을 발급한 나라의)에게 제출할 수 있어야 한다 (신청한 날 기준으로 18살이 되지 않은 사람은 다른 나라에서 전일제 교육을 받고 있다는 증거를 제공해야 한다).

9.3.2.c 소속 ASN은 원래 발급되었던 라이선스를 회수해야 한다.

9.3.3 다른 ASN에 라이선스를 신청할 수 있도록 소속 ASN으로부터 허가를 받은 어떤 사람도 그 해에 유효한 소속 ASN의 라이선스를 가지고 있을 수 없다.

9.3.4 그러나 아주 특별한 이유가 있을 때 라이선스 보유자가 현재 년도 도중에 라이선스의 국적을 바꾸고자 할 때에는 소속 ASN으로부터 동의를 얻어서 소속 ASN에 예전 라이선스를 반납한 다음에만 국적을 바꿀 수 있다.

9.3.5 ASN은 또한 FIA를 대표하는 주체가 없는 나라에 속한 외국인에게 라이선스를 발급할 수 있으나, 이러한 의사를 FIA에게 즉시 전달해야만 한다. 만약 이러한 라이선스를 승인할 수 없는 어떠한 이유라도 있을 경우에는 FIA는 즉시 이를 알린다.

9.3.6 예외적으로 어떤 ASN이 공인한 드라이빙 스쿨에 실제로 다니는 학생은 학생의 소속 ASN과 주최국 ASN의 동의를 받는 조건 하에서 이 드라이빙 스쿨에서 조직하는 그 나라 국내경기에 두 번까지 참가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주최국 ASN에 원래의 라이선스를 경기 기간 동안 임시 예치해야 한다.

**제9.5조 경기 참가자 또는 선수의 국적**

9.5.1 국제스포츠규정의 적용에 관해서는, 어떤 ASN으로부터 라이선스를 받은 모든 경기 참가자 또는 선수는 그 라이선스의 유효기간 동안에는 그 ASN의 국적을 얻은 것으로 본다.

9.5.2 라이선스의 국적에 관계없이 FIA 월드컵 연립경기에 참가하는 모든 선수는 모든 공식 문서, 발행물 그리고 시상식에서 여권 국적을 유지한다.

**제9.6조 라이선스의 거절**

9.6.1 KARA와 FIA는 라이선스를 신청할 수 있는 국내 또는 국제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신청자의 라이선스 발급을 거절할 수 있다.

9.6.2 이러한 거절 이유는 명시되어야 한다.

**제9.7조 라이선스의 유효 기간**

라이선스는 해마다 12월 31일에 만료되어야 한다. 국내 라이선스의 경우 해당 ASN의 방침에 따른다.

**제9.8조 부과되는 라이선스 발급비**

9.8.1 KARA는 라이선스 발급을 위한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이 비용은 해마다 KARA가 정한다.

9.8.2 FIA는 국제 라이선스에 부과된 수수료를 KARA에게서 통보받아야 한다.

**제9.9조 라이선스의 유효성**

9.9.1 KARA가 발급한 팀 또는 선수의 라이선스는 FIA를 대표하는 주체가 있는 모든 나라에서 유효하며, 이 라이선스 보유자는 KARA 공인 경기는 물론 국제스포츠 캘린더에 등록된 모든 경기에 대한 참가 자격을 가진다. 단, KARA의 라이선스 승인에 관해서는 국제스포츠규정에 언급된 조건을 적용 받는다.

9.9.2 클로즈드 경기에 대해서는 라이선스 보유자는 적용되는 경기 및 특별규정에 포함된 특별 조건을 준수해야 한다.

**제9.10조 라이선스의 제시**

경기에서 정당한 자격이 있는 오피셜의 라이선스

**제9.4조 경기 참가자 또는 선수의 국적**

9.4.1 국제스포츠규정의 적용에 관해서는, 어떤 ASN으로부터 라이선스를 받은 모든 경기 참가자 또는 선수는 그 라이선스의 유효기간 동안에는 그 ASN의 국적을 얻은 것으로 본다.

9.4.2 라이선스의 국적에 관계없이 FIA 월드컵 연립경기에 참가하는 모든 선수는 모든 공식 문서, 발행물 그리고 시상식에서 여권 국적을 유지한다.

**제9.5조 라이선스의 거절**

9.5.1 KARA와 FIA는 라이선스를 신청할 수 있는 국내 또는 국제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신청자의 라이선스 발급을 거절할 수 있다.

9.5.2 이러한 거절 이유는 명시되어야 한다.

**제9.6조 라이선스의 유효 기간**

라이선스는 해마다 12월 31일에 만료되어야 한다. 국내 라이선스의 경우 해당 ASN의 방침에 따른다.

**제9.7조 부과되는 라이선스 발급비**

9.7.1 KARA는 라이선스 발급을 위한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이 비용은 해마다 KARA가 정한다.

9.7.2 FIA는 국제 라이선스에 부과된 수수료를 KARA에게서 통보받아야 한다.

**제9.8조 라이선스의 유효성**

9.8.1 KARA가 발급한 팀 또는 선수의 라이선스는 FIA를 대표하는 주체가 있는 모든 나라에서 유효하며, 이 라이선스 보유자는 KARA 공인 경기는 물론 국제스포츠 캘린더에 등록된 모든 경기에 대한 참가 자격을 가진다. 단, KARA의 라이선스 승인에 관해서는 국제스포츠규정에 언급된 조건을 적용 받는다.

9.8.2 클로즈드 경기에 대해서는 라이선스 보유자는 적용되는 경기 및 특별규정에 포함된 특별 조건을 준수해야 한다.

**제9.9조 라이선스의 제시**

경기에서 정당한 자격이 있는 오피셜의 라이선스

제시 요청이 있을 때 경기 참가자 또는 선수는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9.11조 라이선스의 취소**

9.11.1 금지된 경기에 참가, 운전, 직무 수행, 또는 어떤 식으로도 참여한 어떤 사람도 라이선스를 발급한 ASN으로부터 출장 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9.11.2 금지된 경기가 이러한 ASN의 관할 바깥에서 개최되었거나 개최될 예정이라면 관련된 두 ASN이 출장 정지의 기간을 합의해야 하며 합의에 실패했다면 이 문제는 FIA에 전달되어야 한다.

**제9.12조 의료 기록 관리**

국제경기에 참가하는 모든 선수는 요청이 있을 때에는 국제스포츠규정 부칙 L의 요구 조건에 따라서 적합한 진단서를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

**제9.13조 가명**

9.13.1 라이선스를 가명으로 요청하려면 관련된 KARA에 특별 신청을 해야 한다.

9.13.2 이 경우 승인되었다면 라이선스는 그 가명으로 발급된다.

9.13.3 가명으로 등록된 라이선스 보유자는 모든 경기에서 어떤 다른 이름으로도 참가해서는 안 된다.

9.13.4 가명을 바꾸려면 원래의 이름을 바꿀 때와 같은 절차가 필요하다.

9.13.5 가명으로 등록한 사람은 KARA로부터 본명으로 새로운 라이선스를 발급받을 때까지는 본명으로 돌아갈 수 없다.

**제9.14조 참가 신청을 한 선수 교체**

9.14.1 참가 신청이 마감되기 전 선수 교체를 원하는 팀은 금지 조항이 규정에 없으면 가능하다.

9.14.2 참가 신청이 마감된 후 선수 교체를 원하는 팀은 조직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9.15조 식별 번호**

적용되는 규정 안에서 다르게 정하지 않은 한은,

제시 요청이 있을 때 경기 참가자 또는 선수는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9.10조 라이선스의 취소**

9.10.1 금지된 경기에 참가, 운전, 직무 수행, 또는 어떤 식으로도 참여한 어떤 사람도 라이선스를 발급한 ASN으로부터 출장 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9.10.2 금지된 경기가 이러한 ASN의 관할 바깥에서 개최되었거나 개최될 예정이라면 관련된 두 ASN이 출장 정지의 기간을 합의해야 하며 합의에 실패했다면 이 문제는 FIA에 전달되어야 한다.

**제9.11조 의료 기록 관리**

국제경기에 참가하는 모든 선수는 요청이 있을 때에는 국제스포츠규정 부칙 L의 요구 조건에 따라서 적합한 진단서를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

**제9.12조 가명**

9.12.1 라이선스를 가명으로 요청하려면 관련된 KARA에 특별 신청을 해야 한다.

9.12.2 이 경우 승인되었다면 라이선스는 그 가명으로 발급된다.

9.12.3 가명으로 등록된 라이선스 보유자는 모든 경기에서 어떤 다른 이름으로도 참가해서는 안 된다.

9.12.4 가명을 바꾸려면 원래의 이름을 바꿀 때와 같은 절차가 필요하다.

9.12.5 가명으로 등록한 사람은 KARA로부터 본명으로 새로운 라이선스를 발급받을 때까지는 본명으로 돌아갈 수 없다.

**제9.13조 참가 신청을 한 선수 교체**

9.13.1 참가 신청이 마감되기 전 선수 교체를 원하는 팀은 금지 조항이 규정에 없으면 가능하다.

9.13.2 참가 신청이 마감된 후 선수 교체를 원하는 팀은 조직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9.14조 식별 번호**

적용되는 규정 안에서 다르게 정하지 않은 한은,

경기 동안 각 자동차는 국제스포츠규정의 관련 조항에 따라서 하나 또는 그보다 많은 번호 또는 표식을 잘 보이게 붙여야 한다.

### 제9.16조 경기 참가팀의 책임

9.16.1 경기 참가팀은 경기 또는 챔피언십에 참가하거나 이와 관련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특히 직접 또는 간접 고용인, 선수, 미캐닉, 컨설턴트, 서비스 제공자, 또는 탑승자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 그리고 경기 참가자가 보호 구역에 들어올 수 있도록 허용한 모든 사람들의 모든 행동 또는 태만에 대한 책임을 진다.

9.16.2 이에 더해서 이들 각각은 국제스포츠규정 또는 관련된 KARA의 국내규정 위반에 대해서 똑같은 책임을 진다.

9.16.3 FIA의 요청에 따라서, 경기 참가팀은 경기 또는 챔피언십에 참가하거나 이와 관련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들의 전체 목록을 이들을 대표하여 FIA에 제공한다.

### 제9.17조 허가되지 않는 다른 경기 참가

9.17.1 어떤 국내 또는 국제경기든 이에 참가하는 경기 참가팀은 또는 여기에서 운전하기로 한 선수가 그 경기에 참여하지 않고 같은 날 다른 곳에서 열리는 다른 경기에 참여하면 그는 후자의 경기가 시작될 때부터 KARA가 적절하다고 간주하는 기간 동안 출장 정지 처분(라이선스의 일시 취소)을 받는다.

9.17.2 위 두 경기가 서로 다른 나라에서 열린다면 관련된 두 ASN이 부과할 벌칙을 합의하며, ASN이 합의에 실패했다면 이 문제는 적절한 결정을 위해서 FIA에 전달되어야 하고 이에 대한 FIA의 결정이 최종이 된다.

### 제9.18조 국제경기 참가 신청

9.18.1 FIA 연감이나 FIA 공고로 발표된 국제스포츠캘린더에 나와 있는, 기록 도전을 제외한 경기들만이 공식으로 공인된 이벤트다.

9.18.2 금지된 경기에 참가하는 어떤 라이선스 보유자든 국제스포츠규정을 통해 부과할 수 있는 징계 대상이 된다.

경기 동안 각 자동차는 국제스포츠규정의 관련 조항에 따라서 하나 또는 그보다 많은 번호 또는 표식을 잘 보이게 붙여야 한다.

### 제9.15조 경기 참가팀의 책임

9.15.1 경기 참가팀은 경기 또는 챔피언십에 참가하거나 이와 관련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특히 직접 또는 간접 고용인, 선수, 미캐닉, 컨설턴트, 서비스 제공자, 또는 탑승자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 그리고 경기 참가자가 보호 구역에 들어올 수 있도록 허용한 모든 사람들의 모든 행동 또는 태만에 대한 책임을 진다.

9.15.2 이에 더해서 이들 각각은 국제스포츠규정 또는 관련된 KARA의 국내규정 위반에 대해서 똑같은 책임을 진다.

9.15.3 FIA의 요청에 따라서, 경기 참가팀은 경기 또는 챔피언십에 참가하거나 이와 관련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들의 전체 목록을 이들을 대표하여 FIA에 제공한다.

### 제9.16조 허가되지 않는 다른 경기 참가

9.16.1 어떤 국내 또는 국제경기든 이에 참가하는 경기 참가팀은 또는 여기에서 운전하기로 한 선수가 그 경기에 참여하지 않고 같은 날 다른 곳에서 열리는 다른 경기에 참여하면 그는 후자의 경기가 시작될 때부터 KARA가 적절하다고 간주하는 기간 동안 출장 정지 처분(라이선스의 일시 취소)을 받는다.

9.16.2 위 두 경기가 서로 다른 나라에서 열린다면 관련된 두 ASN이 부과할 벌칙을 합의하며, ASN이 합의에 실패했다면 이 문제는 적절한 결정을 위해서 FIA에 전달되어야 하고 이에 대한 FIA의 결정이 최종이 된다.

### 제9.17조 국제경기 참가 신청

9.17.1 FIA 연감이나 FIA 공고로 발표된 국제스포츠캘린더에 나와 있는, 기록 도전을 제외한 경기들만이 공식으로 공인된 이벤트다.

9.17.2 금지된 경기에 참가하는 어떤 라이선스 보유자든 국제스포츠규정을 통해 부과할 수 있는 징계 대상이 된다.

<p><b>제10조 자동차</b></p> <p><b>제10.1조 자동차의 분류</b> 기록 도전과 그밖에 다른 경기 모두에 대해서, 자동차는 형식에 따라서, 그리고/또는 어떤 유형이든 동력원의 능력에 따라서 분류될 수 있으며, 기록 도전과 경기는 관련된 규정 또는 기록 등급에 따라서 그 제한에 부합하는 자동차만으로 제한될 수 있다.</p> <p><b>제10.2조 위험한 구조</b> 심사위원회는 위험하다고 간주되는 구조를 가진 자동차를 제외시킬 수 있다.</p> <p><b>제10.3조 자동차의 공인 (또는 호몰로게이션)</b></p> <p>10.3.1 자동차는 관련 기술 및 경기규정에 따른 호몰로게이션을 필요로 한다.</p> <p>10.3.2 호몰로게이션 절차를 완료하고 FIA 또는 관련 ASN이 이를 받아들이고 나면, 그 자동차의 차량 검사는 규정에 따른 호몰로게이션 서류에 근거해야 한다.</p> <p>10.3.3 자동차는 각자 호몰로게이션 내용을 준수해야 한다.</p> <p>10.3.4 제출된 공인 항목 중에 무엇이든 오류나 누락이 있다고 해서 이 규정을 이행하지 않은 데에 대한 면책을 받을 수는 없다.</p> <p><b>제10.4조 특정한 자동차의 출장 정지와 자격 상실</b></p> <p>10.4.1 KARA 또는 FIA는 경기 참가자, 선수, 제조사 또는 이들이 허가한 대표가 국제스포츠규정 또는 국내스포츠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난 특정한 자동차를 하나 또는 그보다 많은 경기에 대해서 출장 정지, 제외, 또는 자격 상실시킬 수 있다.</p> <p>10.4.2 KARA는 경기 참가자, 선수, 제조사 또는 이들이 허가한 대표가 국제스포츠규정 또는 국내스포츠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난 특정한 자동차를 출장 정지, 또는 자격 상실시킬 수 있다.</p> <p>10.4.3 만약 국제적인 출장 정지 또는 자격 상실인 경우에는 KARA가 FIA에 보고하며, FIA는 모든 다른 ASN에 이를 통보한다. 이들 다른 ASN</p>	<p><b>제10조 자동차</b></p> <p><b>제10.1조 자동차의 분류</b> 기록 도전과 그밖에 다른 경기 모두에 대해서, 자동차는 형식에 따라서, 그리고/또는 어떤 유형이든 동력원의 능력에 따라서 분류될 수 있으며, 기록 도전과 경기는 관련된 규정 또는 기록 등급에 따라서 그 제한에 부합하는 자동차만으로 제한될 수 있다.</p> <p><b>제10.2조 위험한 구조</b> 심사위원회는 위험하다고 간주되는 구조를 가진 자동차를 제외시킬 수 있다.</p> <p><b>제10.3조 자동차의 공인 (또는 호몰로게이션)</b></p> <p>10.3.1 자동차는 관련 기술 및 경기규정에 따른 호몰로게이션을 필요로 한다.</p> <p>10.3.2 호몰로게이션 절차를 완료하고 FIA 또는 관련 ASN이 이를 받아들이고 나면, 그 자동차의 차량 검사는 규정에 따른 호몰로게이션 서류에 근거해야 한다.</p> <p>10.3.3 자동차는 각자 호몰로게이션 내용을 준수해야 한다.</p> <p>10.3.4 제출된 공인 항목 중에 무엇이든 오류나 누락이 있다고 해서 이 규정을 이행하지 않은 데에 대한 면책을 받을 수는 없다.</p> <p><b>제10.4조 특정한 자동차의 출장 정지와 자격 상실</b></p> <p>10.4.1 KARA 또는 FIA는 경기 참가자, 선수, 제조사 또는 이들이 허가한 대표가 국제스포츠규정 또는 국내스포츠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난 특정한 자동차를 하나 또는 그보다 많은 경기에 대해서 출장 정지, 제외, 또는 자격 상실시킬 수 있다.</p> <p>10.4.2 KARA는 경기 참가자, 선수, 제조사 또는 이들이 허가한 대표가 국제스포츠규정 또는 국내스포츠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난 특정한 자동차를 출장 정지, 또는 자격 상실시킬 수 있다.</p> <p>10.4.3 만약 국제적인 출장 정지 또는 자격 상실인 경우에는 KARA가 FIA에 보고하며, FIA는 모든 다른 ASN에 이를 통보한다. 이들 다른 ASN</p>
--	--

들은 처분 기간 동안 해당 차량을 관할하는 모든 경기에서 금지시켜야 한다.

10.4.4 한 ASN이 다른 ASN에 속한 자동차에 대해서 벌칙을 결정한 경우, 이에 대해서 FIA에 항소할 수 있으며, FIA의 결정이 최종결정 된다.

**제10.5조 자동차 모델에 대한 출장 정지 및 자격 상실**

10.5.1 KARA는 자동차 제조사 또는 이들이 허가한 대표가 이 국제스포츠규정 또는 국내스포츠규정을 위반한 경우, 관할 영토 안에서 그 자동차의 모델을 출장 정지시킬 수 있다.

10.5.2 KARA가 이 벌칙을 국제적으로 적용하기를 원하거나 해당 모델을 자격 상실시키고자 할 때에는 FIA 회장에게 이를 신청해야 하며, FIA 회장은 이 문제를 국제재판소에 회부한다.

10.5.3 국제재판소는 FIA 회원 두 명, 그리고 이들이 상호 합의로 정할 또 한 명의 회원으로 구성한다. 처음 두 명의 FIA 회원이 세 번째 회원 지정에 합의하지 못할 경우, 세번째 회원도 FIA 회장이 지명한다.

10.5.4 국제재판소의 결정에 대해서 벌칙을 받은 제조자는 국제스포츠규정과 부속 조항에 나와 있는 조건에 따라서 제조자의 소속 ASN을 통하여, 또는 국제적 벌칙을 요청한 ASN을 통하여 국제항소법원에 항소할 수 있다.

10.5.5 제조자가 속한 나라의 ASN이 국제적인 벌칙의 부과를 신청한 ASN일 경우, 그 ASN은 FIA에 항소를 전달하는 것을 거부할 수 없다.

**제10.6조 자동차의 광고**

10.6.1 자동차의 광고는 국제스포츠규정에 나와 있는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다.

10.6.2 KARA는 그 관할권 안에서 조직되는 경기에 적용되는 특별 조건을 지정해야 한다.

10.6.3 경기의 특별규정은 이 특별 조건은 물론 그 경기가 열리는 나라 안에서 효력이 있는 모든 법적 그리고 행정 규정을 언급해야 한다.

**제10.7조 허위 광고**

들은 처분 기간 동안 해당 차량을 관할하는 모든 경기에서 금지시켜야 한다.

10.4.4 한 ASN이 다른 ASN에 속한 자동차에 대해서 벌칙을 결정한 경우, 이에 대해서 FIA에 항소할 수 있으며, FIA의 결정이 최종결정 된다.

**제10.5조 자동차 모델에 대한 출장 정지 및 자격 상실**

10.5.1 KARA는 자동차 제조사 또는 이들이 허가한 대표가 이 국제스포츠규정 또는 국내스포츠규정을 위반한 경우, 관할 영토 안에서 그 자동차의 모델을 출장 정지시킬 수 있다.

10.5.2 KARA가 이 벌칙을 국제적으로 적용하기를 원하거나 해당 모델을 자격 상실시키고자 할 때에는 FIA 회장에게 이를 신청해야 하며, FIA 회장은 이 문제를 국제재판소에 회부한다.

10.5.3 국제재판소는 FIA 회원 두 명, 그리고 이들이 상호 합의로 정할 또 한 명의 회원으로 구성한다. 처음 두 명의 FIA 회원이 세 번째 회원 지정에 합의하지 못할 경우, 세번째 회원도 FIA 회장이 지명한다.

10.5.4 국제재판소의 결정에 대해서 벌칙을 받은 제조자는 국제스포츠규정과 부속 조항에 나와 있는 조건에 따라서 제조자의 소속 ASN을 통하여, 또는 국제적 벌칙을 요청한 ASN을 통하여 국제항소법원에 항소할 수 있다.

10.5.5 제조자가 속한 나라의 ASN이 국제적인 벌칙의 부과를 신청한 ASN일 경우, 그 ASN은 FIA에 항소를 전달하는 것을 거부할 수 없다.

**제10.6조 자동차의 광고**

10.6.1 자동차의 광고는 국제스포츠규정에 나와 있는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다.

10.6.2 KARA는 그 관할권 안에서 조직되는 경기에 적용되는 특별 조건을 지정해야 한다.

10.6.3 경기의 특별규정은 이 특별 조건은 물론 그 경기가 열리는 나라 안에서 효력이 있는 모든 법적 그리고 행정 규정을 언급해야 한다.

**제10.7조 허위 광고**

<p>10.7.1 경기의 결과를 광고하는 어떤 경기 참가자 또는 회사든 언급하는 성과의 정확한 조건, 경기의 범주, 등급 및 그밖에 특성, 자동차의 특성, 그리고 순위 또는 결과를 정확하게 밝혀야 한다.</p> <p>10.7.2 대중들에게 의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계획적으로 정보를 생략하거나 덧붙이면 광고의 공개에 책임이 있는 사람은 벌칙을 받을 수 있다.</p> <p>10.7.3 FIA 챔피언십, 컵, 트로피, 챌린지 또는 시리즈의 마지막 경기가 끝나기 전에는 이들 챔피언십, 컵, 트로피, 챌린지 또는 시리즈 결과에 관한 모든 광고에는 다음 문구를 넣어야 한다. “FIA의 공식 결과 발표를 필요로 함.”</p> <p>10.7.4 이러한 규칙은 FIA 챔피언십, 컵, 트로피, 챌린지 또는 시리즈의 한 경기에서 거둔 우승에 대해서도 적용된다.</p> <p>10.7.5 이러한 광고에는 관련된 FIA 챔피언십, 컵, 트로피, 챌린지 또는 시리즈에 대해 특별히 정해져 있는 FIA 로고가 포함되어야 한다.</p> <p>10.7.6 이러한 규칙을 위반하면 FIA는 누구든 광고의 공개에 책임이 있는 경기 참가자, 자동차 제조사, 선수, ASN 또는 회사에게 벌칙을 부과할 수 있다.</p> <p>10.7.7 서로 다른 제조사에서 공급한 부품을 포함한 자동차에 부여하는 이름을 둘러싼 어떠한 항의 또는 분쟁이든 만약 이들 제조사가 모두 같은 나라에 속해 있다면 그 나라의 ASN가, 이들 제조사가 서로 다른 나라에 속해 있다면 FIA가 결정한다.</p> <p><b>제11조 오피셜</b></p> <p><b>제11.1조 오피셜의 목록</b></p> <p>11.1.1 ‘오피셜’이란 다음 사람들로 구성되며 이들은 보조 인원을 둘 수 있다.</p> <p>11.1.1.a 심사위원</p> <p>11.1.1.b 레이스 디렉터</p> <p>11.1.1.c 경기위원장</p> <p>11.1.1.d 경기 사무국장</p>	<p>10.7.1 경기의 결과를 광고하는 어떤 경기 참가자 또는 회사든 언급하는 성과의 정확한 조건, 경기의 범주, 등급 및 그밖에 특성, 자동차의 특성, 그리고 순위 또는 결과를 정확하게 밝혀야 한다.</p> <p>10.7.2 대중들에게 의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계획적으로 정보를 생략하거나 덧붙이면 광고의 공개에 책임이 있는 사람은 벌칙을 받을 수 있다.</p> <p>10.7.3 FIA 챔피언십, 컵, 트로피, 챌린지 또는 시리즈의 마지막 경기가 끝나기 전에는 이들 챔피언십, 컵, 트로피, 챌린지 또는 시리즈 결과에 관한 모든 광고에는 다음 문구를 넣어야 한다. “FIA의 공식 결과 발표를 필요로 함.”</p> <p>10.7.4 이러한 규칙은 FIA 챔피언십, 컵, 트로피, 챌린지 또는 시리즈의 한 경기에서 거둔 우승에 대해서도 적용된다.</p> <p>10.7.5 이러한 광고에는 관련된 FIA 챔피언십, 컵, 트로피, 챌린지 또는 시리즈에 대해 특별히 정해져 있는 FIA 로고가 포함되어야 한다.</p> <p>10.7.6 이러한 규칙을 위반하면 FIA는 누구든 광고의 공개에 책임이 있는 경기 참가자, 자동차 제조사, 선수, ASN 또는 회사에게 벌칙을 부과할 수 있다.</p> <p>10.7.7 서로 다른 제조사에서 공급한 부품을 포함한 자동차에 부여하는 이름을 둘러싼 어떠한 항의 또는 분쟁이든 만약 이들 제조사가 모두 같은 나라에 속해 있다면 그 나라의 ASN가, 이들 제조사가 서로 다른 나라에 속해 있다면 FIA가 결정한다.</p> <p><b>제11조 오피셜</b></p> <p><b>제11.1조 오피셜의 목록</b></p> <p>11.1.1 ‘오피셜’이란 다음 사람들로 구성되며 이들은 보조 인원을 둘 수 있다.</p> <p>11.1.1.a 심사위원</p> <p>11.1.1.b 레이스 디렉터</p> <p>11.1.1.c 경기위원장</p> <p>11.1.1.d 경기 사무국장</p>
---	---



11.1.1.e 기록 오피셜	11.1.1.e 기록 오피셜
11.1.1.f 기술 오피셜	11.1.1.f 기술 오피셜
11.1.1.g 의료 위원장 (임무는 관련 경기규정에서 정의한다)	11.1.1.g 의료 위원장 (임무는 관련 경기규정에서 정의한다)
11.1.1.h 안전 위원장 (임무는 관련 경기규정에서 정의한다)	11.1.1.h 안전 위원장 (임무는 관련 경기규정에서 정의한다)
11.1.1.i 트랙 또는 로드 마샬	11.1.1.i 트랙 또는 로드 마샬
11.1.1.j 플래그 마샬	11.1.1.j 플래그 마샬
11.1.1.k 결승선 판정관	11.1.1.k 결승선 판정관
11.1.1.l 사실 판정관	11.1.1.l 사실 판정관
11.1.1.m 스타터	11.1.1.m 스타터
11.1.1.n 환경 위원장 (임무는 관련 경기규정에서 정의한다)	11.1.1.n 환경 위원장 (임무는 관련 경기규정에서 정의한다)
11.1.2 FIA 챔피언십 경기에서는 FIA가 다음 오피셜을 지명할 수 있으며, 그 임무는 관련 경기규정에서 정의한다.	11.1.2 FIA 챔피언십 경기에서는 FIA가 다음 오피셜을 지명할 수 있으며, 그 임무는 관련 경기규정에서 정의한다.
11.1.2.a 경기 대표	11.1.2.a 경기 대표
11.1.2.b 안전 대표	11.1.2.b 안전 대표
11.1.2.c 의료 대표	11.1.2.c 의료 대표
11.1.2.d 기술 대표	11.1.2.d 기술 대표
11.1.2.e 미디어 대표	11.1.2.e 미디어 대표
<b>제11.2조 지휘감독권</b> 위에 나와 있는 오피셜과는 별도로, KARA는 어느 나라에서 열리는지 관계없이 국제스포츠규정이 관할하는 모든 경기에서 정당한 자격을 갖춘 사람들에게 자국민 중 누구든 개별적으로 지휘 및 감독할 권한을 부여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면 경기의 주최자에 대하여 이러한 특혜를 유지할 권한이 있다.	<b>제11.2조 지휘감독권</b> 위에 나와 있는 오피셜과는 별도로, KARA는 어느 나라에서 열리는지 관계없이 국제스포츠규정이 관할하는 모든 경기에서 정당한 자격을 갖춘 사람들에게 자국민 중 누구든 개별적으로 지휘 및 감독할 권한을 부여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면 경기의 주최자에 대하여 이러한 특혜를 유지할 권한이 있다.
<b>제11.3조 오피셜의 조직 구조</b>	<b>제11.3조 오피셜의 조직 구조</b>

<p>11.3.1 국제경기에서는 적어도 세 명의 심사위원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 그리고 경기위원장, 그리고 경기의 결과가 전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시간 기록에 따라 결정될 경우에는 한 명 또는 그보다 많은 기록 오피셜이 있어야 한다.</p>	<p>11.3.1 국제경기에서는 적어도 세 명의 심사위원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 그리고 경기위원장, 그리고 경기의 결과가 전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시간 기록에 따라 결정될 경우에는 한 명 또는 그보다 많은 기록 오피셜이 있어야 한다.</p>
<p>11.3.2 심사위원들은 단일체로 직무를 수행하며 특별규정 또는 무엇이든 적용되는 규정에서 명확하게 지정한 위원장의 권한 아래에 있다.</p>	<p>11.3.2 심사위원들은 단일체로 직무를 수행하며 특별규정 또는 무엇이든 적용되는 규정에서 명확하게 지정한 위원장의 권한 아래에 있다.</p>
<p>11.3.3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특히 대회 계획, 그리고 합의의 준수를 보장할 책임을 가진다. 또한 심사위원장은 안전을 제기하고 회의록을 작성할 책임을 진다.</p>	<p>11.3.3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특히 대회 계획, 그리고 합의의 준수를 보장할 책임을 가진다. 또한 심사위원장은 안전을 제기하고 회의록을 작성할 책임을 진다.</p>
<p>11.3.4 심사위원회 내 찬반이 갈린 경우, 심사위원장이 최종 결정권을 가진다.</p>	<p>11.3.4 심사위원회 내 찬반이 갈린 경우, 심사위원장이 최종 결정권을 가진다.</p>
<p>11.3.5 다르게 규정되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심사위원회는 국제스포츠규정에 정의된 경기 기간 동안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야 한다.</p>	<p>11.3.5 다르게 규정되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심사위원회는 국제스포츠규정에 정의된 경기 기간 동안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야 한다.</p>
<p>11.3.6 원활한 운영을 보장하기 위하여 경기위원장은 경기 내내 대회 심사위원장과 밀접한 연락을 유지해야 한다.</p>	<p>11.3.6 원활한 운영을 보장하기 위하여 경기위원장은 경기 내내 대회 심사위원장과 밀접한 연락을 유지해야 한다.</p>
<p>11.3.7 세계 기록 도전에 대해서는, KARA에서 임명한 심사위원 한 명만이 필요하다. 이 심사위원은 심사위원회의 의장과 같은 직무를 수행한다.</p>	<p>11.3.7 세계 기록 도전에 대해서는, KARA에서 임명한 심사위원 한 명만이 필요하다. 이 심사위원은 심사위원회의 의장과 같은 직무를 수행한다.</p>
<p>11.3.8 절대 세계 기록 또는 절대 세계 속도 기록 도전에 대해서는 세 명의 심사위원회가 임명되며 두 명은 FIA가 임명한다. 이 두 명 가운데서 심사위원회 의장이 임명된다.</p>	<p>11.3.8 절대 세계 기록 또는 절대 세계 속도 기록 도전에 대해서는 세 명의 심사위원회가 임명되며 두 명은 FIA가 임명한다. 이 두 명 가운데서 심사위원회 의장이 임명된다.</p>
<p><b>제11.4조 오피셜의 지명</b></p>	<p><b>제11.4조 오피셜의 지명</b></p>
<p>11.4.1 대회 심사위원 중 적어도 한 명은 이 경기를 주최했거나 공인을 내어 준 KARA가 지명해야 한다.</p>	<p>11.4.1 대회 심사위원 중 적어도 한 명은 이 경기를 주최했거나 공인을 내어 준 KARA가 지명해야 한다.</p>
<p>11.4.2 다른 오피셜들은 KARA의 승인을 조건으로 주최자가 지명한다.</p>	<p>11.4.2 다른 오피셜들은 KARA의 승인을 조건으로 주최자가 지명한다.</p>
<p><b>제11.5조 이익의 충돌</b></p>	<p><b>제11.5조 이익의 충돌</b></p>
<p>심사위원, 레이스 디렉터, 경기위원장, 기술 오피셜 그리고 사무국장은 경기 결과로부터 직접 또는 간접으로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거래 또는 산</p>	<p>심사위원, 레이스 디렉터, 경기위원장, 기술 오피셜 그리고 사무국장은 경기 결과로부터 직접 또는 간접으로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거래 또는 산</p>

<p>업과 관련이 없어야 한다.</p> <p><b>제11.6조 임무의 경계</b>  11.6.1 어느 경기에서도 오피셜은 정해진 임무 말고는 어떤 다른 임무도 수행해서는 안된다.  11.6.2 오피셜은 그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어떤 경기에서도 경쟁에 참여할 자격을 가져서는 안된다.</p> <p><b>제11.7조 오피셜의 보수</b>  11.7.1 FIA 또는 KARA가 내린 특별한 결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심사위원은 명예직으로 활동해야 한다. 다른 오피셜은 KARA가 작성한 요율에 따라서 그 서비스에 대한 보수를 받을 수 있다.</p> <p><b>제11.8조 심사위원의 임무</b>  11.8.1 심사위원은 어떤 식으로든 경기의 주최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으며, 주최와 연관된 어떠한 운영 임무도 수행해서는 안 된다.  11.8.2 따라서 임무 수행 과정에서 이들은 적용되는 규정을 관할하는 ASN과 FIA를 제외하고는 누구에게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  11.8.3 예외로, KARA가 직접 주최하는 경기에서만, 그 경기의 심사위원들은 주최자의 임무를 겸할 수 있다.  11.8.4 FIA 챔피언십 이벤트를 제외하고는 심사위원은 대회가 끝난 뒤에 경기 심사 보고서에 서명하고 이를 될 수 있는 대로 곧바로 KARA에 보내야 한다. 이 보고서에는 각 경기의 결과와 제기된 모든 항의의 자세한 내용,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한 제외 처분, 그리고 출장 정지 또는 자격 상실 처분이 필요할 수도 있는 결정에 대해서는 이에 대한 권고 사항을 포함한다.  11.8.5 여러 경기로 구성된 경기에서는 각 경기마다 대회 심사위원을 별개로 둘 수 있다.  11.8.6 같은 경기를 위해 임명된 여러 심사위원들이 내린 결정에서 상충되는 점이 있을 경우, 다음 순서대로 우선권을 가진다.  1) FIA 챔피언십 경기  2) FIA 컵, 트로피, 챌린지 또는 시리즈 경기</p>	<p>업과 관련이 없어야 한다.</p> <p><b>제11.6조 임무의 경계</b>  11.6.1 어느 경기에서도 오피셜은 정해진 임무 말고는 어떤 다른 임무도 수행해서는 안된다.  11.6.2 오피셜은 그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어떤 경기에서도 경쟁에 참여할 자격을 가져서는 안된다.</p> <p><b>제11.7조 오피셜의 보수</b>  11.7.1 FIA 또는 KARA가 내린 특별한 결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심사위원은 명예직으로 활동해야 한다. 다른 오피셜은 KARA가 작성한 요율에 따라서 그 서비스에 대한 보수를 받을 수 있다.</p> <p><b>제11.8조 심사위원의 임무</b>  11.8.1 심사위원은 어떤 식으로든 경기의 주최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으며, 주최와 연관된 어떠한 운영 임무도 수행해서는 안 된다.  11.8.2 따라서 임무 수행 과정에서 이들은 적용되는 규정을 관할하는 ASN과 FIA를 제외하고는 누구에게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  11.8.3 예외로, KARA가 직접 주최하는 경기에서만, 그 경기의 심사위원들은 주최자의 임무를 겸할 수 있다.  11.8.4 FIA 챔피언십 이벤트를 제외하고는 심사위원은 대회가 끝난 뒤에 경기 심사 보고서에 서명하고 이를 될 수 있는 대로 곧바로 KARA에 보내야 한다. 이 보고서에는 각 경기의 결과와 제기된 모든 항의의 자세한 내용,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한 제외 처분, 그리고 출장 정지 또는 자격 상실 처분이 필요할 수도 있는 결정에 대해서는 이에 대한 권고 사항을 포함한다.  11.8.5 여러 경기로 구성된 경기에서는 각 경기마다 대회 심사위원을 별개로 둘 수 있다.  11.8.6 같은 경기를 위해 임명된 여러 심사위원들이 내린 결정에서 상충되는 점이 있을 경우, 다음 순서대로 우선권을 가진다.  1) FIA 챔피언십 경기  2) FIA 컵, 트로피, 챌린지 또는 시리즈 경기</p>
---	---

<p>3) 국제 시리즈 경기 4) 국내 챔피언십 경기 5) 국내 컵, 트로피, 챌린지 또는 시리즈 경기</p> <p><b>제11.9조 심사위원의 권한</b> 11.9.1 심사위원은 국제스포츠규정 그리고 국내 및 특별규정과 공식 프로그램의 시행에 대한 최고 권한을 가진다.</p> <p>11.9.2 이들은 경기 동안에 제기되는 모든 주장에 대한 결정을 내리며 이 결정은 국제스포츠규정에서 정한 항소권의 대상이 된다.</p> <p>11.9.2.a 규정 위반이 벌어졌을 때 부과할 벌칙을 결정한다.</p> <p>11.9.2.b 특별규정을 개정할 수 있다.</p> <p>11.9.2.c 히트제인 경우에는 히트의 구성 또는 수를 바꿀 수 있다.</p> <p>11.9.2.d 동물이 발생한 경우에는 새로운 출발을 허가할 수 있다.</p> <p>11.9.2.e 사실 판정관이 내놓은 정정 처분을 받아들이거나 거부할 수 있다.</p> <p>11.9.2.f 벌칙 또는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p> <p>11.9.2.g 제외 처분을 선언할 수 있다.</p> <p>11.9.2.h 순위를 바꿀 수 있다.</p> <p>11.9.2.i 위협하다고 간주하거나 경기위원장이 위협하다고 보고한 어떤 차량 또는 어떤 선수이든 경기 참가를 금지시킬 수 있다.</p> <p>11.9.2.j 참가할 자격이 없거나 부당 행위 또는 부정 행위를 한 것으로 간주된, 또는 경기위원장이나 조직위원회가 그와 같이 보고한 어떤 경기 참가자 또는 선수이든 한 경기에서 또는 전체 경기 동안 제외시킬 수 있다.</p> <p>11.9.2.k 책임을 맡은 오피셜의 지시에 따르기를 거부한 어떤 경기 참가자 또는 선수이든 코스 및 그 구내에서 떠나도록 명령할 수 있다.</p>	<p>3) 국제 시리즈 경기 4) 국내 챔피언십 경기 5) 국내 컵, 트로피, 챌린지 또는 시리즈 경기</p> <p><b>제11.9조 심사위원의 권한</b> 11.9.1 심사위원은 국제스포츠규정 그리고 국내 및 특별규정과 공식 프로그램의 시행에 대한 최고 권한을 가진다.</p> <p>11.9.2 이들은 경기 동안에 제기되는 모든 주장에 대한 결정을 내리며 이 결정은 국제스포츠규정에서 정한 항소권의 대상이 된다.</p> <p>11.9.2.a 규정 위반이 벌어졌을 때 부과할 벌칙을 결정한다.</p> <p>11.9.2.b 특별규정을 개정할 수 있다.</p> <p>11.9.2.c 히트제인 경우에는 히트의 구성 또는 수를 바꿀 수 있다.</p> <p>11.9.2.d 동물이 발생한 경우에는 새로운 출발을 허가할 수 있다.</p> <p>11.9.2.e 사실 판정관이 내놓은 정정 처분을 받아들이거나 거부할 수 있다.</p> <p>11.9.2.f 벌칙 또는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p> <p>11.9.2.g 제외 처분을 선언할 수 있다.</p> <p>11.9.2.h 순위를 바꿀 수 있다.</p> <p>11.9.2.i 위협하다고 간주하거나 경기위원장이 위협하다고 보고한 어떤 차량 또는 어떤 선수이든 경기 참가를 금지시킬 수 있다.</p> <p>11.9.2.j 참가할 자격이 없거나 부당 행위 또는 부정 행위를 한 것으로 간주된, 또는 경기위원장이나 조직위원회가 그와 같이 보고한 어떤 경기 참가자 또는 선수이든 한 경기에서 또는 전체 경기 동안 제외시킬 수 있다.</p> <p>11.9.2.k 책임을 맡은 오피셜의 지시에 따르기를 거부한 어떤 경기 참가자 또는 선수이든 코스 및 그 구내에서 떠나도록 명령할 수 있다.</p>
---	---

<p>11.9.2.l 불가항력적인 상황 또는 심각한 안전에 관한 근거가 있을 경우 경기를 연기시킬 수 있다.</p> <p>11.9.2.m 경기위원장 또는 주최자가 경기 참가자의 이익 또는 공공 안전을 위해서 요청할 경우 출발선 및 결승선 위치, 또는 어떤 다른 방법으로 든 공식 프로그램을 변경할 수 있다.</p> <p>11.9.2.n 심사위원 가운데 한 명 또는 여러 명이 결석할 경우, 특히 심사위원 세 명의 참석이 필수인 경우에는 한 명, 또는 필요하다면 여러 명을 임명할 수 있다.</p> <p>11.9.2.o 레이스를 중단시키기 위한 결정을 내릴 수 있다.</p> <p>11.9.2.p 최종 순위와 결과를 발표할 수 있다.</p> <p>11.9.2.q 기술 점검을 수행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p> <p>11.9.2.r 레이스 디렉터가 직무를 맡고 있는 챔피언십, 컵, 트로피, 챌린지 그리고 시리즈에 대해서는 레이스 디렉터가 제출한 문제에 대해서 위에서 언급한 제재 조치를 내릴 수 있다.</p> <p>11.9.2.s 어떤 이유로든 경기 뒤에 결정을 내려야 할 경우, 심사위원들은 그 권한을 같은 챔피언십, 컵, 트로피, 챌린지 또는 시리즈의 후속 심사위원회에 위임하거나, 대안으로는 권한 위임을 목적으로 구성되며 원래의 심사위원회를 선택하는 책임을 맡았던 주체가 선택한 심사위원회에게 위임할 수 있다.</p> <p>국내 심사위원이 심사위원회의 일부일 경우, 원래의 심사위원을 임명했던 KARA는 후속 개최지에 심사위원 한 명을 보내거나 국내 심사위원의 권한을 후속 심사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p> <p><b>제11.10조 레이스 디렉터의 임무 (서킷 레이스에서만 적용)</b></p> <p>11.10.1 레이스 디렉터는 각 챔피언십, 컵, 챌린지 또는 시리즈의 전체 기간 동안에 걸쳐서 임명될 수 있다.</p> <p>11.10.2 경기위원장은 항상 레이스 디렉터와 협의해서 업무를 수행한다.</p>	<p>11.9.2.l 불가항력적인 상황 또는 심각한 안전에 관한 근거가 있을 경우 경기를 연기시킬 수 있다.</p> <p>11.9.2.m 경기위원장 또는 주최자가 경기 참가자의 이익 또는 공공 안전을 위해서 요청할 경우 출발선 및 결승선 위치, 또는 어떤 다른 방법으로 든 공식 프로그램을 변경할 수 있다.</p> <p>11.9.2.n 심사위원 가운데 한 명 또는 여러 명이 결석할 경우, 특히 심사위원 세 명의 참석이 필수인 경우에는 한 명, 또는 필요하다면 여러 명을 임명할 수 있다.</p> <p>11.9.2.o 레이스를 중단시키기 위한 결정을 내릴 수 있다.</p> <p>11.9.2.p 최종 순위와 결과를 발표할 수 있다.</p> <p>11.9.2.q 기술 점검을 수행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p> <p>11.9.2.r 레이스 디렉터가 직무를 맡고 있는 챔피언십, 컵, 트로피, 챌린지 그리고 시리즈에 대해서는 레이스 디렉터가 제출한 문제에 대해서 위에서 언급한 제재 조치를 내릴 수 있다.</p> <p>11.9.2.s 어떤 이유로든 경기 뒤에 결정을 내려야 할 경우, 심사위원들은 그 권한을 같은 챔피언십, 컵, 트로피, 챌린지 또는 시리즈의 후속 심사위원회에 위임하거나, 대안으로는 권한 위임을 목적으로 구성되며 원래의 심사위원회를 선택하는 책임을 맡았던 주체가 선택한 심사위원회에게 위임할 수 있다.</p> <p>국내 심사위원이 심사위원회의 일부일 경우, 원래의 심사위원을 임명했던 KARA는 후속 개최지에 심사위원 한 명을 보내거나 국내 심사위원의 권한을 후속 심사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p> <p><b>제11.10조 레이스 디렉터의 임무 (서킷 레이스에서만 적용)</b></p> <p>11.10.1 레이스 디렉터는 각 챔피언십, 컵, 챌린지 또는 시리즈의 전체 기간 동안에 걸쳐서 임명될 수 있다.</p> <p>11.10.2 경기위원장은 항상 레이스 디렉터와 협의해서 업무를 수행한다.</p>
---	---

<p>11.10.3 레이스 디렉터는 다음 사항에 대해서 우선권을 가지며 경기위원장은 레이스 디렉터의 명시적인 동의가 있어야만 지시를 내릴 수 있다.</p> <p>11.10.3.a 일정표를 준수하는 연습주행과 예선의 통제, 그리고 레이스 디렉터가 필요하다고 간주하면 국제스포츠규정과 경기규정에 따라 심사위원회에 제시하는 일정표의 변경.</p> <p>11.10.3.b 국제스포츠규정과 경기규정에 따른 자동차의 정지</p> <p>11.10.3.c 안전이 문제가 된다 판단할 때, 연습주행 또는 레이스의 중단, 이후 재시작 절차에 대한 진행 (내용은 경기규정에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p> <p>11.10.3.d 출발 절차</p> <p>11.10.3.e 세이프티 카 사용</p> <p>11.10.4 레이스 디렉터가 임명될 필요가 있으며 그 임무와 책임이 위에 나와 있는 것과 다를 경우에는 이 사항들이 관련 경기규정에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p> <p><b>제11.11조 경기위원장의 임무</b></p> <p>11.11.1 경기위원장은 경기 사무국장을 겸할 수 있으며 다양한 보조 인력을 둘 수 있다.</p> <p>11.11.2 여러 경기로 구성된 대회에서는 각 경기마다 경기위원장을 별개로 둘 수 있다.</p> <p>11.11.3 경기위원장은 적용되는 규정에 따라서 경기를 지휘한다.</p> <p>11.11.4 특히, 적절한 경우에는 레이스 디렉터와 협력하여 다음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p> <p>11.11.4.a 경기 행사의 치안을 유지하며 공공 안전에 대해서 더욱 직접적인 책임을 가진 군 및 경찰 당국과 함께 총괄적으로 질서를 유지해야 한다.</p> <p>11.11.4.b 모든 오피셜이 각자의 포스트에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p>	<p>11.10.3 레이스 디렉터는 다음 사항에 대해서 우선권을 가지며 경기위원장은 레이스 디렉터의 명시적인 동의가 있어야만 지시를 내릴 수 있다.</p> <p>11.10.3.a 일정표를 준수하는 연습주행과 예선의 통제, 그리고 레이스 디렉터가 필요하다고 간주하면 국제스포츠규정과 경기규정에 따라 심사위원회에 제시하는 일정표의 변경.</p> <p>11.10.3.b 국제스포츠규정과 경기규정에 따른 자동차의 정지</p> <p>11.10.3.c 안전이 문제가 된다 판단할 때, 연습주행 또는 레이스의 중단, 이후 재시작 절차에 대한 진행 (내용은 경기규정에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p> <p>11.10.3.d 출발 절차</p> <p>11.10.3.e 세이프티 카 사용</p> <p>11.10.4 레이스 디렉터가 임명될 필요가 있으며 그 임무와 책임이 위에 나와 있는 것과 다를 경우에는 이 사항들이 관련 경기규정에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p> <p><b>제11.11조 경기위원장의 임무</b></p> <p>11.11.1 경기위원장은 경기 사무국장을 겸할 수 있으며 다양한 보조 인력을 둘 수 있다.</p> <p>11.11.2 여러 경기로 구성된 대회에서는 각 경기마다 경기위원장을 별개로 둘 수 있다.</p> <p>11.11.3 경기위원장은 적용되는 규정에 따라서 경기를 지휘한다.</p> <p>11.11.4 특히, 적절한 경우에는 레이스 디렉터와 협력하여 다음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p> <p>11.11.4.a 경기 행사의 치안을 유지하며 공공 안전에 대해서 더욱 직접적인 책임을 가진 군 및 경찰 당국과 함께 총괄적으로 질서를 유지해야 한다.</p> <p>11.11.4.b 모든 오피셜이 각자의 포스트에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p>
--	--

<p>11.11.4.c 모든 오피셜이 임무 수행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p> <p>11.11.4.d 경기 참가팀과 이들의 자동차를 통제하며 제외, 출장 정지, 또는 자격 상실된 경기 참가팀 또는 선수가 자격이 없는 경기에 참가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p> <p>11.11.4.e 각 자동차, 그리고 필요하다면 각 경기 참가자가 공식 프로그램에 따라서 올바른 식별 번호를 붙이도록 보장해야 한다.</p> <p>11.11.4.f 각 자동차를 그 범주와 등급에서 요구하는 올바른 선수와 마샬이 운전하도록 보장해야 한다.</p> <p>11.11.4.g 자동차가 올바른 순서로 출발선까지 오도록 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출발 신호를 낸다.</p> <p>11.11.4.h 공식 프로그램 변경, 또는 경기 참가자의 규정 위반, 또는 항의에 대한 어떤 제안이든 심사위원회에 전달한다.</p> <p>11.11.4.i 항의 접수 시 이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할 심사위원회에 즉시 전달해야 한다.</p> <p>11.11.4.j 기록 오피셜, 기술 오피셜, 트랙 또는 로드 마샬로부터 보고서와 함께 결과의 결정을 위해서 필요할 수 있는 다른 공식 정보를 수집해야 한다.</p> <p>11.11.4.k 책임이 있는 경기에 관해서는 심사위원회의 결과 보고서를 위한 데이터를 준비하도록 이벤트 사무국장에게 준비시키거나 요청해야 한다.</p> <p>11.11.4.l 국제경기에서는 도덕현장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FIA에서 결정을 내린 어떤 사람이든 보호 구역에 드나들 수 없도록 보호 구역 출입을 지휘 감독해야 한다.</p> <p><b>제11.12조 경기 사무국장의 임무</b></p> <p>11.12.1 경기 사무국장은 경기의 조직, 그리고 이에 관련되어 필요한 모든 발표를 책임지며, 경기 참가자와 선수에 관련된 모든 문서의 검사를 맡는다.</p>	<p>11.11.4.c 모든 오피셜이 임무 수행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p> <p>11.11.4.d 경기 참가팀과 이들의 자동차를 통제하며 제외, 출장 정지, 또는 자격 상실된 경기 참가팀 또는 선수가 자격이 없는 경기에 참가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p> <p>11.11.4.e 각 자동차, 그리고 필요하다면 각 경기 참가자가 공식 프로그램에 따라서 올바른 식별 번호를 붙이도록 보장해야 한다.</p> <p>11.11.4.f 각 자동차를 그 범주와 등급에서 요구하는 올바른 선수와 마샬이 운전하도록 보장해야 한다.</p> <p>11.11.4.g 자동차가 올바른 순서로 출발선까지 오도록 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출발 신호를 낸다.</p> <p>11.11.4.h 공식 프로그램 변경, 또는 경기 참가자의 규정 위반, 또는 항의에 대한 어떤 제안이든 심사위원회에 전달한다.</p> <p>11.11.4.i 항의 접수 시 이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할 심사위원회에 즉시 전달해야 한다.</p> <p>11.11.4.j 기록 오피셜, 기술 오피셜, 트랙 또는 로드 마샬로부터 보고서와 함께 결과의 결정을 위해서 필요할 수 있는 다른 공식 정보를 수집해야 한다.</p> <p>11.11.4.k 책임이 있는 경기에 관해서는 심사위원회의 결과 보고서를 위한 데이터를 준비하도록 이벤트 사무국장에게 준비시키거나 요청해야 한다.</p> <p>11.11.4.l 국제경기에서는 도덕현장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FIA에서 결정을 내린 어떤 사람이든 보호 구역에 드나들 수 없도록 보호 구역 출입을 지휘 감독해야 한다.</p> <p><b>제11.12조 경기 사무국장의 임무</b></p> <p>11.12.1 경기 사무국장은 경기의 조직, 그리고 이에 관련되어 필요한 모든 발표를 책임지며, 경기 참가자와 선수에 관련된 모든 문서의 검사를 맡는다.</p>
--	--

<p>11.12.2 경기 사무국장은 다양한 오피셜들이 자신들의 임무를 숙지하고 필요한 장비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p> <p>11.12.3 필요하다면 경기 사무국장은 각 경기에 대한 결과 보고서를 준비하도록 경기위원장에게 재청할 수 있다.</p> <p><b>제11.13조 기록 오피셜의 임무</b> 기록 오피셜의 주된 임무는 다음과 같다.</p> <p>11.13.1 경기 시작 때에 경기위원장에게 보고서를 제출하며 경기위원장은 이들에게 필요한 지시를 내린다.</p> <p>11.13.2 경기위원장이 지시를 내릴 때마다 경기를 시작시킨다.</p> <p>11.13.3 KARA가 승인한 장치만을 써서 시간을 측정하며, 기록 도전을 목적으로 할 때에는 FIA가 승인하고 1000분의 1초 정밀도의 시간 측정값을 얻을 수 있는 장비여야 한다.</p> <p>11.13.4 각 경기 참가자가 코스를 완전히 주행했을 때 측정된 시간을 발표해야 한다.</p> <p>11.13.5 각자의 책임에 따라서 보고서를 준비하며 이에 서명하고 경기위원장에게 보고서와 함께 모든 필요한 서류를 전달해야 한다.</p> <p>11.13.6 요청이 있을 때에는 원본 시간 기록표를 심사위원회와 KARA에 전달해야 한다.</p> <p>11.13.7 심사위원회 그리고 경기위원회가 지시한 경우가 아니라면 이들을 제외하고는 어떤 시간 기록 또는 결과든 알려주어서는 안 된다.</p> <p><b>제11.14조 기술 오피셜의 임무</b></p> <p>11.14.1 기술 오피셜은 자동차의 모든 검사를 맡으며, 보조 인력에게 임무를 위임할 수 있다.</p> <p>11.14.2 이들은 다음 사항을 지켜야 한다.</p> <p>11.14.2.a 경기 전에는 KARA나 조직위원회의 요청이 있을 경우, 경기 도중에는 경기위원장 그리고/또는 심사위원회의 요청이 있을 경우 검사를 수행한다.</p>	<p>11.12.2 경기 사무국장은 다양한 오피셜들이 자신들의 임무를 숙지하고 필요한 장비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p> <p>11.12.3 필요하다면 경기 사무국장은 각 경기에 대한 결과 보고서를 준비하도록 경기위원장에게 재청할 수 있다.</p> <p><b>제11.13조 기록 오피셜의 임무</b> 기록 오피셜의 주된 임무는 다음과 같다.</p> <p>11.13.1 경기 시작 때에 경기위원장에게 보고서를 제출하며 경기위원장은 이들에게 필요한 지시를 내린다.</p> <p>11.13.2 경기위원장이 지시를 내릴 때마다 경기를 시작시킨다.</p> <p>11.13.3 KARA가 승인한 장치만을 써서 시간을 측정하며, 기록 도전을 목적으로 할 때에는 FIA가 승인하고 1000분의 1초 정밀도의 시간 측정값을 얻을 수 있는 장비여야 한다.</p> <p>11.13.4 각 경기 차량이 코스를 완전히 주행했을 때 측정된 시간을 발표해야 한다.</p> <p>11.13.5 각자의 책임에 따라서 보고서를 준비하며 이에 서명하고 경기위원장에게 보고서와 함께 모든 필요한 서류를 전달해야 한다.</p> <p>11.13.6 요청이 있을 때에는 원본 시간 기록표를 심사위원회와 KARA에 전달해야 한다.</p> <p>11.13.7 심사위원회 그리고 경기위원회가 지시한 경우가 아니라면 이들을 제외하고는 어떤 시간 기록 또는 결과든 알려주어서는 안 된다.</p> <p><b>제11.14조 기술 오피셜의 임무</b></p> <p>11.14.1 기술 오피셜은 자동차의 모든 검사를 맡으며, 보조 인력에게 임무를 위임할 수 있다.</p> <p>11.14.2 이들은 다음 사항을 지켜야 한다.</p> <p>11.14.2.a 경기 전에는 KARA나 조직위원회의 요청이 있을 경우, 경기 도중에는 경기위원장 그리고/또는 심사위원회의 요청이 있을 경우 검사를 수행한다.</p>
--	---



<p>11.14.2.b KARA에서 지정 또는 승인할 수 있는 검사 장비만을 쓴다.</p>	<p>11.14.2.b KARA에서 지정 또는 승인할 수 있는 검사 장비만을 쓴다.</p>
<p>11.14.2.c 어떤 공식 정보든 KARA, 조직위원회, 심사위원회 그리고 경기위원회를 제외한 어떤 사람에게도 알려주어서는 안 된다.</p>	<p>11.14.2.c 어떤 공식 정보든 KARA, 조직위원회, 심사위원회 그리고 경기위원회를 제외한 어떤 사람에게도 알려주어서는 안 된다.</p>
<p>11.14.2.d 자신의 책임으로 보고서를 준비하며 이에 서명하고, 위에 언급한 지휘권자 중 이를 작성하도록 지시한 사람에게 전달한다.</p>	<p>11.14.2.d 자신의 책임으로 보고서를 준비하며 이에 서명하고, 위에 언급한 지휘권자 중 이를 작성하도록 지시한 사람에게 전달한다.</p>
<p><b>제11.15조 트랙 또는 로드 마샬과 플래그 마샬의 임무</b></p>	<p><b>제11.15조 트랙 또는 로드 마샬과 플래그 마샬의 임무</b></p>
<p>11.15.1 트랙 또는 로드 마샬은 코스를 따라서 설치된, 조직위원회가 배치한 자신의 포스트에 상주해야 한다.</p>	<p>11.15.1 트랙 또는 로드 마샬은 코스를 따라서 설치된, 조직위원회가 배치한 자신의 포스트에 상주해야 한다.</p>
<p>11.15.2 경기가 시작하는 즉시 각 트랙 또는 로드 마샬은 경기위원장의 통제 아래에 놓이며 자신이 책임을 맡은 부분 안에서 발생한 모든 사건 또는 사고를 어떤 처리 수단으로든(전화, 신호, 배달 그밖에) 즉시 경기위원장에게 보고해야 한다.</p>	<p>11.15.2 경기가 시작하는 즉시 각 트랙 또는 로드 마샬은 경기위원장의 통제 아래에 놓이며 자신이 책임을 맡은 부분 안에서 발생한 모든 사건 또는 사고를 어떤 처리 수단으로든(전화, 신호, 배달 그밖에) 즉시 경기위원장에게 보고해야 한다.</p>
<p>11.15.3 플래그 마샬은 특별히 깃발 신호를 맡는다(국제스포츠규정 부칙 H 참조). 이들은 트랙 또는 로드 마샬을 겸할 수 있다.</p>	<p>11.15.3 플래그 마샬은 특별히 깃발 신호를 맡는다(국제스포츠규정 부칙 H 참조). 이들은 트랙 또는 로드 마샬을 겸할 수 있다.</p>
<p>11.15.4 트랙 또는 로드 마샬은 자신이 기록한 사건 또는 사고에 관한 서면 보고서를 경기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p>	<p>11.15.4 트랙 또는 로드 마샬은 자신이 기록한 사건 또는 사고에 관한 서면 보고서를 경기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p>
<p><b>제11.16조 사실 판정관의 임무</b></p>	<p><b>제11.16조 사실 판정관의 임무</b></p>
<p><b>11.16.1 스타터 오피셜</b></p>	<p><b>11.16.1 스타터 오피셜</b></p>
<p>11.16.1.a 레이스의 조직위원회에서 레이스 출발 감시를 위해서 한 명 또는 여러 명의 판정관을 임명할 수 있다.</p>	<p>11.16.1.a 레이스의 조직위원회에서 레이스 출발 감시를 위해서 한 명 또는 여러 명의 판정관을 임명할 수 있다.</p>
<p>11.16.1.b 스타터 오피셜은 어떤 부정 출발이든 일어난 것으로 보이면 경기위원장에게 즉시 알린다.</p>	<p>11.16.1.b 스타터 오피셜은 어떤 부정 출발이든 일어난 것으로 보이면 경기위원장에게 즉시 알린다.</p>
<p><b>11.16.2 피니쉬 오피셜</b></p>	<p><b>11.16.2 피니쉬 오피셜</b></p>
<p>선수가 결승선을 통과한 순서에 관한 결정을 내려야 하는 경기에서는 이러한 결정을 내릴 피니쉬 오피셜 이 임명되어야 한다.</p>	<p><b>차량</b>이 결승선을 통과한 순서에 관한 결정을 내려야 하는 경기에서는 이러한 결정을 내릴 피니쉬 오피셜이 임명되어야 한다.</p>

### 11.16.3 기타 판정관

특정한 선에 닿거나 이를 넘었는지 여부에 따른, 또는 경기의 특별규정 또는 무엇이든 적용되는 규정에서 정한 그밖에 사실에 따른 결정이 내려져야 하는 경기에서는 이러한 결정 가운데 하나 또는 여러 개에 대한 책임을 맡은 한 명 또는 여러명의 사실 판정관을 주최자가 제안하고 심사위원회가 승인해야 한다.

### 11.16.4 보조 판정관

위 판정관 각각은 이들을 지원하거나, 절대적인 필요성이 있을 때에는 이들을 대체하기 위해 임명된 보조 판정관을 둘 수 있으나, 이들 사이에 의견 차이가 있을 때에는 사실 판정관 자신의 결정이 최종 결정이 된다.

### 11.16.5 영상 또는 전자 시스템

11.16.5.a 심사위원회는 사실 판정관이 결정을 내리는 것을 돕기 위해서 영상 또는 전자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다.

11.16.5.b 심사위원회는 사실 판정관의 결정을 번복할 수 있다.

### 11.16.6 오심

판정관이 자신이 오심을 했다고 생각한다면 이를 바로잡을 수 있으나, 심사위원이 이를 받아들이는 경우에 한정한다.

### 11.16.7 판정되어야 할 사실

경기에 적용되는 규정에서 사실 판정관이 판정해야 할 사실을 지정해야 한다.

11.16.8 사실 판정관은 그 이름이 공식 게시판에 게시되어야 한다.

## 제12조 벌칙

### 제12.1조 규정 위반

12.1.1 앞에서 규정한 어떤 반칙이든 그에 더해서 다음의 반칙 가운데 무엇이든 이 규칙에 대한 위반으로 간주한다.

12.1.1.a 경기에 관한 오피셜 직무를 수행하는 모든 사람, 또는 경기에 어떤 식으로든 고용된 모

### 11.16.3 기타 판정관

특정한 선에 닿거나 이를 넘었는지 여부에 따른, 또는 경기의 특별규정 또는 무엇이든 적용되는 규정에서 정한 그밖에 사실에 따른 결정이 내려져야 하는 경기에서는 이러한 결정 가운데 하나 또는 여러 개에 대한 책임을 맡은 한 명 또는 여러명의 사실 판정관을 주최자가 제안하고 심사위원회가 승인해야 한다.

### 11.16.4 보조 판정관

위 판정관 각각은 이들을 지원하거나, 절대적인 필요성이 있을 때에는 이들을 대체하기 위해 임명된 보조 판정관을 둘 수 있으나, 이들 사이에 의견 차이가 있을 때에는 사실 판정관 자신의 결정이 최종 결정이 된다.

### 11.16.5 영상 또는 전자 시스템

11.16.5.a 심사위원회는 사실 판정관이 결정을 내리는 것을 돕기 위해서 영상 또는 전자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다.

11.16.5.b 심사위원회는 사실 판정관의 결정을 번복할 수 있다.

### 11.16.6 오심

판정관이 자신이 오심을 했다고 생각한다면 이를 바로잡을 수 있으나, 심사위원이 이를 받아들이는 경우에 한정한다.

### 11.16.7 판정되어야 할 사실

경기에 적용되는 규정에서 사실 판정관이 판정해야 할 사실을 지정해야 한다.

11.16.8 사실 판정관은 그 이름이 공식 게시판에 게시되어야 한다.

## 제12조 벌칙

### 제12.1조 규정 위반

12.1.1 앞에서 규정한 어떤 반칙이든 그에 더해서 다음의 반칙 가운데 무엇이든 이 규칙에 대한 위반으로 간주한다.

12.1.1.a 경기에 관한 오피셜 직무를 수행하는 모든 사람, 또는 경기에 어떤 식으로든 고용된 모

<p>든 사람에게 직접 또는 간접으로 뇌물을 주거나 뇌물을 주려는 모든 시도, 또는 이들 오피셜이나 피고용인이 뇌물을 받거나 요구하는 행위.</p> <p>12.1.1.b 어떤 경기에 참가 자격이 없는 자동차가 참가 또는 참가 신청을 하려는 모든 행위.</p> <p>12.1.1.c 어느 경기 참가자든 그의 이익을 침해하거나 모터스포츠 전체의 이익을 침해하는 모든 부정 행위 또는 행동.</p> <p>12.1.1.d FIA, KARA의 목적에 반하거나 어긋나는 모든 시도.</p> <p>12.1.1.e FIA, KARA 결정에 대한 모든 거부 또는 불이행.</p> <p>12.1.1.f 도덕적 침해, 또는 FIA, KARA 그 기구, 그 회원, 또는 경영진에게 해를 입히는 원인이 되는 모든 말, 행위 또는 글</p> <p>12.1.1.g 조사에 협조하지 않는 모든 행위.</p> <p>12.1.1.h 무엇이든 안전하지 않은 행동 또는 정당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결과로 벌어진 모든 안전하지 않은 상황.</p> <p>12.1.1.i 안전 그리고 경기의 질서 있는 진행을 위한 관련 오피셜의 지시를 따르지 않는 행위.</p> <p>12.1.1.j FIA 서킷 주행 규칙(국제스포츠규정 부칙 L)을 따르지 않는 행위.</p> <p>12.1.2 다르게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반칙 또는 위반은 고의든 과실이든 처벌을 받을 수 있다.</p> <p>12.1.3 반칙 또는 위반을 저지르려는 시도 역시 처벌을 받을 수 있다.</p> <p>12.1.4 반칙 또는 위반에 가담한 개인 또는 단체는 주동자든 공범이든 역시 처벌을 받을 수 있다.</p> <p>12.1.5 위반에 대한 공소시효는 5년이다 12.1.5.a 시효는 다음을 기준으로 계산된다.</p> <p>12.1.5.a.i 반칙 또는 위반을 저지른 날로부터.</p>	<p>든 사람에게 직접 또는 간접으로 뇌물을 주거나 뇌물을 주려는 모든 시도, 또는 이들 오피셜이나 피고용인이 뇌물을 받거나 요구하는 행위.</p> <p>12.1.1.b 어떤 경기에 참가 자격이 없는 자동차가 참가 또는 참가 신청을 하려는 모든 행위.</p> <p>12.1.1.c 어느 경기 참가자든 그의 이익을 침해하거나 모터스포츠 전체의 이익을 침해하는 모든 부정 행위 또는 행동.</p> <p>12.1.1.d FIA, KARA의 목적에 반하거나 어긋나는 모든 시도.</p> <p>12.1.1.e FIA, KARA 결정에 대한 모든 거부 또는 불이행.</p> <p>12.1.1.f 도덕적 침해, 또는 FIA, KARA 그 기구, 그 회원, 또는 경영진에게 해를 입히는 원인이 되는 모든 말, 행위 또는 글</p> <p>12.1.1.g 조사에 협조하지 않는 모든 행위.</p> <p>12.1.1.h 무엇이든 안전하지 않은 행동 또는 정당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결과로 벌어진 모든 안전하지 않은 상황.</p> <p>12.1.1.i 안전 그리고 경기의 질서 있는 진행을 위한 관련 오피셜의 지시를 따르지 않는 행위.</p> <p>12.1.1.j FIA 서킷 주행 규칙(국제스포츠규정 부칙 L)을 따르지 않는 행위.</p> <p>12.1.2 다르게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반칙 또는 위반은 고의든 과실이든 처벌을 받을 수 있다.</p> <p>12.1.3 반칙 또는 위반을 저지르려는 시도 역시 처벌을 받을 수 있다.</p> <p>12.1.4 반칙 또는 위반에 가담한 개인 또는 단체는 주동자든 공범이든 역시 처벌을 받을 수 있다.</p> <p>12.1.5 위반에 대한 공소시효는 5년이다 12.1.5.a 시효는 다음을 기준으로 계산된다.</p> <p>12.1.5.a.i 반칙 또는 위반을 저지른 날로부터.</p>
--	--

<p>12.1.5.a.ii 연속된 또는 반복된 반칙 또는 위반을 한 경우에는 마지막 행동을 한 날로부터</p> <p>12.1.5.a.iii 반칙 또는 위반이 지속적인 경우에는 이를 중단한 날로부터.</p> <p>12.1.5.b 그러나 모든 경우에 대하여 반칙 또는 위반을 심사위원회 또는 FIA의 검찰기구가 모르게 숨겨왔다면 시효는 반칙 또는 위반 사실을 심사위원회 또는 FIA의 검찰기구가 알게 된 날로부터 시작된다.</p> <p>12.1.5.c FIA의 재판 및 징계 규칙 제2장에 나와 있는 기소 또는 조사활동이 있으면 시효는 중지된다.</p> <p><b>제12.2조 벌칙</b></p> <p>12.2.1 국제스포츠포츠규정, 국내규정 또는 그 부칙, 또는 특별규정에 대해서 주최자, 오피셜, 경기 참가자, 선수, 출전자, 다른 라이선스 보유자, 또는 다른 사람 또는 조직이 무엇이든 위반을 한 경우에는 벌칙 또는 벌금 처분을 받는다.</p> <p>12.2.2 벌칙 또는 벌금은 다음 조항에서 정한 대로 대회 심사위원회나 KARA가 부과한다.</p> <p>12.2.3 경기에 참여하는 경기 참가자가 일으킨 안전, 도덕 기준, 또는 부정 참가에 관련된 문제에 대한 심사위원회의 결정은 항의 여부에 관계 없이 즉시 구속력을 가지며, 같은 경기 기간 중에 추가 위반을 저지르면 같은 참가자를 제외시키는 사유가 된다.</p> <p>12.2.3.a 심사위원회의 결정은 위에 언급한 문제에 대해 정확한 근거를 언급해야 한다.</p> <p>12.2.3.b 그러나 보호 조치의 일환으로서, 위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히 이후 경기의 참가에 영향을 주는 어떠한 핸디캡 규칙이든 그 적용을 결정할 때에는 경기 참가자가 항의를 하면 벌칙은 유예된다.</p> <p>12.2.3.c 항소에 따른 유예의 효과는 그 경기 참가자와 선수가 시상식 또는 포디엄 행사에 참석할 수 있도록 허용하지는 않으며 경기의 공식 순위에서도 벌칙을 적용한 결과로 얻게 되는 순위가 아닌 다른 순위로 표시될 수 있도록 허용하지도 않는다.</p>	<p>12.1.5.a.ii 연속된 또는 반복된 반칙 또는 위반을 한 경우에는 마지막 행동을 한 날로부터</p> <p>12.1.5.a.iii 반칙 또는 위반이 지속적인 경우에는 이를 중단한 날로부터.</p> <p>12.1.5.b 그러나 모든 경우에 대하여 반칙 또는 위반을 심사위원회 또는 FIA의 검찰기구가 모르게 숨겨왔다면 시효는 반칙 또는 위반 사실을 심사위원회 또는 FIA의 검찰기구가 알게 된 날로부터 시작된다.</p> <p>12.1.5.c FIA의 재판 및 징계 규칙 제2장에 나와 있는 기소 또는 조사활동이 있으면 시효는 중지된다.</p> <p><b>제12.2조 벌칙</b></p> <p>12.2.1 국제스포츠포츠규정, 국내규정 또는 그 부칙, 또는 특별규정에 대해서 주최자, 오피셜, 경기 참가자, 선수, 출전자, 다른 라이선스 보유자, 또는 다른 사람 또는 조직이 무엇이든 위반을 한 경우에는 벌칙 또는 벌금 처분을 받는다.</p> <p>12.2.2 벌칙 또는 벌금은 다음 조항에서 정한 대로 대회 심사위원회나 KARA가 부과한다.</p> <p>12.2.3 경기에 참여하는 경기 참가자가 일으킨 안전, 도덕 기준, 또는 부정 참가에 관련된 문제에 대한 심사위원회의 결정은 항의 여부에 관계 없이 즉시 구속력을 가지며, 같은 경기 기간 중에 추가 위반을 저지르면 같은 참가자를 제외시키는 사유가 된다.</p> <p>12.2.3.a 심사위원회의 결정은 위에 언급한 문제에 대해 정확한 근거를 언급해야 한다.</p> <p>12.2.3.b 그러나 보호 조치의 일환으로서, 위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히 이후 경기의 참가에 영향을 주는 어떠한 핸디캡 규칙이든 그 적용을 결정할 때에는 경기 참가자가 항의를 하면 벌칙은 유예된다.</p> <p>12.2.3.c 항소에 따른 유예의 효과는 그 경기 참가자와 선수가 시상식 또는 포디엄 행사에 참석할 수 있도록 허용하지는 않으며 경기의 공식 순위에서도 벌칙을 적용한 결과로 얻게 되는 순위가 아닌 다른 순위로 표시될 수 있도록 허용하지도 않는다.</p>
--	--

항소재판소에 제출된 항소에서 승소한 경우, 시간 경과로 불가능한 경우가 아니라면 경기 참가자와 선수의 권한은 회복된다.

12.2.4 FIA 챔피언십 규정에서 명확하게 명시한 특정한 벌칙과 함께 부과된 피트 레인 주행 또는 피트 레인 정차 벌칙은 항의를 허용하지 않는다.

12.2.5 도핑 방지 관련 문제에 대해서는 국제스포츠규정 부칙 A에 나와 있는 반도핑 규정에서 언급한 제재는 FIA 반도핑 징계위원회의 권한에 속한다.

12.2.6 이 조항, 그리고 이후 조항들과 관계 없이, FIA의 검찰기구는 FIA 옵서버의 제안과 보고, FIA가 선임한 이벤트의 국제 심사위원 두 명의 공동 보고서, 또는 FIA재판 및 징계 규칙에 따른 자체 발의로, 앞서 언급한 당사자들 가운데 어느 하나에 대해서든 이벤트의 심사위원회가 발표한 벌칙을 대신해서 하나 또는 그보다 많은 벌칙을 부과하기 위해 문제를 국제재판소에 회부할 수 있다.

12.2.6.a 국제재판소 회부에 따르는 과정은 FIA 재판 및 징계 규칙에 설명되어 있다.

12.2.6.b 국제재판소가 제재 조치를 결정하면 이에 대한 항소를 국제 항소재판소에 제기할 수 있으며 관련된 ASN은 관련 당사자를 대신한 항소 제기를 거부할 수 없다.

### 제12.3조 벌칙의 범위

12.3.1 부과될 수 있는 벌칙은 다음과 같다.

12.3.1.a 경고

12.3.1.b 벌금

12.3.1.c 공익 업무 수행 의무

12.3.1.d 선수의 예선 랩 기록 삭제 (하나 또는 여러 개)

12.3.1.e 그리드 순위 강등

12.3.1.f 선수에게 레이스를 피트 레인에서 출발하도록 강제

항소재판소에 제출된 항소에서 승소한 경우, 시간 경과로 불가능한 경우가 아니라면 경기 참가자와 선수의 권한은 회복된다.

12.2.4 FIA 챔피언십 규정에서 명확하게 명시한 특정한 벌칙과 함께 부과된 피트 레인 주행 또는 피트 레인 정차 벌칙은 항의를 허용하지 않는다.

12.2.5 도핑 방지 관련 문제에 대해서는 국제스포츠규정 부칙 A에 나와 있는 반도핑 규정에서 언급한 제재는 FIA 반도핑 징계위원회의 권한에 속한다.

12.2.6 이 조항, 그리고 이후 조항들과 관계 없이, FIA의 검찰기구는 FIA 옵서버의 제안과 보고, FIA가 선임한 이벤트의 국제 심사위원 두 명의 공동 보고서, 또는 FIA재판 및 징계 규칙에 따른 자체 발의로, 앞서 언급한 당사자들 가운데 어느 하나에 대해서든 이벤트의 심사위원회가 발표한 벌칙을 대신해서 하나 또는 그보다 많은 벌칙을 부과하기 위해 문제를 국제재판소에 회부할 수 있다.

12.2.6.a 국제재판소 회부에 따르는 과정은 FIA 재판 및 징계 규칙에 설명되어 있다.

12.2.6.b 국제재판소가 제재 조치를 결정하면 이에 대한 항소를 국제 항소재판소에 제기할 수 있으며 관련된 ASN은 관련 당사자를 대신한 항소 제기를 거부할 수 없다.

### 제12.3조 벌칙의 범위

12.3.1 부과될 수 있는 벌칙은 다음과 같다.

12.3.1.a 경고

12.3.1.b 벌금

12.3.1.c 공익 업무 수행 의무

12.3.1.d 선수의 예선 랩 기록 삭제 (하나 또는 여러 개)

12.3.1.e 그리드 순위 강등

12.3.1.f 선수에게 레이스를 피트 레인에서 출발하도록 강제

12.3.1.g 시간 벌칙 또는 벌칙 랩	12.3.1.g 시간 벌칙 또는 벌칙 랩
12.3.1.h 경기 참가자의 순위 강등	12.3.1.h 경기 참가자의 순위 강등
12.3.1.i 드라이브스루 페널티	12.3.1.i 드라이브스루 페널티
12.3.1.j 스톱 앤 고	12.3.1.j 스톱 앤 고
12.3.1.k 제외	12.3.1.k 제외
12.3.1.l 출장 정지	12.3.1.l 출장 정지
12.3.1.m 자격 상실	12.3.1.m 자격 상실
12.3.2 시간 벌칙은 분 그리고/또는 초로 표현되는 벌칙을 뜻한다.	12.3.2 시간 벌칙은 분 그리고/또는 초로 표현되는 벌칙을 뜻한다.
12.3.3 벌칙은 같은 챔피언십, 컵, 트로피, 챌린지 또는 시즌의 후속 경기에 적용될 수 있다.	12.3.3 벌칙은 같은 챔피언십, 컵, 트로피, 챌린지 또는 시즌의 후속 경기에 적용될 수 있다.
12.3.4 조사를 진행하고 나서 위 벌칙 가운데 한 가지만을 적용할 수 있으며, 마지막 세가지 중에 하나를 적용할 경우에는 변론 기회를 주기 위해서 관련 당사자를 소환해야 한다.	12.3.4 조사를 진행하고 나서 위 벌칙 가운데 한 가지만을 적용할 수 있으며, 마지막 세가지 중에 하나를 적용할 경우에는 변론 기회를 주기 위해서 관련 당사자를 소환해야 한다.
12.3.5 모든 FIA 챔피언십, 컵, 챌린지, 트로피, 시리즈에서 심사위원회는 경기 참가자 또는 선수에게 다음과 같은 벌칙을 부과할 수 있다 : 하나 또는 그보다 많은 경기에 대한 출장 정지, 벌금, 포인트 몰수.	12.3.5 모든 FIA 챔피언십, 컵, 챌린지, 트로피, 시리즈에서 심사위원회는 경기 참가자 또는 선수에게 다음과 같은 벌칙을 부과할 수 있다 : 하나 또는 그보다 많은 경기에 대한 출장 정지, 벌금, 포인트 몰수.
12.3.5.a 예외적인 상황을 제외하고는 선수와 경기 참가팀의 포인트를 별개로 몰수할 수는 없다.	12.3.5.a 예외적인 상황을 제외하고는 선수와 경기 참가팀의 포인트를 별개로 몰수할 수는 없다.
12.3.5.b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들 벌칙은 집행이 누적 또는 유예될 수 있다.	12.3.5.b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들 벌칙은 집행이 누적 또는 유예될 수 있다.
12.3.6 국제재판소는 또한 FIA 또는 FIA를 대표하는 주체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조직하는, 또는 FIA의 규정과 결정의 대상이 되는 경기, 이벤트, 또는 챔피언십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참가하거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을 직접 금지시킬 수 있다.	12.3.6 국제재판소는 또한 FIA 또는 FIA를 대표하는 주체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조직하는, 또는 FIA의 규정과 결정의 대상이 되는 경기, 이벤트, 또는 챔피언십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참가하거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을 직접 금지시킬 수 있다.
<b>제12.4조 벌금</b>	<b>제12.4조 벌금</b>
12.4.1 어떤 규정이든 또는 경기 오퍼셜의 어떤 지시든 이를 거부하는 경기 참가자는 물론 선수,	12.4.1 어떤 규정이든 또는 경기 오퍼셜의 어떤 지시든 이를 거부하는 경기 참가자는 물론 선수,

<p>보조 인력 또는 탑승자에게도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p> <p>12.4.2 벌금 부과는 KARA 또는 경기 심사위원회에서 명령할 수 있다.</p> <p>12.4.3 심사위원회에서 이러한 벌금을 부과했다면 해마다 FIA에서 정하는 특정한 액수를 넘어서는 안 된다.</p> <p><b>제12.5조 대회 심사위원회가 부과할 수 있는 최대 벌금</b> 심사위원회 또는 FIA 공식 공고를 통해 발표되는 추가 통지가 있을 때까지, 부과될 수 있는 최대 벌금은 250,000€(이십오만 유로)다.</p> <p><b>제12.6조 벌금 납부에 대한 책임</b> 경기 참가팀은 그의 소속 선수, 스태프, 탑승자, 그밖에 다른 사람들에게 부과된 벌금을 납부할 책임을 진다.</p> <p><b>제12.7조 벌금 납부 기한</b> 12.7.1 벌금은 통보를 받은 지 48시간 안에 전자결제 수단을 포함한 어떤 지불 방식으로든 납부해야 한다.</p> <p>12.7.2 벌금 납부를 지연하면 벌금을 내지 않은 기간 동안 출장 정지 처분이 따른다.</p> <p>12.7.3 벌금으로 얻은 수익은 KARA를 통해 챔피언십 경기의 프로모션과 조직 운영에 쓰여야 한다. 국내 벌금에도 같은 내용이 적용된다.</p> <p>12.7.4 FIA 챔피언십, 컵, 챌린지, 트로피 그리고 시리즈 경기 도중에 부과된 벌금은 FIA에 내야 한다. 국내 챔피언십, 컵, 챌린지, 트로피 그리고 시리즈 경기 도중에 부과된 벌금은 모두 KARA에 내야 한다.</p> <p><b>제12.8조 제외</b> 12.8.1 대회 심사위원회는 참가 제외 처분을 내릴 수 있다.</p> <p>12.8.2 경기 전체에 대한 제외 처분을 받으면 참가비는 몰수되어 주최자에게 귀속된다.</p> <p><b>제12.9조 출장 정지</b></p>	<p><b>관련자, 탑승자 또는 주최자(12.2.1항에 언급된)</b>에게도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p> <p>12.4.2 벌금 부과는 KARA 또는 경기 심사위원회에서 명령할 수 있다.</p> <p>12.4.3 심사위원회에서 이러한 벌금을 부과했다면 해마다 FIA에서 정하는 특정한 액수를 넘어서는 안 된다.</p> <p><b>제12.5조 대회 심사위원회가 부과할 수 있는 최대 벌금</b> 심사위원회 또는 FIA 공식 공고를 통해 발표되는 추가 통지가 있을 때까지, 부과될 수 있는 최대 벌금은 250,000€(이십오만 유로)다.</p> <p><b>제12.6조 벌금 납부에 대한 책임</b> 경기 참가팀은 그의 소속 선수, 스태프, 탑승자, 그밖에 다른 사람들에게 부과된 벌금을 납부할 책임을 진다.</p> <p><b>제12.7조 벌금 납부 기한</b> 12.7.1 벌금은 통보를 받은 지 48시간 안에 전자결제 수단을 포함한 어떤 지불 방식으로든 납부해야 한다.</p> <p>12.7.2 벌금 납부를 지연하면 벌금을 내지 않은 기간 동안 출장 정지 처분이 따른다.</p> <p>12.7.3 벌금으로 얻은 수익은 KARA를 통해 챔피언십 경기의 프로모션과 조직 운영에 쓰여야 한다. 국내 벌금에도 같은 내용이 적용된다.</p> <p>12.7.4 FIA 챔피언십, 컵, 챌린지, 트로피 그리고 시리즈 경기 도중에 부과된 벌금은 FIA에 내야 한다. 국내 챔피언십, 컵, 챌린지, 트로피 그리고 시리즈 경기 도중에 부과된 벌금은 모두 KARA에 내야 한다.</p> <p><b>제12.8조 제외</b> 12.8.1 대회 심사위원회는 참가 제외 처분을 내릴 수 있다.</p> <p>12.8.2 경기 전체에 대한 제외 처분을 받으면 참가비는 몰수되어 주최자에게 귀속된다.</p> <p><b>제12.9조 출장 정지</b></p>
---	---

12.9.1 국제스포츠규정과 FIA 재판 및 징계 규칙에 따른 처분에 대해서 KARA는 출장 정지 처분도 내릴 수 있으며 이는 심각한 위반에 한정한다.

12.9.2 출장 정지 처분을 받으면 효력이 있는 기간 동안, 이 처분이 국내인지 국제인지에 따라서 KARA의 관할 영토 또는 FIA의 관할권이 인정되는 모든 나라의 영토 안에서 개최되는 어떤 경기에서든, 어떤 지위로도 참가할 권리를 잃게 된다.

12.9.3 출장 정지 처분은 또한 그 정지 기간 동안 열리는 어떤 경기에 대해서든 이전에 얻은 참가 자격을 무효로 만들며 이러한 참가 신청을 위해서 지불한 비용은 몰수된다.

#### 제12.10조 잠정 정지

12.10.1 FIA가 후원하여 주최하는 경기에서 참가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을 경우, 공공 질서 또는 모터스포츠의 이익을 이유로, 국제 재판소는 FIA 회장의 요청에 따라서 FIA가 조직한 레이스, 경기, 또는 다른 이벤트의 틀 안에서 특히 FIA가 발급한 공인 라이선스 또는 승인을 잠정 정지할 수 있다. 이러한 조치는 3개월을 넘길 수 없으며 한 번 갱신할 수 있다.

12.10.2 모든 잠정 정지 처분은 FIA 재판 및 징계 규칙에 따라서 내려져야 한다.

12.10.3 공인, 라이선스, 승인을 잠정적으로 정지당한 사람은 이러한 정지 조치를 회피할 수 있는 모든 행동을 삼가해야 한다.

#### 제12.11조 라이선스의 취소

##### 12.11.1 국내 출장 정지

12.11.1.a 국내에서 출장 정지 처분을 받은 경기 참가팀 또는 선수는 KARA에 라이선스를 반납해야 하며, KARA는 다음과 같은 문구가 있는 압인을 찍는 방법으로 명확하게 표시해야 한다. “... (국가명)에서는 유효하지 않음.”

12.11.1.b 국내 출장 정지 기간이 만료되면 압인이 찍힌 라이선스는 새 라이선스로 교환 된다.

##### 12.11.2 국제 출장 정지

국제적으로 출장 정지 처분을 당한 경기 참가자 또는 선수는 KARA에 라이선스를 반납해야 하며 정지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는 돌려주지 않는다.

12.9.1 국제스포츠규정과 FIA 재판 및 징계 규칙에 따른 처분에 대해서 KARA는 출장 정지 처분도 내릴 수 있으며 이는 심각한 위반에 한정한다.

12.9.2 출장 정지 처분을 받으면 효력이 있는 기간 동안, 이 처분이 국내인지 국제인지에 따라서 KARA의 관할 영토 또는 FIA의 관할권이 인정되는 모든 나라의 영토 안에서 개최되는 어떤 경기에서든, 어떤 지위로도 참가할 권리를 잃게 된다.

12.9.3 출장 정지 처분은 또한 그 정지 기간 동안 열리는 어떤 경기에 대해서든 이전에 얻은 참가 자격을 무효로 만들며 이러한 참가 신청을 위해서 지불한 비용은 몰수된다.

#### 제12.10조 잠정 정지

12.10.1 FIA가 후원하여 주최하는 경기에서 참가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을 경우, 공공 질서 또는 모터스포츠의 이익을 이유로, 국제 재판소는 FIA 회장의 요청에 따라서 FIA가 조직한 레이스, 경기, 또는 다른 이벤트의 틀 안에서 특히 FIA가 발급한 공인 라이선스 또는 승인을 잠정 정지할 수 있다. 이러한 조치는 3개월을 넘길 수 없으며 한 번 갱신할 수 있다.

12.10.2 모든 잠정 정지 처분은 FIA 재판 및 징계 규칙에 따라서 내려져야 한다.

12.10.3 공인, 라이선스, 승인을 잠정적으로 정지당한 사람은 이러한 정지 조치를 회피할 수 있는 모든 행동을 삼가해야 한다.

#### 제12.11조 라이선스의 취소

##### 12.11.1 국내 출장 정지

12.11.1.a 국내에서 출장 정지 처분을 받은 경기 참가팀 또는 선수는 KARA에 라이선스를 반납해야 하며, KARA는 다음과 같은 문구가 있는 압인을 찍는 방법으로 명확하게 표시해야 한다. “... (국가명)에서는 유효하지 않음.”

12.11.1.b 국내 출장 정지 기간이 만료되면 압인이 찍힌 라이선스는 새 라이선스로 교환 된다.

##### 12.11.2 국제 출장 정지

국제적으로 출장 정지 처분을 당한 경기 참가자 또는 선수는 KARA에 라이선스를 반납해야 하며 정지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는 돌려주지 않는다.



12.11.3 위 두 가지 경우에 대해서 KARA에 대한 라이선스 반납이 지체되는 기간 만큼 정지 기간에 추가된다.

#### 제12.12조 출장 정지의 효력

12.12.1 KARA가 내린 자격 정지 처분은 그 KARA의 영토 안에서만 적용된다.

12.12.2 그러나 KARA에서 자격 정지 처분을 국제적으로 인정해 주기를 원할 경우, 지체없이 그 뜻을 FIA 사무국에 통보해야 하며 FIA 사무국은 모든 KARA에 이 사실을 통보한다. 자격 정지 처분은 각 ASN이 곧바로 인지해야 하며, 그 결과에 따른 규제가 효력을 발휘한다.

12.12.3 KARA에게 인정을 받은 이러한 자격 정지는 [www.fia.com](http://www.fia.com) 웹사이트 그리고/또는 공식 공고에 게시된다.

#### 제12.13조 자격 상실

12.13.1 FIA 재판 및 징계 규칙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격 상실 처분은 KARA에서 내릴 수 있으며, 예외적으로 심각한 위반에 한정한다.

12.13.2 자격 상실은 언제나 국제적으로 적용된다. 이는 모든 ASN에게 통보되며 국제 자격 정지 조건에 따라서 등록된다.

#### 제12.14조 국제 스포츠 기구에 대한 벌칙 통보

12.14.1 국제적으로 적용되는 출장 정지와 자격 상실은 FIA가 부과한 벌칙을 적용하도록 호혜주의를 기반으로 합의한, FIA가 지정한 국제 스포츠 기구들에게 통보된다.

12.14.2 이들 기구로부터 FIA에 통보된 모든 출장 정지와 자격 상실 처분은 FIA에서 그와 같은 범위로 시행한다.

#### 제12.15조 출장 정지 또는 자격 상실의 이유 언급

KARA는 출장 정지 또는 자격 상실의 대상자에게, 또 FIA 사무국에 이 사실에 대해 통보 할 때 이러한 처벌을 내리는 이유를 꼭 알려야 한다.

12.11.3 위 두 가지 경우에 대해서 KARA에 대한 라이선스 반납이 지체되는 기간 만큼 정지 기간에 추가된다.

#### 제12.12조 출장 정지의 효력

12.12.1 KARA가 내린 자격 정지 처분은 그 KARA의 영토 안에서만 적용된다.

12.12.2 그러나 KARA에서 해당 라이선스 보유자(참가자, 선수, 오피셜, 주최자 등)의 명백한 규정 위반에 의한 자격 정지 처분을 국제적으로 인정해 주기를 원할 경우, 지체 없이 그 뜻을 FIA 사무국에 통보해야 하며 FIA 사무국은 모든 KARA에 이 사실을 통보한다. 자격 정지 처분은 각 ASN이 곧바로 인지해야 하며, 그 결과에 따른 규제가 효력을 발휘한다

12.12.3 KARA에게 인정을 받은 이러한 자격 정지는 [www.fia.com](http://www.fia.com) 웹사이트 그리고/또는 공식 공고에 게시된다.

#### 제12.13조 자격 상실

12.13.1 FIA 재판 및 징계 규칙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격 상실 처분은 KARA에서 내릴 수 있으며, 예외적으로 심각한 위반에 한정한다.

12.13.2 자격 상실은 언제나 국제적으로 적용된다. 이는 모든 ASN에게 통보되며 국제 자격 정지 조건에 따라서 등록된다.

#### 제12.14조 국제 스포츠 기구에 대한 벌칙 통보

12.14.1 국제적으로 적용되는 출장 정지와 자격 상실은 FIA가 부과한 벌칙을 적용하도록 호혜주의를 기반으로 합의한, FIA가 지정한 국제 스포츠 기구들에게 통보된다.

12.14.2 이들 기구로부터 FIA에 통보된 모든 출장 정지와 자격 상실 처분은 FIA에서 그와 같은 범위로 시행한다.

#### 제12.15조 출장 정지 또는 자격 상실의 이유 언급

KARA는 출장 정지 또는 자격 상실의 대상자에게, 또 FIA 사무국에 이 사실에 대해 통보 할 때 이러한 처벌을 내리는 이유를 꼭 알려야 한다.

**제12.16조 자동차의 자격 정지 또는 자격 상실**  
특정한 자동차 또는 자동차 모델에 대한 출장 정지 또는 자격 상실 처분을 내릴 수 있다.

**제12.17조 포상의 상실**

대회 도중 제외, 출장 정지, 또는 자격 상실을 당한 경기 참가자는 해당 경기에서 수여되는 어떤 상도 받을 자격을 잃는다.

**제12.18조 순위와 포상의 수정**

경기 참가자의 경기 기간 동안에 제외, 출장 정지 또는 자격 상실이 된 경우, 경기 심사위원회는 그 결과로 수정되는 순위와 포상을 발표하며, 다음 순위 경기 참가자의 순위를 올릴지 여부를 결정한다.

**제12.19조 벌칙의 발표**

12.19.1 FIA 또는 KARA는 사람, 자동차, 또는 자동차 모델에게 벌칙이 부과되었다는 사실을 명시하는 공고문을 만들거나 발표할 권리가 있다.

12.19.2 어떤 결정이든 이에 대해 항소할 권한을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이러한 공고문에 언급된 사람은 FIA, KARA 또는 해당 공고문을 발표한 누구를 상대로도 법적 조치를 제기할 권한이 없다.

**제12.20조 처분의 감면**

ASN은 스스로 결정한 조건에 따라서 아직 만료되지 않은 자격 정지 기간을 감면하거나 자격 취소를 해제할 권한을 갖는다. 단, 원래의 벌칙을 KARA가 부과했을 경우에 한정한다.

**제13조 항의**

**제13.1조 항의를 할 권리**

13.1.1 항의를 할 권리는 경기 참가자에게만 있다. 그러나 오피셜 지위를 가지고 활동하는 오피셜은 항의가 없다고 해도 직권으로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13.1.2 여러 경기 참가자가 공동으로 항의를 할 수 없다.

13.1.3 하나가 넘는 동료 경기 참가자들에 대해 항의를 제기하고자 하는 경기 참가자는 관련 행위에 연루된 경기 참가자들의 수만큼 항의를 제

**제12.16조 자동차의 자격 정지 또는 자격 상실**  
특정한 자동차 또는 자동차 모델에 대한 출장 정지 또는 자격 상실 처분을 내릴 수 있다.

**제12.17조 포상의 상실**

대회 도중 제외, 출장 정지, 또는 자격 상실을 당한 경기 참가자는 해당 경기에서 수여되는 어떤 상도 받을 자격을 잃는다.

**제12.18조 순위와 포상의 수정**

경기 참가자의 경기 기간 동안에 제외, 출장 정지 또는 자격 상실이 된 경우, 경기 심사위원회는 그 결과로 수정되는 순위와 포상을 발표하며, 다음 순위 경기 참가자의 순위를 올릴지 여부를 결정한다.

**제12.19조 벌칙의 발표**

12.19.1 FIA 또는 KARA는 사람, 자동차, 또는 자동차 모델에게 벌칙이 부과되었다는 사실을 명시하는 공고문을 만들거나 발표할 권리가 있다.

12.19.2 어떤 결정이든 이에 대해 항소할 권한을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이러한 공고문에 언급된 사람은 FIA, KARA 또는 해당 공고문을 발표한 누구를 상대로도 법적 조치를 제기할 권한이 없다.

**제12.20조 처분의 감면**

ASN은 스스로 결정한 조건에 따라서 아직 만료되지 않은 자격 정지 기간을 감면하거나 자격 취소를 해제할 권한을 갖는다. 단, 원래의 벌칙을 KARA가 부과했을 경우에 한정한다.

**제13조 항의**

**제13.1조 항의를 할 권리**

13.1.1 항의를 할 권리는 경기 참가자에게만 있다. 그러나 오피셜 지위를 가지고 활동하는 오피셜은 항의가 없다고 해도 직권으로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13.1.2 여러 경기 참가자가 공동으로 항의를 할 수 없다.

13.1.3 하나가 넘는 동료 경기 참가자들에 대해 항의를 제기하고자 하는 경기 참가자는 관련 행위에 연루된 경기 참가자들의 수만큼 항의를 제

<p>기해야 한다.</p> <p><b>제13.2조 항의의 제출</b>  13.2.1 모든 항의는 서면으로 보증금과 함께 제출되어야 하며, 보증금 액수는 해마다 KARA에서 (또는 FIA의 챔피언십, 컵, 트로피, 챌린지 또는 시리즈에 대해서는 FIA에서) 정한다.</p> <p>13.2.2 보증금은 항의가 인정되었을 때에만 반환된다.</p> <p><b>제13.3조 항의를 제출할 곳</b>  13.3.1 경기와 관련된 항의는 경기위원장, 또는 그 보조요원에게 보내야 한다. (KARA 규정에 의해 경기 사무국에서 접수가 가능하다.)</p> <p>13.3.2 경기위원장, 사무국장 또는 각 요원이 없을 경우 이러한 항의는 심사위원회에게 제출해야 한다.</p> <p><b>제13.4조 항의 기한</b>  13.4.1 경기 참가자 또는 선수의 참가에 대한, 또는 코스 길이에 대한 항의는 늦어도 자동차의 공식 검차가 끝난 시간으로부터 2시간 안에 제기되어야 한다.</p> <p>13.4.2 차량 검차가 주최자의 국적과 다른 나라에서 수행될 때에는 그 다른 나라 ASN의 오피셜 중 누구든 항의를 접수받아 필요하다면 타당한 의견과 함께 최대한 빨리 심사위원회에 전달할 권리가 있다.</p> <p>13.4.3 핸디캡 또는 히트의 구성에 관한 항의는 늦어도 적용되는 경기규정 또는 특별규정에 규정된 경기 시작 한 시간 전까지 제기되어야 한다.</p> <p>13.4.4 경기 도중에 일어난 오류나 부정, 자동차의 규정 불이행, 또는 경기가 끝났을 때 확정된 결과에 관련된 항의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었다고 심사위원회가 인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결과가 발표된 때로부터 30분 안에 제기되어야 한다.</p> <p>13.4.5 경기 참가자들은 적용되는 경기규정 또는 특별규정을 통해서 게시 장소와 시간을 미리 통보 받는다.</p>	<p>기해야 한다.</p> <p><b>제13.2조 항의의 제출</b>  13.2.1 모든 항의는 서면으로 보증금과 함께 제출되어야 하며, 보증금 액수는 해마다 KARA에서 (또는 FIA의 챔피언십, 컵, 트로피, 챌린지 또는 시리즈에 대해서는 FIA에서) 정한다.</p> <p>13.2.2 보증금은 항의가 인정되었을 때에만 반환된다.</p> <p><b>제13.3조 항의를 제출할 곳</b>  13.3.1 경기와 관련된 항의는 경기위원장, 또는 그 보조요원에게 보내야 한다. (KARA 규정에 의해 경기 사무국에서 접수가 가능하다.)</p> <p>13.3.2 경기위원장, 사무국장 또는 각 요원이 없을 경우 이러한 항의는 심사위원회에게 제출해야 한다.</p> <p><b>제13.4조 항의 기한</b>  13.4.1 경기 참가자 또는 선수의 참가에 대한, 또는 코스 길이에 대한 항의는 늦어도 자동차의 공식 검차가 끝난 시간으로부터 2시간 안에 제기되어야 한다.</p> <p>13.4.2 차량 검차가 주최자의 국적과 다른 나라에서 수행될 때에는 그 다른 나라 ASN의 오피셜 중 누구든 항의를 접수받아 필요하다면 타당한 의견과 함께 최대한 빨리 심사위원회에 전달할 권리가 있다.</p> <p>13.4.3 핸디캡 또는 히트의 구성에 관한 항의는 늦어도 적용되는 경기규정 또는 특별규정에 규정된 경기 시작 한 시간 전까지 제기되어야 한다.</p> <p>13.4.4 경기 도중에 일어난 오류나 부정, 자동차의 규정 불이행, 또는 경기가 끝났을 때 확정된 결과에 관련된 항의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었다고 심사위원회가 인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결과가 발표된 때로부터 30분 안에 제기되어야 한다.</p> <p>13.4.5 경기 참가자들은 적용되는 경기규정 또는 특별규정을 통해서 게시 장소와 시간을 미리 통보 받는다.</p>
---	---

13.4.6 주최자가 이에 따라서 공식 결과를 게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순위와 관련하여 시행하려는 방안에 관한 자세한 내용을 지정한 시간과 장소에 발표해야 한다.

13.4.7 심사위원회는 위에 언급된 모든 항의를 신속하게 다루어야 하며 심사위원회는 누구의 진술을 들을 것인지를 결정한다.

**제13.5조 심리**

13.5.1 항의가 제출되고 나면 항의를 제기한 사람 그리고 항의에 관련된 모든 당사자를 상대로 한 심리가 최대한 빨리 열려야 한다.

13.5.2 관련 당사자들은 심리에 참석하도록 소환되며, 증인을 동반할 수도 있다.

13.5.3 대회 심사위원회는 관련된 모든 사람들이 개별적으로 소환 통보를 받도록 보장해야 한다.

13.5.4 관련 당사자 또는 이들의 증인 가운데 누구든 없을 경우에는 궤석 상태에서 결정이 내려질 수 있다.

13.5.5 관련 당사자들의 심리 뒤에 곧바로 결정이 내려지지 않을 때에는 그 결정을 받을 시간과 장소를 통보 해야 한다.

**제13.6조 인정되지 않는 항의**

13.6.1 직무 수행 중인 오피셜이 판정한 사실에 대한 항의는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13.6.2 이 판정은 심사위원회에서 번복하지 않는 한은 최종이지만, 판정 만으로 순위가 결정되어서는 안 된다. 선수가 어떤 조건에서 코스를 완주했는지는 고려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13.6.3 하나가 넘는 경기 참가자를 상대로 한 한 번의 항의는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13.6.4 여러 경기 참가자가 공동으로 제기한 항의는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제13.7조 포상과 시상의 발표**

13.7.1 항의 제기 대상이 된 경기 참가자가 획득한 포상은 그 항의에 대한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는 보류되어야 한다.

13.4.6 주최자가 이에 따라서 공식 결과를 게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순위와 관련하여 시행하려는 방안에 관한 자세한 내용을 지정한 시간과 장소에 발표해야 한다.

13.4.7 심사위원회는 위에 언급된 모든 항의를 신속하게 다루어야 하며 심사위원회는 누구의 진술을 들을 것인지를 결정한다.

**제13.5조 심리**

13.5.1 항의가 제출되고 나면 항의를 제기한 사람 그리고 항의에 관련된 모든 당사자를 상대로 한 심리가 최대한 빨리 열려야 한다.

13.5.2 관련 당사자들은 심리에 참석하도록 소환되며, 증인을 동반할 수도 있다.

13.5.3 대회 심사위원회는 관련된 모든 사람들이 개별적으로 소환 통보를 받도록 보장해야 한다.

13.5.4 관련 당사자 또는 이들의 증인 가운데 누구든 없을 경우에는 궤석 상태에서 결정이 내려질 수 있다.

13.5.5 관련 당사자들의 심리 뒤에 곧바로 결정이 내려지지 않을 때에는 그 결정을 받을 시간과 장소를 통보 해야 한다.

**제13.6조 인정되지 않는 항의**

13.6.1 직무 수행 중인 오피셜이 판정한 사실에 대한 항의는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13.6.2 이 판정은 심사위원회에서 번복하지 않는 한은 최종이지만, 판정 만으로 순위가 결정되어서는 안 된다. 선수가 어떤 조건에서 코스를 완주했는지는 고려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13.6.3 하나가 넘는 경기 참가자를 상대로 한 한 번의 항의는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13.6.4 여러 경기 참가자가 공동으로 제기한 항의는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제13.7조 포상과 시상의 발표**

13.7.1 항의 제기 대상이 된 경기 참가자가 획득한 포상은 그 항의에 대한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는 보류되어야 한다.

13.7.2 더 나아가, 그 결과가 경기의 순위를 바꿀 수 있는 항의가 제기된 경우에는 주최자는 잠정 순위만을 발표할 수 있으며 모든 포상은 그 항의(항소를 포함하여)에 관한 최종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는 보류된다.

13.7.3 그러나 항의가 순위의 일부에만 영향을 줄 수 있을 때에는 항의에 영향을 받지 않는 부분은 확정적으로 발표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포상이 수여된다.

#### 제13.8조 판결

국제스포츠규정에서 정한 항소를 조건으로, 내려진 결정은 관련된 모든 당사자에게 구속력을 가지지만 심사위원회는 물론 KARA에서도 경기를 다시 치르도록 명령할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다.

#### 제13.9조 근거 없는 항의

13.9.1 항의가 기각되거나 제기된 뒤 철회되었다면, 항의 보증금은 일부라도 반환되지 않는다.

13.9.2 일부 근거가 있는 것으로 판정되면 보증금의 일부가 반환되며, 항의가 인정되면 전체를 반환한다.

13.9.3 더 나아가, 항의를 제기한 사람이 부정직한 행동을 한 것이 입증되면, KARA는 이 국제스포츠규정에서 정한 벌칙 가운데 한 가지를 부과할 수 있다.(65p 벌칙 참고)

#### 제13.10조 재검토 권한

13.10.1 만약 FIA 챔피언십, 컵, 챌린지, 트로피 또는 시리즈의 일부를 이루는 경기에서 새로운 사실이 발견되었다면, 이에 대한 심사위원회의 판단 여부와 상관없이, 심사위원회 (이들이 가능하지 않을 경우는 FIA가 지명한 사람들을) 를 일정 날짜에 설명을 듣기 위한 목적으로 관련 당사자를 소환하고, 새로운 사실에 입각한 판단을 내리기 위해서 회의를 연다.

13.10.2 심사위원회는 새로운 정보가 존재하는지를 결정할 유일한 재량권을 가진다.

13.10.3 항소가 재검토될 수 있는 기간은 그 결과가 챔피언십, 컵, 챌린지, 트로피 또는 시리즈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 경우, FIA 연간 시

13.7.2 더 나아가, 그 결과가 경기의 순위를 바꿀 수 있는 항의가 제기된 경우에는 주최자는 잠정 순위만을 발표할 수 있으며 모든 포상은 그 항의(항소를 포함하여)에 관한 최종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는 보류된다.

13.7.3 그러나 항의가 순위의 일부에만 영향을 줄 수 있을 때에는 항의에 영향을 받지 않는 부분은 확정적으로 발표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포상이 수여된다.

#### 제13.8조 판결

국제스포츠규정에서 정한 항소를 조건으로, 내려진 결정은 관련된 모든 당사자에게 구속력을 가지지만 심사위원회는 물론 KARA에서도 경기를 다시 치르도록 명령할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다.

#### 제13.9조 근거 없는 항의

13.9.1 항의가 기각되거나 제기된 뒤 철회되었다면, 항의 보증금은 일부라도 반환되지 않는다.

13.9.2 일부 근거가 있는 것으로 판정되면 보증금의 일부가 반환되며, 항의가 인정되면 전체를 반환한다.

13.9.3 더 나아가, 항의를 제기한 사람이 부정직한 행동을 한 것이 입증되면, KARA는 이 국제스포츠규정에서 정한 벌칙 가운데 한 가지를 부과할 수 있다.(65p 벌칙 참고)

#### 제14조 재검토 권한

14.1 만약 FIA 챔피언십, 컵, 챌린지, 트로피 또는 시리즈의 일부를 이루는 경기에서 새로운 사실이 발견되었다면, 이에 대한 심사위원회의 판단 여부와 상관없이, 심사위원회 (이들이 가능하지 않을 경우는 FIA가 지명한 사람들을) 를 일정 날짜에 설명을 듣기 위한 목적으로 관련 당사자를 소환하고, 새로운 사실에 입각한 판단을 내리기 위해서 회의를 연다.

14.2 심사위원회는 새로운 정보가 존재하는지를 결정할 유일한 재량권을 가진다.

14.3 항소가 재검토될 수 있는 기간은 그 결과가 챔피언십, 컵, 챌린지, 트로피 또는 시리즈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 경우, FIA 연간 시상식

상식 날짜로부터 4일 (근무일 기준) 전에 만료되며 이 기간 동안에 재검토되는 결정에 대한 결론이 내려져야 한다.

13.10.4 이 새로운 결정에 대한 항소 권한은 국제스포츠규정의 이어지는 조항에 따라서 관련 당사자로 국한된다.

13.10.5 최초의 결정이 국내 항소재판소 또는 국제 항소재판소에, 아니면 연속적으로 양쪽 재판소 모두에 이미 제기되었던 항소의 안전이라면, 이 사건은 합법적으로 이들 재판소에 제출되어 이전 결정에 대해 가능한 수정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13.10.6 국제 항소재판소는 자체 발의 또는 FIA 회장 혹은 관련된 그리고/또는 이전 결정에 직접 영향을 받은 당사자 중 하나가 제기한 재검토 항소에 따라서 판결된 사건에 대한 재검토를 할 수 있다.

#### 제14조 항소

##### 제14.1조 관할권

14.1.1 각 ASN은 국내 항소재판소를 통해서 국내 모터스포츠와 관련하여 그 ASN의 관할 영토 안에서 그 ASN의 라이선스 보유자들만을 범위로 그 사이에서 벌어질 수 있는 모든 분쟁을 해소하는 권한을 부여 받은 최종 재판소를 구성한다.

14.1.2 외국 라이선스 보유자 또는 외국 국적으로 제12.2.1조의 첫 문단에 언급된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이 관련된 분쟁에 대해서는, 국내 항소 재판소는 그 결정에 대해 국제 항소재판소에 항소를 제출할 수 있는 재판소가 된다.

14.1.3 여러 나라의 영토에 걸쳐서 진행되는 경기의 틀 안에서 제기된 항소에 대한 권한을 가지는 스포츠 재판소는 국제스포츠캘린더에 그 경기 등록을 신청했던 ASN의 재판소다. 단, FIA 재판 및 징계 규칙에 따라 국제 항소재판소에 곧바로 항소를 제출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해서는 예외다.

14.1.4 국제 시리즈의 일부를 이루는 경기의 틀 안에서 제기된 항소를 위한 권한 있는 스포츠 재판소는 그 시리즈를 승인한 ASN 소속이어야 한다. 단, FIA 재판 및 징계 규칙에 따라 국제 항소 재판소에 곧바로 항소를 제출할 수 있는 권리에

날짜로부터 4일 (근무일 기준) 전에 만료되며 이 기간 동안에 재검토되는 결정에 대한 결론이 내려져야 한다.

14.4 이 새로운 결정에 대한 항소 권한은 국제스포츠규정의 이어지는 조항에 따라서 관련 당사자로 국한된다.

14.5 최초의 결정이 국내 항소재판소 또는 국제 항소재판소에, 아니면 연속적으로 양쪽 재판소 모두에 이미 제기되었던 항소의 안전이라면, 이 사건은 합법적으로 이들 재판소에 제출되어 이전 결정에 대해 가능한 수정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14.6 국제 항소재판소는 자체 발의 또는 FIA 회장 혹은 관련된 그리고/또는 이전 결정에 직접 영향을 받은 당사자 중 하나가 제기한 재검토 항소에 따라서 판결된 사건에 대한 재검토를 할 수 있다.

#### 제15조 항소

##### 제15.1조 관할권

15.1.1 각 ASN은 국내 항소재판소를 통해서 국내 모터스포츠와 관련하여 그 ASN의 관할 영토 안에서 그 ASN의 라이선스 보유자들만을 범위로 그 사이에서 벌어질 수 있는 모든 분쟁을 해소하는 권한을 부여 받은 최종 재판소를 구성한다.

15.1.2 외국 라이선스 보유자 또는 외국 국적으로 제12.2.1조의 첫 문단에 언급된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이 관련된 분쟁에 대해서는, 국내 항소 재판소는 그 결정에 대해 국제 항소재판소에 항소를 제출할 수 있는 재판소가 된다.

15.1.3 여러 나라의 영토에 걸쳐서 진행되는 경기의 틀 안에서 제기된 항소에 대한 권한을 가지는 스포츠 재판소는 국제스포츠캘린더에 그 경기 등록을 신청했던 ASN의 재판소다. 단, FIA 재판 및 징계 규칙에 따라 국제 항소재판소에 곧바로 항소를 제출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해서는 예외다.

15.1.4 국제 시리즈의 일부를 이루는 경기의 틀 안에서 제기된 항소를 위한 권한 있는 스포츠 재판소는 그 시리즈를 승인한 ASN 소속이어야 한다. 단, FIA 재판 및 징계 규칙에 따라 국제 항소 재판소에 곧바로 항소를 제출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해서는 예외다.

14.1.5 FIA 재판 및 징계 규칙에 나와 있는 권한과 절차에 관한 규칙에 따라 국제 항소재판소에 항소를 제출할 수 있다.

14.1.6 FIA 반도핑 징계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항소는 스포츠 중재위원회에만 제출할 수 있다.

**제14.2조 국내 항소재판소**

14.2.1 KARA는 KARA의 회원이거나 회원이 아닌 일정한 수의 사람들을 임명하여 국내 항소재판소를 구성한다.

14.2.2 국내 항소재판소의 어떤 구성원도 심리 중인 경기의 경기 참가자, 선수, 또는 오피셜과 어떤 식으로든 관련이 있다면, 또는 심의 중인 문제에 대해서 관련된 이전의 결정에 참여했거나 직접 혹은 간접으로 관여했다면 그 사건을 맡을 수 없다.

**제14.3조 국내 항소 절차**

14.3.1 국적에 관계없이 경기 참가자는 심사위원회가 발표한 결정에 대한 항소를 KARA에 제출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14.3.2 결정이 발표된 지 한 시간 안에 서면으로 심사위원회에게 항소할 뜻을 밝히지 않으면 권리를 잃는다.

14.3.3 KARA에 항소를 하기 위해서는 결정이 발표된 지 한 시간 안에 심사위원회에게 서면으로 항소할 뜻을 밝혀야 하며, 항소 의사는 심사위원회에게 통지한 시각으로부터 96시간동안 유효하다.

14.3.4 항소는 수신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 통신 수단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같은 날 발송된 확인이 필요하다.

14.3.5 KARA는 최대 30일 안에 항소에 대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

14.3.6 모든 당사자들은 항소의 심의에 대한 적절한 통보를 받는다. 이들은 증인을 부를 수 있으나 그가 심리에 출석하지 않으면 심리 진행 절차는 중단되지 않는다.

대해서는 예외다.

15.1.5 FIA 재판 및 징계 규칙에 나와 있는 권한과 절차에 관한 규칙에 따라 국제 항소재판소에 항소를 제출할 수 있다.

15.1.6 FIA 반도핑 징계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항소는 스포츠 중재위원회에만 제출할 수 있다.

**제15.2조 국내 항소재판소**

15.2.1 KARA는 KARA의 회원이거나 회원이 아닌 일정한 수의 사람들을 임명하여 국내 항소재판소를 구성한다.

15.2.2 국내 항소재판소의 어떤 구성원도 심리 중인 경기의 경기 참가자, 선수, 또는 오피셜과 어떤 식으로든 관련이 있다면, 또는 심의 중인 문제에 대해서 관련된 이전의 결정에 참여했거나 직접 혹은 간접으로 관여했다면 그 사건을 맡을 수 없다.

**제15.3조 국내 항소 절차**

15.3.1 국적에 관계없이 경기 참가자는 심사위원회가 발표한 결정에 대한 항소를 KARA에 제출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15.3.2 결정이 발표된 지 한 시간 안에 서면으로 심사위원회에게 항소할 뜻을 밝히지 않으면 권리를 잃는다.

15.3.3 KARA에 항소를 하기 위해서는 결정이 발표된 지 한 시간 안에 심사위원회에게 서면으로 항소할 뜻을 밝혀야 하며, 항소 의사는 심사위원회에게 통지한 시각으로부터 96시간동안 유효하다.

15.3.4 항소는 수신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 통신 수단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같은 날 발송된 확인이 필요하다.

15.3.5 KARA는 최대 30일 안에 항소에 대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

15.3.6 모든 당사자들은 항소의 심의에 대한 적절한 통보를 받는다. 이들은 증인을 부를 수 있으나 그가 심리에 출석하지 않으면 심리 진행 절차는 중단되지 않는다.

**제14.4조 국내 항소의 형식**

14.4.1 모든 항소 통보는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항소인 또는 공인된 대리인의 서명이 있어야 한다.

14.4.2 KARA가 해마다 정하는 항소 보증금은 항소인이 심사위원회에 항소할 뜻을 밝힌 때로부터 납부 의무가 생기며 항소인이 항소할 뜻을 선언한 뒤 후속 절차를 이행하지 않아도 납부 의무가 유지된다.

14.4.3 이 보증금은 심사위원회가 항소할 뜻을 통보받은 지 96시간 안에 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항소인의 라이선스는 보증금을 낼 때까지 자동으로 정지된다.

14.4.4 항소가 기각되거나 제기된 뒤 철회되었다면, 항의 보증금은 일부라도 반환되지 않는다.

14.4.5 일부 근거가 있는 것으로 판정되면 보증금의 일부가 반환되며, 항소가 인정되면 전체를 반환한다.

14.4.6 더 나아가, 항의를 제기한 사람이 부정직한 행동을 한 것이 입증되면, KARA는 국제스포츠규정에서 정한 벌칙 가운데 한 가지를 부과할 수 있다. (65p 벌칙 참고)

**제14.5조 판결**

14.5.1 국내 항소재판소는 항소 대상이 된 벌칙 또는 다른 결정을 면제할지, 그리고 필요하다면 벌칙을 경감 또는 가중할지를 결정할 수 있으나 경기를 다시 치르도록 명령할 권한은 없다.

14.5.2 국내 항소재판소의 판결은 명확하고 근거가 충분해야 한다.

**제14.6조 비용 (수수료 제외)**

14.6.1 국내 항소재판소는 제출된 항소에 대한 결정을 내릴 때 그 결과에 따라 항소 절차와 재판소 회의를 준비하는 데 들어간 지출의 수준을 사무국에서 계산하여 재판소가 비용에 대한 부분을 결정해야 한다.

14.6.2 이 비용은 이러한 지출만으로 구성되며 당사자가 부담하는 지출과 변호료는 제외된다.

**제15.4조 국내 항소의 형식**

15.4.1 모든 항소 통보는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항소인 또는 공인된 대리인의 서명이 있어야 한다.

15.4.2 KARA가 해마다 정하는 항소 보증금은 항소인이 심사위원회에 항소할 뜻을 밝힌 때로부터 납부 의무가 생기며 항소인이 항소할 뜻을 선언한 뒤 후속 절차를 이행하지 않아도 납부 의무가 유지된다.

15.4.3 이 보증금은 심사위원회가 항소할 뜻을 통보받은 지 96시간 안에 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항소인의 라이선스는 보증금을 낼 때까지 자동으로 정지된다.

15.4.4 항소가 기각되거나 제기된 뒤 철회되었다면, 항의 보증금은 일부라도 반환되지 않는다.

15.4.5 일부 근거가 있는 것으로 판정되면 보증금의 일부가 반환되며, 항소가 인정되면 전체를 반환한다.

15.4.6 더 나아가, 항의를 제기한 사람이 부정직한 행동을 한 것이 입증되면, KARA는 국제스포츠규정에서 정한 벌칙 가운데 한 가지를 부과할 수 있다. (~~65p 벌칙 참고~~)

**제15.5조 판결**

15.5.1 국내 항소재판소는 항소 대상이 된 벌칙 또는 다른 결정을 면제할지, 그리고 필요하다면 벌칙을 경감 또는 가중할지를 결정할 수 있으나 경기를 다시 치르도록 명령할 권한은 없다.

15.5.2 국내 항소재판소의 판결은 명확하고 근거가 충분해야 한다.

**제15.6조 비용 (수수료 제외)**

15.6.1 국내 항소재판소는 제출된 항소에 대한 결정을 내릴 때 그 결과에 따라 항소 절차와 재판소 회의를 준비하는 데 들어간 지출의 수준을 사무국에서 계산하여 재판소가 비용에 대한 부분을 결정해야 한다.

15.6.2 이 비용은 이러한 지출만으로 구성되며 당사자가 부담하는 지출과 변호료는 제외된다.



**제14.7조 판결의 발표**

14.7.1 FIA 또는 KARA는 항소의 결과를 발표하거나 공고문을 만들고 관련된 당사자들의 이름을 명시할 권리를 가진다.

14.7.2 어떤 결정이든 이에 대해 항소할 권한을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이러한 공고문에 언급된 사람은 FIA, KARA 또는 해당 공고문을 발표한 누구를 상대로도 법적 조치를 제기할 권한이 없다.

**제14.8조**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 이 규칙 안의 어느 부분도 어떤 당사자든 어떤 법원 혹은 재판소에든 법적 조치를 제기할 어떤 권리도 막지 않는다. 하지만 이는 언제나 다른 구제 방법 또는 대안으로 쓸 수 있는 분쟁 해결 방법을 추구하기 전에 우선 받아들인 모든 의무를 다했을 경우로 한정한다.

**제15조 차량의 경기 번호와 광고에 관한 규칙**

**제15.1조**

다르게 지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경기 번호의 숫자는 흰 바탕색 사각형 위에 검은색으로 되어 있어야 한다. 밝은 색깔의 자동차인 경우, 흰 바탕색 사각형의 둘레 전체에 걸쳐 5cm 너비의 검은 테두리가 쳐져 있어야 한다.

**제15.2조**

다르게 지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숫자는 다음에 보이는 것과 같은 전통적인 형식이어야 한다 : 1 2 3 4 5 6 7 8 9 0

**제15.3조**

다르게 지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각 자동차에는 다음 장소에 경기 번호가 붙어 있어야 한다.

15.3.1 자동차 양쪽, 앞쪽 문, 또는 콕핏과 같은 높이에

15.3.2 앞에서 읽을 수 있도록 차량의 노즈 또는 보닛에.

**15.3.3 인승 자동차에 대하여**

15.3.3.a 숫자의 최소 높이는 23cm이며 획의 굵기는 4cm.

**제15.7조 판결의 발표**

15.7.1 FIA 또는 KARA는 항소의 결과를 발표하거나 공고문을 만들고 관련된 당사자들의 이름을 명시할 권리를 가진다.

15.7.2 어떤 결정이든 이에 대해 항소할 권한을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이러한 공고문에 언급된 사람은 FIA, KARA 또는 해당 공고문을 발표한 누구를 상대로도 법적 조치를 제기할 권한이 없다.

**제15.8조**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 이 규칙 안의 어느 부분도 어떤 당사자든 어떤 법원 혹은 재판소에든 법적 조치를 제기할 어떤 권리도 막지 않는다. 하지만 이는 언제나 다른 구제 방법 또는 대안으로 쓸 수 있는 분쟁 해결 방법을 추구하기 전에 우선 받아들인 모든 의무를 다했을 경우로 한정한다.

**제16조 차량의 경기 번호와 광고에 관한 규칙**

**제16.1조**

다르게 지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경기 번호의 숫자는 흰 바탕색 사각형 위에 검은색으로 되어 있어야 한다. 밝은 색깔의 자동차인 경우, 흰 바탕색 사각형의 둘레 전체에 걸쳐 5cm 너비의 검은 테두리가 쳐져 있어야 한다.

**제16.2조**

다르게 지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숫자는 다음에 보이는 것과 같은 전통적인 형식이어야 한다 : 1 2 3 4 5 6 7 8 9 0

**제16.3조**

다르게 지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각 자동차에는 다음 장소에 경기 번호가 붙어 있어야 한다.

16.3.1 자동차 양쪽, 앞쪽 문, 또는 콕핏과 같은 높이에

16.3.2 앞에서 읽을 수 있도록 차량의 노즈 또는 보닛에.

**16.3.3 1인승 자동차에 대하여**

16.3.3.a 숫자의 최소 높이는 23cm이며 획의 굵기는 4cm.

15.3.3.b 흰 배경색은 적어도 45cm 너비에 33cm 높이.

15.3.4 다른 모든 자동차에 대하여,  
15.3.4.a 숫자의 최소 높이는 28cm이며 획의 굵기는 5cm.

15.3.4.b 흰 배경색은 적어도 50cm 너비에 38cm 높이.

15.3.5 어느 지점에서든 숫자의 모서리와 흰 배경색의 모서리 사이 거리는 5cm보다 가까워서는 안 된다.

**제15.4조**

15.4.1 앞쪽 날개 양편에는 선수(들)의 국기(들) 그리고 선수의 이름(들)이 표시되어 있어야 한다.

15.4.2 이들 국기와 이름의 최소 높이는 모두 4cm이다.

**제15.5조**

15.5.1 흰 배경색 위아래로, 높이가 12cm이고 너비가 배경색 영역과 같은 영역은 주최자가 광고 목적으로 쓸 수 있도록 남겨두어야 한다.

15.5.2 이러한 영역을 확보할 수 없는 자동차(예를 들어서 몇몇 1인승 자동차)에 대해서는 경기 참가자는 흰 배경색 바로 부근에 이와 동등한 영역을 광고 없이 남겨두어야 한다.

15.5.3 KARA가 다르게 결정한 경우가 아니라면, 차체의 남은 부분에 대한 광고는 자유다.

**제15.6조**

경기 번호 그리고 광고는 차체 바깥으로 튀어나와서는 안 된다.

**제15.7조**

윈드스크린과 창문에는 광고를 붙일 수 없다. 단, 윈드스크린의 위쪽으로 최대 10cm 높이의 띠 모양 영역, 그리고 선수의 시야를 방해하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뒤쪽 창문에 8cm 높이의 띠 모양 영역은 예외다.

**제15.8조**

히스토리 자동차에 붙일 수 있는 광고와 경기 번

16.3.3.b 흰 배경색은 적어도 45cm 너비에 33cm 높이.

16.3.4 다른 모든 자동차에 대하여,  
16.3.4.a 숫자의 최소 높이는 28cm이며 획의 굵기는 5cm.

16.3.4.b 흰 배경색은 적어도 50cm 너비에 38cm 높이.

16.3.5 어느 지점에서든 숫자의 모서리와 흰 배경색의 모서리 사이 거리는 5cm보다 가까워서는 안 된다.

**제16.4조**

16.4.1 앞쪽 날개 양편에는 선수(들)의 국기(들) 그리고 선수의 이름(들)이 표시되어 있어야 한다.

16.4.2 이들 국기와 이름의 최소 높이는 모두 4cm이다.

**제16.5조**

16.5.1 흰 배경색 위아래로, 높이가 12cm이고 너비가 배경색 영역과 같은 영역은 주최자가 광고 목적으로 쓸 수 있도록 남겨두어야 한다.

16.5.2 이러한 영역을 확보할 수 없는 자동차(예를 들어서 몇몇 1인승 자동차)에 대해서는 경기 참가자는 흰 배경색 바로 부근에 이와 동등한 영역을 광고 없이 남겨두어야 한다.

16.5.3 KARA가 다르게 결정한 경우가 아니라면, 차체의 남은 부분에 대한 광고는 자유다.

**제16.6조**

경기 번호 그리고 광고는 차체 바깥으로 튀어나와서는 안 된다.

**제16.7조**

윈드스크린과 창문에는 광고를 붙일 수 없다. 단, 윈드스크린의 위쪽으로 최대 10cm 높이의 띠 모양 영역, 그리고 선수의 시야를 방해하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뒤쪽 창문에 8cm 높이의 띠 모양 영역은 예외다.

**제16.8조**

히스토리 자동차에 붙일 수 있는 광고와 경기 번

호에 관련된 규정은 국제스포츠규정 부칙 K에 정의되어 있다.

**제16조 도박**

**제16.1조 도박 금지**

라이선스, 슈퍼 라이선스 또는 FIA월드챔피언십에 참여하는 팀의 스태프 등록증을 가진 사람, 그리고 국제스포츠캘린더 또는 KARA의 국내캘린더에 등록된 경기 프로모터 관련 직원은 경기의 어떤 단계든, 또는 경기에 대하여 직접으로도 또는 간접적으로라도 내기 또는 도박을 할 수 없다.

**제16.2조 부패 방지**

라이선스, 슈퍼 라이선스 또는 FIA월드챔피언십에 참여하는 경기 참가자의 스태프를 위한 등록증을 가진 모든 사람, 그리고 국제스포츠캘린더 또는 KARA의 국내캘린더에 등록된 경기의 주최자의 모든 직원은 다음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6.2.1 경기 과정 또는 결과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또는 자신 혹은 다른 참가자의 경기 능력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돈 또는 어떤 종류의 이득이든 제공하거나 제공하려고 시도하는 행위.

16.2.2 경기 과정 또는 결과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또는 자신 혹은 다른 참가자의 경기능력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돈을 받거나 어떤 종류의 이득이든 얻으려는 행위.

**제16.3조 정보 누설**

라이선스, 슈퍼 라이선스 또는 FIA월드챔피언십에 참여하는 경기 참가자의 스태프를 위한 등록증을 가진 모든 사람, 그리고 국제스포츠캘린더 또는 KARA의 국내캘린더에 등록된 경기의 주최자의 모든 직원은 다음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6.3.1 경기에 대한 도박 활동의 목적을 달성하거나 달성하도록 해 줄 목적으로 해당 경기의 기밀 정보를 대중들이 알게 되기 전에 손에 넣기 위해서 돈 또는 어떤 종류의 이득을 제공하거나 제공하려고 시도하는 행위.

16.3.2 경기에 대한 도박 활동의 목적을 달성하거나 달성하도록 해 줄 목적으로 이들의 직업 또는 임무 수행 과정에서 얻은 해당 경기의 기밀 정보를 대중들이 알게 되기전에 제3자에게 전달

호에 관련된 규정은 국제스포츠규정 부칙 K에 정의되어 있다.

**제17조 도박**

**제17.1조 도박 금지**

라이선스, 슈퍼 라이선스 또는 FIA월드챔피언십에 참여하는 팀의 스태프 등록증을 가진 사람, 그리고 국제스포츠캘린더 또는 KARA의 국내캘린더에 등록된 경기 프로모터 관련 직원은 경기의 어떤 단계든, 또는 경기에 대하여 직접으로도 또는 간접적으로라도 내기 또는 도박을 할 수 없다.

**제17.2조 부패 방지**

라이선스, 슈퍼 라이선스 또는 FIA월드챔피언십에 참여하는 경기 참가자의 스태프를 위한 등록증을 가진 모든 사람, 그리고 국제스포츠캘린더 또는 KARA의 국내캘린더에 등록된 경기의 주최자의 모든 직원은 다음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7.2.1 경기 과정 또는 결과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또는 자신 혹은 다른 참가자의 경기 능력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돈 또는 어떤 종류의 이득이든 제공하거나 제공하려고 시도하는 행위.

17.2.2 경기 과정 또는 결과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또는 자신 혹은 다른 참가자의 경기능력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돈을 받거나 어떤 종류의 이득이든 얻으려는 행위.

**제17.3조 정보 누설**

라이선스, 슈퍼 라이선스 또는 FIA월드챔피언십에 참여하는 경기 참가자의 스태프를 위한 등록증을 가진 모든 사람, 그리고 국제스포츠캘린더 또는 KARA의 국내캘린더에 등록된 경기의 주최자의 모든 직원은 다음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7.3.1 경기에 대한 도박 활동의 목적을 달성하거나 달성하도록 해 줄 목적으로 해당 경기의 기밀 정보를 대중들이 알게 되기 전에 손에 넣기 위해서 돈 또는 어떤 종류의 이득을 제공하거나 제공하려고 시도하는 행위.

17.3.2 경기에 대한 도박 활동의 목적을 달성하거나 달성하도록 해 줄 목적으로 이들의 직업 또는 임무 수행 과정에서 얻은 해당 경기의 기밀 정보를 대중들이 알게 되기전에 제3자에게 전달

해서는 안 된다.

### 제17조 모터스포츠에 관련된 상업적 문제

#### 제17.1조

FIA에게 서면 동의를 받지 않고서는 FIA 챔피언십, 컵, 트로피, 챌린지 또는 시리즈에 속한 경기의 주최자 또는 주최자의 집단은 해당 챔피언십, 컵, 트로피, 챌린지 또는 시리즈가 직접이든 간접이든 상업 회사 또는 조직으로부터 보조금 또는 재정 지원을 받는 것으로 믿도록 명시하거나 유도할 수 없다.

#### 제17.2조

따라서 상업 회사, 조직 또는 브랜드의 이름을 FIA 챔피언십, 컵, 트로피, 챌린지 또는 시리즈와 묶을 수 있는 권한은 전적으로 FIA가 보유한다.

### 제18조 FIA 결정의 공식화

#### 제18.1조 FIA 챔피언십, 컵, 트로피, 챌린지 또는 시리즈 캘린더의 발표

18.1.1 FIA 챔피언십, 컵, 트로피, 챌린지 또는 시리즈와 이를 구성하는 경기의 목록은 해마다 10월 15일보다 늦지 않게 발표된다.

18.1.2 발표 뒤에 캘린더에서 취소되는 어떤 경기든 해당 년도의 국제적인 자격을 잃게 된다.

#### 제18.2조 규정의 개정

FIA는 필요하다고 간주하면 규정에 대한 변경을 할 수 있다. 이러한 변경은 다음 규정에 따라서 발표되고 효력을 가지게 된다.

##### 18.2.1 안전

안전을 이유로 FIA가 규정에 대해서 시행한 변경은 통지 또는 지체 없이 효력을 가진다.

##### 18.2.2 자동차의 기술적 설계

국제스포츠규정 기술규정, 부칙 J 또는 부칙 K에 대해서 FIA가 채택한 변경은 해마다 6월 30일 이전에 발표되며 발표된 이듬해 1월 1일 이전에는 효력을 가지지 않는다. 단, 이는 FIA에서 해당 변경이 자동차의 기술적 설계 그리고/또는 자동차 사이의 성능 균형에 근본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간주했을 때이며, 그렇지 않다면 이 변경은 발표된 다음다음 해의 1월 1일보다 빠르지 않은 시기부터 효력을 가진다.

해서는 안 된다.

### 제18조 모터스포츠에 관련된 상업적 문제

#### 제18.1조

FIA에게 서면 동의를 받지 않고서는 FIA 챔피언십, 컵, 트로피, 챌린지 또는 시리즈에 속한 경기의 주최자 또는 주최자의 집단은 해당 챔피언십, 컵, 트로피, 챌린지 또는 시리즈가 직접이든 간접이든 상업 회사 또는 조직으로부터 보조금 또는 재정 지원을 받는 것으로 믿도록 명시하거나 유도할 수 없다.

#### 제18.2조

따라서 상업 회사, 조직 또는 브랜드의 이름을 FIA 챔피언십, 컵, 트로피, 챌린지 또는 시리즈와 묶을 수 있는 권한은 전적으로 FIA가 보유한다.

### 제19조 FIA 결정의 공식화

#### 제19.1조 FIA 챔피언십, 컵, 트로피, 챌린지 또는 시리즈 캘린더의 발표

19.1.1 FIA 챔피언십, 컵, 트로피, 챌린지 또는 시리즈와 이를 구성하는 경기의 목록은 해마다 10월 15일보다 늦지 않게 발표된다.

19.1.2 발표 뒤에 캘린더에서 취소되는 어떤 경기든 해당 년도의 국제적인 자격을 잃게 된다.

#### 제19.2조 규정의 개정

FIA는 필요하다고 간주하면 규정에 대한 변경을 할 수 있다. 이러한 변경은 다음 규정에 따라서 발표되고 효력을 가지게 된다.

##### 19.2.1 안전

안전을 이유로 FIA가 규정에 대해서 시행한 변경은 통지 또는 지체 없이 효력을 가진다.

##### 19.2.2 자동차의 기술적 설계

국제스포츠규정 기술규정, 부칙 J 또는 부칙 K에 대해서 FIA가 채택한 변경은 해마다 6월 30일 이전에 발표되며 발표된 이듬해 1월 1일 이전에는 효력을 가지지 않는다. 단, 이는 FIA에서 해당 변경이 자동차의 기술적 설계 그리고/또는 자동차 사이의 성능 균형에 근본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간주했을 때이며, 그렇지 않다면 이 변경은 발표된 다음다음 해의 1월 1일보다 빠르지 않은 시기부터 효력을 가진다.

**18.2.3 경기규정 그리고 다른 규정**

18.2.3.a 경기규정, 그리고 위에서 언급한 규정이 아닌 다른 모든 규정은 관련 챔피언십, 컵, 트로피, 챌린지 또는 시리즈 참가 신청 시작 날짜로부터 적어도 20일 전에 발표되지만 해마다 12월 15일보다 절대로 늦어서는 안 된다.

18.2.3.b 이러한 변경은 발표된 이듬해 1월 1일 이전에는 효력이 없다. 단, 이는 FIA에서 해당 변경이 자동차의 기술적 설계 그리고/또는 자동차 사이의 성능 균형에 근본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간주했을 때이며, 그렇지 않다면 이 변경은 발표된 다음다음 해의 1월 1일보다 빠르지 않은 시기부터 효력을 가진다.

18.2.4 위에서 언급한 것보다 더 짧은 예고 기간이 적용될 수 있으나, 이는 해당 챔피언십, 컵, 트로피, 챌린지 또는 시리즈에 정식으로 참가한 모든 경기 참가자들의 만장일치 동의를 얻었을 경우로 한정한다.

**제18.3조**

FIA 챔피언십, 컵, 트로피, 챌린지 또는 시리즈 캘린더의 발표는 인터넷 사이트 [www.fia.com](http://www.fia.com) 그리고/또는 공식 공고에 게시되는 대로 공식적인 문서가 되며 그 효력을 가진다.

**제19조 국제스포츠규정의 시행**

**제19.1조 규정의 국내 해석**

각 ASN은 그 관할 영토 안에서 일어났으며 국제항소의 조건을 적용 받는, 국제스포츠규정 또는 그 국내규정의 해석에 관련된 어떤 사안이든 결정할 권한을 부여 받는다. 단, 이러한 해석은 FIA가 이 내놓은 해석 또는 해명과 상충되어서는 안 된다.

**제19.2조 국제스포츠규정의 변경**

19.2.1 FIA는 언제든지 “국제스포츠규정”을 바꾸고 정기적으로 그 부칙을 개정할 권한을 보유한다.

19.2.2 KARA는 FIA의 국제스포츠규정을 기반으로 국내스포츠규정을 정기적으로 개정 할 권한을 보유한다.

**제19.3조 통보**

국제스포츠규정에서 ASN이 FIA에게 요구하는 모든 연락은 FIA 본부의 주소 또는 별도로 주어진다

**19.2.3 경기규정 그리고 다른 규정**

19.2.3.a 경기규정, 그리고 위에서 언급한 규정이 아닌 다른 모든 규정은 관련 챔피언십, 컵, 트로피, 챌린지 또는 시리즈 참가 신청 시작 날짜로부터 적어도 20일 전에 발표되지만 해마다 12월 15일보다 절대로 늦어서는 안 된다.

19.2.3.b 이러한 변경은 발표된 이듬해 1월 1일 이전에는 효력이 없다. 단, 이는 FIA에서 해당 변경이 자동차의 기술적 설계 그리고/또는 자동차 사이의 성능 균형에 근본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간주했을 때이며, 그렇지 않다면 이 변경은 발표된 다음다음 해의 1월 1일보다 빠르지 않은 시기부터 효력을 가진다.

19.2.4 위에서 언급한 것보다 더 짧은 예고 기간이 적용될 수 있으나, 이는 해당 챔피언십, 컵, 트로피, 챌린지 또는 시리즈에 정식으로 참가한 모든 경기 참가자들의 만장일치 동의를 얻었을 경우로 한정한다.

**제19.3조**

FIA 챔피언십, 컵, 트로피, 챌린지 또는 시리즈 캘린더의 발표는 인터넷 사이트 [www.fia.com](http://www.fia.com) 그리고/또는 공식 공고에 게시되는 대로 공식적인 문서가 되며 그 효력을 가진다.

**제20조 국제스포츠규정의 시행**

**제20.1조 규정의 국내 해석**

각 ASN은 그 관할 영토 안에서 일어났으며 국제항소의 조건을 적용 받는, 국제스포츠규정 또는 그 국내규정의 해석에 관련된 어떤 사안이든 결정할 권한을 부여 받는다. 단, 이러한 해석은 FIA가 이 내놓은 해석 또는 해명과 상충되어서는 안 된다.

**제20.2조 국제스포츠규정의 변경**

20.2.1 FIA는 언제든지 “국제스포츠규정”을 바꾸고 정기적으로 그 부칙을 개정할 권한을 보유한다.

20.2.2 KARA는 FIA의 국제스포츠규정을 기반으로 국내스포츠규정을 정기적으로 개정 할 권한을 보유한다.

**제20.3조 통보**

국제스포츠규정에서 ASN이 FIA에게 요구하는 모든 연락은 FIA 본부의 주소 또는 별도로 주어진다

주소로 전달되어야 한다.

**제19.4조 이 규칙의 국제적인 해석**

19.4.1 이 규칙은 프랑스어와 영어로 작성된다. 이 규칙은 다른 언어로 발표될 수 있다.

19.4.2 FIA 또는 국제 항소재판소에서 그 해석에 관련된 분쟁이 벌어질 경우, 프랑스어 원문만이 공식 원문으로 간주된다.

**제20조 정의**

다음의 정의는 국제스포츠규정 및 그 부칙, 모든 국내규칙과 그 부록, 그리고 특별규정에 채택되어야 하며 일반적으로 쓰여야 한다.

**절대 세계 기록** : 범주, 등급, 또는 그룹에 관계 없이 한 자동차가 공인된 거리 또는 시간 동안 거둔 가장 좋은 성과로서 FIA가 공인한 기록.

**ASN** : FIA가 승인한 국내 자동차 클럽 또는 그밖에 국내 기구로 한 나라 안의 유일한 스포츠 권한 보유자.

**자동차** : 모두가 한 줄로 늘어서 있지는 않는 적어도 네 개의 바퀴가 지속적으로 지면(또는 얼음)과 접촉해 있으며, 적어도 두 개의 바퀴는 조향에, 적어도 두 개의 바퀴는 추진에 쓰이고, 탑승한 선수가 그 동력과 조향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그리고 완전하게 제어하는 운송 수단. (경기의 유형에 따라서 적절하게 차량, 트럭, 카트를 포함한, 그러나 이들만으로 한정되지 않은 다른 용어들 자동차와 바꿔서 쓸 수 있다)

**바자 크로스컨트리 랠리** : 하루 동안 (포함되는 최대 거리 : 600km) 또는 이를 동안(포함되는 최대 거리 : 1,000km. 두 레그 사이에 최소 8시간, 최대 20 시간의 휴식 기간이 있어야 한다) 열리는 크로스컨트리 랠리. 추가로 하루 동안 슈퍼 스페셜 스테이지가 운영될 수 있다. 선택적인 각 구간의 거리는 300km에서 801km여야 한다.

**FIA월드챔피언십에 참가하는 경기 참가자의 스타프에 대한 등록증** : FIA 월드 챔피언십의 경기

주소로 전달되어야 한다.

**제20.4조 이 규칙의 국제적인 해석**

20.4.1 이 규칙은 프랑스어와 영어로 작성된다. 이 규칙은 다른 언어로 발표될 수 있다.

20.4.2 FIA 또는 국제 항소재판소에서 그 해석에 관련된 분쟁이 벌어질 경우, 프랑스어 원문만이 공식 원문으로 간주된다.

**제21조 정의**

다음의 정의는 국제스포츠규정 및 그 부칙, 모든 국내규칙과 그 부록, 그리고 특별규정에 채택되어야 하며 일반적으로 쓰여야 한다.

**절대 세계 기록** : 범주, 등급, 또는 그룹에 관계 없이 한 자동차가 공인된 거리 또는 시간 동안 거둔 가장 좋은 성과로서 FIA가 공인한 기록.

**ASN (National Sporting Authority)** : FIA Statutes 3.3조에 의해 FIA가 승인한 국내 자동차 클럽, 협회 또는 연맹으로 그 나라 안의 유일한 스포츠 권한 보유자이다. 또한, FIA Statutes 3.1조에서 정의된 것처럼 ASN은 CAN (National Automobile Club)을 결합할 수 있다.

**자동차** : 모두가 한 줄로 늘어서 있지는 않는 적어도 네 개의 바퀴가 지속적으로 지면(또는 얼음)과 접촉해 있으며, 적어도 두 개의 바퀴는 조향에, 적어도 두 개의 바퀴는 추진에 쓰이고, 탑승한 선수가 그 동력과 조향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그리고 완전하게 제어하는 운송 수단. (경기의 유형에 따라서 적절하게 차량, 트럭, 카트를 포함한, 그러나 이들만으로 한정되지 않은 다른 용어들 자동차와 바꿔서 쓸 수 있다)

**바자 크로스컨트리 랠리** : 하루 동안 (포함되는 최대 거리 : 600km) 또는 이를 동안(포함되는 최대 거리 : 1,000km. 두 레그 사이에 최소 8시간, 최대 20 시간의 휴식 기간이 있어야 한다) 열리는 크로스컨트리 랠리. 추가로 하루 동안 슈퍼 스페셜 스테이지가 운영될 수 있다. 선택적인 각 구간의 거리는 300km에서 801km여야 한다.

**FIA월드챔피언십에 참가하는 경기 참가자의 스타프에 대한 등록증** : FIA 월드 챔피언십의 경기

참가자의 스태프 구성원이 국제스포츠규정에서 정한 조건에 따라서 FIA로부터 발급받는 등록증.

**챔피언십** : 챔피언십은 여러 경기 또는 단일 경기일 수 있다.

**서킷** : 고유한 설비를 포함하며, 시작점과 끝점이 같으며, 특별히 자동차 레이스를 위해 건설되거나 개조된 폐곡선 코스. 서킷은 설비의 특성 그리고 경기를 위한 이용 편의성에 따라서 임시, 준상설, 또는 상설일 수 있다.

**서킷 레이스** : 폐곡선형 서킷에서 열리고 두 대 또는 그보다 많은 자동차 사이에서 벌어지며, 같은 코스에서 동시에 달리며, 속도 또는 주어진 시간 안에 달린 거리가 결정적인 요인이 되는 경기.

**등급 분류** : 엔진 실린더 용량 또는 무엇이든 다른 구분 방법에 따라서 차량을 그룹으로 묶는 것. (FIA 국제스포츠규정 부칙 D와 J 참조)

**클로즈드 경기** : 국내경기가 KARA가 발급한 라이선스(경기 참가팀 또는 선수)를 가진 한 클럽의 회원만으로 한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클로즈드 경기라고 부를 수 있다. 클로즈드 경기는 KARA에게 허가를 받아야 하며 특정한 예외 상황에서는 여러 클럽이 개최하는 협정을 승인할 수 있다.

**국제스포츠규정** : FIA 국제스포츠규정과 그 부칙.

**경기** : 자체적으로 결과를 내는 단일 모터스포츠 활동. 경기는 하나 또는 여러 개의 히트, 그리고 결승전, 자유 연습주행, 예선 연습주행 그리고 여러 범주의 결과로 구성되거나 이와 비슷한 방식으로 구분될 수 있으나 이벤트가 끝날 때까지는 완료되어야 한다. 다음은 경기로 간주된다 : 서킷 레이스, 랠리, 크로스컨트리 랠리, 드래그 레이스, 힐 클라임, 기록 도전, 테스트, 트라이얼, 드리프트 그리고 FIA의 재량에 따른 다른 형태의 경기.

**경기 참가팀/경기 참가자** : 종류에 관계없이 어떤 경기든 그 참가가 받아들여진 모든 사람 또는 단체로 소속 ASN이 발급한 경기 참가자/선수 라이선스를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한다.

**컨트롤 라인** : 이곳을 지나는 순간 자동차의 시간이 계측되는 선.

참가자의 스태프 구성원이 국제스포츠규정에서 정한 조건에 따라서 FIA로부터 발급받는 등록증.

**챔피언십** : 챔피언십은 여러 경기 또는 단일 경기일 수 있다.

**서킷** : 고유한 설비를 포함하며, 시작점과 끝점이 같으며, 특별히 자동차 레이스를 위해 건설되거나 개조된 폐곡선 코스. 서킷은 설비의 특성 그리고 경기를 위한 이용 편의성에 따라서 임시, 준상설, 또는 상설일 수 있다.

**서킷 레이스** : 폐곡선형 서킷에서 열리고 두 대 또는 그보다 많은 자동차 사이에서 벌어지며, 같은 코스에서 동시에 달리며, 속도 또는 주어진 시간 안에 달린 거리가 결정적인 요인이 되는 경기.

**등급 분류** : 엔진 실린더 용량 또는 무엇이든 다른 구분 방법에 따라서 차량을 그룹으로 묶는 것. (FIA 국제스포츠규정 부칙 D와 J 참조)

**클로즈드 경기** : 국내경기가 KARA가 발급한 라이선스(경기 참가팀 또는 선수)를 가진 한 클럽의 회원만으로 한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클로즈드 경기라고 부를 수 있다. 클로즈드 경기는 KARA에게 허가를 받아야 하며 특정한 예외 상황에서는 여러 클럽이 개최하는 협정을 승인할 수 있다.

**국제스포츠규정** : FIA 국제스포츠규정과 그 부칙.

**경기** : 자체적으로 결과를 내는 단일 모터스포츠 활동. 경기는 하나 또는 여러 개의 히트, 그리고 결승전, 자유 연습주행, 예선 연습주행 그리고 여러 범주의 결과로 구성되거나 이와 비슷한 방식으로 구분될 수 있으나 이벤트가 끝날 때까지는 완료되어야 한다. 다음은 경기로 간주된다 : 서킷 레이스, 랠리, 크로스컨트리 랠리, 드래그 레이스, 힐 클라임, 기록 도전, 테스트, 트라이얼, 드리프트 그리고 FIA의 재량에 따른 다른 형태의 경기.

**경기 참가팀/경기 참가자** : 종류에 관계없이 어떤 경기든 그 참가가 받아들여진 모든 사람 또는 단체로 소속 ASN이 발급한 경기 참가자/선수 라이선스를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한다.

**컨트롤 라인** : 이곳을 지나는 순간 자동차의 시간이 계측되는 선.

코스 : 경기 참가자가 따르게 되는 경로

크로스컨트리 펠리 : 전체 거리가 1,200에서 3,000km 사이인 경기. 선택적인 각 구간의 거리는 500km를 넘을 수 없다.

실린더 용량 : 피스톤이 위 또는 아래로 움직임에 따라서 실린더(또는 실린더들) 안에 만들어지는 부피. 이 부피는 세제곱센티미터로 표기되며 실린더 용량이 관한 모든 계산에서 원주율 Pi는 3.1416과 같은 것으로 간주된다.

데모 주행 : 하나 또는 그보다 많은 자동차가 성능을 선보이는 것.

자격 상실 : 어떤 사람 또는 단체가 어떤 경기든 모두 참가를 완전히 금지 당하는 경우.

드래그 레이스 : 적어도 두 대의 자동차 사이에서 벌어지며 하나의 직선 구간에서 출발선에서부터 레이싱을 벌이고, 정확하게 측정된 코스에서 결승선을 먼저 (별칙없이) 통과한 자동차가 더 나은 성적을 거두는 가속 시험.

선수 : 종류에 관계없이 어떤 경기에서든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 소속 ASN이 발급한 선수 라이선스를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한다.

참가 : 참가하는 경기 참가자와 주최자 사이의 계약이다. 이는 양쪽 당사자가 서명을 하거나 서신을 교환함으로써 체결될 수 있다.

EU의 프로페셔널 경기 참가팀 : 어떤 EU 회원국 또는 FIA가 결정한 이에 상당한 나라에서든 그로부터 라이선스를 발급받은 프로페셔널 경기 참가팀. 여기에서 프로페셔널 경기 참가자란 모터스포츠 참가로 얻은 급여 또는 스폰서십의 방법으로 받은 돈을 관련 당국에 신고하였으며 라이선스를 발급한 ASN이 이러한 신고 사실을 인정할 수 있도록 서류 형식의 증거물을 제공한 사람, 그렇지 않으면 예를들어 획득은 했지만 관련 당국에 신고할 필요는 없는 이익에 의한 방법을 포함하여 그의 직업적인 상태를 FIA가 만족한 개인 또는 단체를 뜻한다.

EU의 프로페셔널 경기 선수 : 어떤 EU 회원국

코스 : 경기 참가자가 따르게 되는 경로

크로스컨트리 펠리 : 전체 거리가 1,200에서 3,000km 사이인 경기. 선택적인 각 구간의 거리는 500km를 넘을 수 없다.

실린더 용량 : 피스톤이 위 또는 아래로 움직임에 따라서 실린더(또는 실린더들) 안에 만들어지는 부피. 이 부피는 세제곱센티미터로 표기되며 실린더 용량이 관한 모든 계산에서 원주율 Pi는 3.1416과 같은 것으로 간주된다.

데모 주행 : 하나 또는 그보다 많은 자동차가 성능을 선보이는 것.

자격 상실 : 어떤 사람 또는 단체가 어떤 경기든 모두 참가를 완전히 금지 당하는 경우.

드래그 레이스 : 적어도 두 대의 자동차 사이에서 벌어지며 하나의 직선 구간에서 출발선에서부터 레이싱을 벌이고, 정확하게 측정된 코스에서 결승선을 먼저 (별칙없이) 통과한 자동차가 더 나은 성적을 거두는 가속 시험.

선수 : 종류에 관계없이 어떤 경기에서든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 소속 ASN이 발급한 선수 라이선스를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한다.

참가 : 참가하는 경기 참가자와 주최자 사이의 계약이다. 이는 양쪽 당사자가 서명을 하거나 서신을 교환함으로써 체결될 수 있다.

EU의 프로페셔널 경기 참가팀 : 어떤 EU 회원국 또는 FIA가 결정한 이에 상당한 나라에서든 그로부터 라이선스를 발급받은 프로페셔널 경기 참가팀. 여기에서 프로페셔널 경기 참가자란 모터스포츠 참가로 얻은 급여 또는 스폰서십의 방법으로 받은 돈을 관련 당국에 신고하였으며 라이선스를 발급한 ASN이 이러한 신고 사실을 인정할 수 있도록 서류 형식의 증거물을 제공한 사람, 그렇지 않으면 예를들어 획득은 했지만 관련 당국에 신고할 필요는 없는 이익에 의한 방법을 포함하여 그의 직업적인 상태를 FIA가 만족한 개인 또는 단체를 뜻한다.

EU의 프로페셔널 경기 선수 : 어떤 EU 회원국



또는 FIA가 결정한 이에 상당한 나라에서든 그로부터 라이선스를 발급받은 프로페셔널 선수. 여기에서 직업적 선수란 모터스포츠 참가로 얻은 급여 또는 스폰서십의 방법으로 받은 돈을 관련 당국에 신고하였으며 라이선스를 발급한 ASN이 이러한 신고 사실을 인정할 수 있도록 서류 형식의 증거물을 제공한 사람, 그렇지 않으면 예를 들어 획득은 했지만 관련 당국에 신고할 필요는 없는 이익에 의한 방법을 포함하여 그의 직업적인 상태를 FIA가 만족한 개인을 뜻한다.

**대회 :** 하나 또는 여러 개의 경기, 퍼레이드, 데모 주행 또는 투어링 어셈블리로 구성된 경기.

**제외 :** 제외는 심사위원회의 재량에 따라서 같은 이벤트 안에서 경기의 일부 (즉 히트, 결승전, 자유 연습주행, 예선 연습주행, 레이스, 그밖에), 전체 경기 또는 여러 경기에 걸칠 수 있으며, 심사위원회의 결정으로 경기 또는 경기 일부의 도중 또는 이후에 발표될 수 있다. 제외된 사람의 관련된 결과 또는 시간 기록은 무효가 된다.

**FIA :** 국제자동차연맹 (Fédération Internationale de l'Automobile).

**결승선 :** 시간 측정 여부에 관계없이 마지막 컨트롤 라인.

**불가항력 :** 예측할 수 없고, 피할 수 없으며, 외부 요인으로 일어난 사건.

**핸디캡 :** 경기 참가자의 기회를 될 수 있는 대로 균등하게 할 목적으로 경기의 특별규정에서 정한 방법.

**힐 클라임 :** 자동차가 따로따로 출발하며 결승선이 보통 출발선보다 고도가 더 높은 곳에서 끝나는 같은 코스를 달리는 경기. 출발선과 결승선 사이의 거리를 달리는 데 걸린 시간이 순위를 가르는 결정적인 요인이 된다.

**국제챔피언십 :** FIA 또는 FIA가 서면으로 인가한 다른 주체가 조직하는 국제경기로만 구성된 챔피언십.

**국제경기 :** 국제스포츠규정과 부칙 안에서 FIA가 결정한 요건에 따른 국제적인 안전 기준치를 유

또는 FIA가 결정한 이에 상당한 나라에서든 그로부터 라이선스를 발급받은 프로페셔널 선수. 여기에서 직업적 선수란 모터스포츠 참가로 얻은 급여 또는 스폰서십의 방법으로 받은 돈을 관련 당국에 신고하였으며 라이선스를 발급한 ASN이 이러한 신고 사실을 인정할 수 있도록 서류 형식의 증거물을 제공한 사람, 그렇지 않으면 예를 들어 획득은 했지만 관련 당국에 신고할 필요는 없는 이익에 의한 방법을 포함하여 그의 직업적인 상태를 FIA가 만족한 개인을 뜻한다.

**대회 :** 하나 또는 여러 개의 경기, 퍼레이드, 데모 주행 또는 투어링 어셈블리로 구성된 경기.

**제외 :** 제외는 심사위원회의 재량에 따라서 같은 이벤트 안에서 경기의 일부 (즉 히트, 결승전, 자유 연습주행, 예선 연습주행, 레이스, 그밖에), 전체 경기 또는 여러 경기에 걸칠 수 있으며, 심사위원회의 결정으로 경기 또는 경기 일부의 도중 또는 이후에 발표될 수 있다. 제외된 사람의 관련된 결과 또는 시간 기록은 무효가 된다.

**FIA :** 국제자동차연맹 (Fédération Internationale de l'Automobile).

**결승선 :** 시간 측정 여부에 관계없이 마지막 컨트롤 라인.

**불가항력 :** 예측할 수 없고, 피할 수 없으며, 외부 요인으로 일어난 사건.

**핸디캡 :** 경기 참가자의 기회를 될 수 있는 대로 균등하게 할 목적으로 경기의 특별규정에서 정한 방법.

**힐 클라임 :** 자동차가 따로따로 출발하며 결승선이 보통 출발선보다 고도가 더 높은 곳에서 끝나는 같은 코스를 달리는 경기. 출발선과 결승선 사이의 거리를 달리는 데 걸린 시간이 순위를 가르는 결정적인 요인이 된다.

**국제챔피언십 :** FIA 또는 FIA가 서면으로 인가한 다른 주체가 조직하는 국제경기로만 구성된 챔피언십.

**국제경기 :** 국제스포츠규정과 부칙 안에서 FIA가 결정한 요건에 따른 국제적인 안전 기준치를 유

<p>지하고 있는 경기.</p> <p><b>국제 라이선스</b> : FIA를 대리하여 KARA가 발급한 라이선스이며 그 라이선스의 수준에 적절한 국제 경기에 대해서 유효하다. 단, 이는 국제스포츠캘린더에 들어 있을 경우에 한정한다.</p> <p><b>라이선스</b> : 어느 지위든 관계없이 국제스포츠규정에서 관할하는 경기에 참가 또는 참여를 원하는 모든 사람 또는 단체(선수, 경기 참가자, 제조자, 팀, 오피셜, 주최자, 서킷, 그밖에)에게 발급되는 등록증.</p> <p><b>라이선스 보유자의 등록 명부</b> : KARA가 경기 참가자 또는 선수 라이선스를 발급한 사람들의 목록으로 그 KARA가 보유한다.</p> <p><b>라이선스 번호</b> : KARA의 등록 명부에 오른 경기 참가자 또는 선수에게 해마다 지정하는 번호.</p> <p><b>지역 기록</b> : 상설 또는 임시 트랙에서 거둔 기록으로 경기 참가자의 국적에 관계없이 KARA가 승인한 것.</p> <p><b>마라톤 크로스컨트리 랠리</b> : 마라톤 크로스컨트리 랠리는 전체 거리가 적어도 5,000km인 크로스컨트리이다. 선택적인 선택구간의 전체 길이는 적어도 3,000km는 되어야 한다.</p> <p><b>마일과 킬로미터</b> : 마일법을 미터법으로 전환하거나 그 반대일 경우에는 항상 1마일을 1.609344 킬로미터로 환산한다.</p> <p><b>국내 챔피언십</b> : KARA 또는 KARA가 서면으로 인가한 다른 주체가 조직하는 챔피언십.</p> <p><b>국내경기</b> : 국제경기의 하나 또는 그보다 많은 조건을 충족하지 않는 모든 모터스포츠 활동.</p> <p><b>국내 기록</b> : KARA가 정한 규정에 따라서 그 관할 영토 또는 다른 ASN의 관할 영토에서(이 경우에는 사전 허가가 필요하다) 수립되거나 경신한 기록. 국내 기록은 도전할 자격이 있는 자동차의 형식을 세분화한 등급 가운데 하나에 대해 나온 최고 결과일 경우에는 기록 등급에 관계없이 최고 기록일 경우에는 절대 기록이 된다.</p>	<p>지하고 있는 경기.</p> <p><b>국제 라이선스</b> : FIA를 대리하여 KARA가 발급한 라이선스이며 그 라이선스의 수준에 적절한 국제 경기에 대해서 유효하다. 단, 이는 국제스포츠캘린더에 들어 있을 경우에 한정한다.</p> <p><b>라이선스</b> : 어느 지위든 관계없이 국제스포츠규정에서 관할하는 경기에 참가 또는 참여를 원하는 모든 사람 또는 단체(선수, 경기 참가자, 제조자, 팀, 오피셜, 주최자, 서킷, 그밖에)에게 발급되는 등록증.</p> <p><b>라이선스 보유자의 등록 명부</b> : KARA가 경기 참가자 또는 선수 라이선스를 발급한 사람들의 목록으로 그 KARA가 보유한다.</p> <p><b>라이선스 번호</b> : KARA의 등록 명부에 오른 경기 참가자 또는 선수에게 해마다 지정하는 번호.</p> <p><b>지역 기록</b> : 상설 또는 임시 트랙에서 거둔 기록으로 경기 참가자의 국적에 관계없이 KARA가 승인한 것.</p> <p><b>마라톤 크로스컨트리 랠리</b> : 마라톤 크로스컨트리 랠리는 전체 거리가 적어도 5,000km인 크로스컨트리이다. 선택적인 선택구간의 전체 길이는 적어도 3,000km는 되어야 한다.</p> <p><b>마일과 킬로미터</b> : 마일법을 미터법으로 전환하거나 그 반대일 경우에는 항상 1마일을 1.609344 킬로미터로 환산한다.</p> <p><b>국내 챔피언십</b> : KARA 또는 KARA가 서면으로 인가한 다른 주체가 조직하는 챔피언십.</p> <p><b>국내경기</b> : 국제경기의 하나 또는 그보다 많은 조건을 충족하지 않는 모든 모터스포츠 활동.</p> <p><b>국내 기록</b> : KARA가 정한 규정에 따라서 그 관할 영토 또는 다른 ASN의 관할 영토에서(이 경우에는 사전 허가가 필요하다) 수립되거나 경신한 기록. 국내 기록은 도전할 자격이 있는 자동차의 형식을 세분화한 등급 가운데 하나에 대해 나온 최고 결과일 경우에는 기록 등급에 관계없이 최고 기록일 경우에는 절대 기록이 된다.</p>
---	---

공식 프로그램 : 경기에 관한 자세한 내용을 공중에게 알리기 위한 모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경기의 조직위원회가 준비하는 의무적인 공식 문서.

주최자 : KARA, 자동차 클럽 또는 다른 자격 있는 스포츠 단체.

조직위원회 : KARA에게 승인을 받고, 스포츠 경기의 주최자가 투자하고, 스포츠경기의 조직을 위해 필요한 모든 권한을 가지고 특별규정을 집행하는 단체.

공인서 : 스포츠 경기의 조직을 허가하는 문서로 KARA가 발급한다.

세계 절대 육상 속도 기록 : 자동차의 등급 범주 또는 그룹에 관계없이 하나의 차량이 거둔 최고의 플라잉 스타트 마일의 결과.

퍼레이드 : 적절한 속도로 달리는 자동차의 집단을 보여주는 것.

파크 퍼미 : 경기 참가자가 그의 자동차를 가져와야 하는 장소로 적용되는 규정에 미리 예정되어 있다.

소속 ASN : 라이선스 보유자의 국적을 관할하는 ASN. 국제스포츠규정 **정** 안에 정의된 직업적 경기 참가자 또는 선수인 경우에는 소속 ASN은 라이선스 보유자가 실제로 영주하고 있는 EU 국가의 ASN일 수 있다.

참가자 : 보호 구역에 출입하는 모든 사람.

탑승자 : 선수를 제외하고 자동차에 탄 사람으로 장비를 포함한 몸무게가 60kg보다 가볍지 않아야 한다.

랠리 : 일반 차량 통행이 개방되어 있는 도로에서

공식 프로그램 : 경기에 관한 자세한 내용을 공중에게 알리기 위한 모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경기의 조직위원회가 준비하는 의무적인 공식 문서.

주최자 : KARA, 자동차 클럽 또는 다른 자격 있는 스포츠 단체.

조직위원회 : KARA에게 승인을 받고, 스포츠 경기의 주최자가 투자하고, 스포츠경기의 조직을 위해 필요한 모든 권한을 가지고 특별규정을 집행하는 단체.

공인서 : 스포츠 경기의 조직을 허가하는 문서로 KARA가 발급한다.

세계 절대 육상 속도 기록 : 자동차의 등급 범주 또는 그룹에 관계없이 하나의 차량이 거둔 최고의 플라잉 스타트 마일의 결과.

퍼레이드 : 적절한 속도로 달리는 자동차의 집단을 보여주는 것.

파크 퍼미 : 경기 참가자가 그의 자동차를 가져와야 하는 장소로 적용되는 규정에 미리 예정되어 있다.

소속 ASN (Parent ASN - 라이선스 발급자 관련) : 라이선스 보유자의 국적 (여권 발행 국가)에 해당하는 ASN. 국제스포츠규정 안에 정의된 유럽 프로페셔널 선수인 경우, 소속 ASN은 라이선스 보유자가 실제로 영주하고 있는 EU 국가의 ASN일 수 있다.

소속 ASN (Parent ASN - 제 시리즈 경기 관련) : 시리즈 경기의 승인을 요청한 ASN으로 해당 ASN의 국내 규정에서 해당내용을 언급한 경우에는 국내 규정 승인 및 적용에 대한 책임이 있다.

참가자 : 보호 구역에 출입하는 모든 사람.

탑승자 : 선수를 제외하고 자동차에 탄 사람으로 장비를 포함한 몸무게가 60kg보다 가볍지 않아야 한다.

랠리 : 일반 차량 통행이 개방되어 있는 도로에서

전체 또는 일부가 열리는, 평균속도를 부과하는 도로 경기. 하나의 랠리는 모든 차량이 따라야 하는 단일한 일정으로 구성되어 있거나, 사전에 정해져 있는 같은 랠리포인트에 모이는 여러 개의 일정,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의 공통 일정이 있거나 없는 방식으로 구성할 수 있다. 경로는 하나 또는 여러 개의 스페셜 스테이지, 곧 일반 차량 통행이 금지되어 있는 도로에서 주최되는 이벤트로, 이들을 모두 합쳐서 랠리의 총 순위를 결정하는 구간을 하나 또는 여러 개 둘 수 있다.

스페셜 스테이지로 쓰이지 않는 일정은 로드 섹션이라고 부른다. 이들 로드 섹션은 순위를 결정하는 요소가 되어서는 안 된다. 일반 차량 통행이 개방되어 있는 도로를 부분 활용하는 경기지만 상설, 또는 준상설 서킷에서 진행되는 스페셜 스테이지가 랠리의 전체 거리 가운데 20%보다 많은 경우에는, 진행 절차의 모든 문제에 대해서는 스피드 경기로 보아야 한다.

기록 : 국제스포츠규정에서 정한 특정한 조건에서 얻은 가장 좋은 결과.

기록 도전 : 국제스포츠규정에 따라 지역 기록, 국내 기록, 세계 기록, 세계 절대 기록, 세계 절대 육상 속도 기록을 깨기 위한 도전.

보호 지역 : 경기가 열리는 지역. 다음을 포함하지만 다음으로 한정되지는 않는다.

- 트랙(코스)
- 서킷
- 패독
- 파크 퍼미
- 서비스 파크 또는 존
- 홀딩 파크
- 서킷인 경우에는 피트
- 대중에게 금지된 구역
- 통제 구역
- 미디어 전용 구역
- 급유 구역

특별 자동차 : 적어도 네 개의 바퀴를 가지고 있으나 바퀴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 추진되는 운송 수단.

스피드웨이 : 코너가 4개보다 많지 않은 상설 서킷으로 모든 턴은 같은 방향이다.

전체 또는 일부가 열리는, 평균속도를 부과하는 도로 경기. 하나의 랠리는 모든 차량이 따라야 하는 단일한 일정으로 구성되어 있거나, 사전에 정해져 있는 같은 랠리포인트에 모이는 여러 개의 일정,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의 공통 일정이 있거나 없는 방식으로 구성할 수 있다. 경로는 하나 또는 여러 개의 스페셜 스테이지, 곧 일반 차량 통행이 금지되어 있는 도로에서 주최되는 이벤트로, 이들을 모두 합쳐서 랠리의 총 순위를 결정하는 구간을 하나 또는 여러 개 둘 수 있다.

스페셜 스테이지로 쓰이지 않는 일정은 로드 섹션이라고 부른다. 이들 로드 섹션은 순위를 결정하는 요소가 되어서는 안 된다. 일반 차량 통행이 개방되어 있는 도로를 부분 활용하는 경기지만 상설, 또는 준상설 서킷에서 진행되는 스페셜 스테이지가 랠리의 전체 거리 가운데 20%보다 많은 경우에는, 진행 절차의 모든 문제에 대해서는 스피드 경기로 보아야 한다.

기록 : 국제스포츠규정에서 정한 특정한 조건에서 얻은 가장 좋은 결과.

기록 도전 : 국제스포츠규정에 따라 지역 기록, 국내 기록, 세계 기록, 세계 절대 기록, 세계 절대 육상 속도 기록을 깨기 위한 도전.

보호 지역 : 경기가 열리는 지역. 다음을 포함하지만 다음으로 한정되지는 않는다.

- 트랙(코스)
- 서킷
- 패독
- 파크 퍼미
- 서비스 파크 또는 존
- 홀딩 파크
- 서킷인 경우에는 피트
- 대중에게 금지된 구역
- 통제 구역
- 미디어 전용 구역
- 급유 구역

특별 자동차 : 적어도 네 개의 바퀴를 가지고 있으나 바퀴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 추진되는 운송 수단.

스피드웨이 : 코너가 4개보다 많지 않은 상설 서킷으로 모든 턴은 같은 방향이다.

**출발** : 출발은 하나의 경기 참가자에게 또는 동시에 출발하는 여러 경기 참가자에게 출발하라는 지시가 내려지는 순간이다.

**출발선** : 시간이 계측되거나 계측되지 않는 첫 번째 컨트롤 라인이다.

국제 슈퍼 라이선스는 FIA가 작성하고 이를 신청한 후보들에게 발급한다. 단, 이들이 이미 부칙 L에 따른 국내 라이선스 보유자임을 조건으로 하며 특정한 FIA 국제챔피언십에 대해서는 그에 대한 일련의 규칙에서 정한 조건이 의무다.

**특별규정** : 경기의 자세한 내용을 정할 목적으로 스포츠 경기의 조직위원회가 발표하는 공식 문서.

**자격 정지** : 어떤 사람 또는 단체가, 이들에 대해 지정된 기간 동안 자격 정지 처분을 선언한 ASN의 관할 영토 안에서, 또는 FIA의 관할권이 인정되는 모든 나라의 관할 영토 안의 모든 경기에 참가가 금지되는 경우 이를 자격 정지라고 부른다.

**테스트** : 규정에 따라서 결정된 기간 안에 각 경기 참가자가 경기 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시간을 선택할 수 있는 허가된 경기.

**투어링 어셈블리** : 사전에 결정된 한 지점에 참가자들이 모이는 것만을 유일한 목적으로 조직되는 모터스포츠 활동.

**트라이얼** : 여러 건의 거리 또는 기술 테스트로 구성된 경기.

**세계 기록** : 특정한 등급 또는 그룹으로부터 거둔 가장 좋은 성과. 자동차, 그리고 특별 차량에 대한 세계 기록이 있다.

**제21조 규정의 시행**  
본 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출발** : 출발은 하나의 경기 참가자에게 또는 동시에 출발하는 여러 경기 참가자에게 출발하라는 지시가 내려지는 순간이다.

**출발선** : 시간이 계측되거나 계측되지 않는 첫 번째 컨트롤 라인이다.

국제 슈퍼 라이선스는 FIA가 작성하고 이를 신청한 후보들에게 발급한다. 단, 이들이 이미 부칙 L에 따른 국내 라이선스 보유자임을 조건으로 하며 특정한 FIA 국제챔피언십에 대해서는 그에 대한 일련의 규칙에서 정한 조건이 의무다.

**특별규정** : 경기의 자세한 내용을 정할 목적으로 스포츠 경기의 조직위원회가 발표하는 공식 문서.

**자격 정지** : 어떤 사람 또는 단체가, 이들에 대해 지정된 기간 동안 자격 정지 처분을 선언한 ASN의 관할 영토 안에서, 또는 FIA의 관할권이 인정되는 모든 나라의 관할 영토 안의 모든 경기에 참가가 금지되는 경우 이를 자격 정지라고 부른다.

**테스트** : 규정에 따라서 결정된 기간 안에 각 경기 참가자가 경기 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시간을 선택할 수 있는 허가된 경기.

**투어링 어셈블리** : 사전에 결정된 한 지점에 참가자들이 모이는 것만을 유일한 목적으로 조직되는 모터스포츠 활동.

**트라이얼** : 여러 건의 거리 또는 기술 테스트로 구성된 경기.

**세계 기록** : 특정한 등급 또는 그룹으로부터 거둔 가장 좋은 성과. 자동차, 그리고 특별 차량에 대한 세계 기록이 있다.

**제21조 규정의 시행**  
본 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